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060-01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종합대책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입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21조에 따라 5년마다 법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새로마지플랜2010」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브랜드로서 “새로마지”는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Part 01

I. 기본계획 수립배경	12
II.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	16
1. 저출산 · 고령화의 진행 현황	17
2. 저출산의 원인	20
3. 저출산 · 고령화의 파급영향	26
III. 그간의 주요 성과	31
1. 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정책 평가	32
2.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주요 성과	34
IV.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36
1. 장기 정책목표	38
2. 정책 추진방향	39
3. 분야별 정책 방향	40
V.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4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

Part 02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2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58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58

- ① 결혼·출산 주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58
- ②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61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 63

- ①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63
- ②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66
- ③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67
- ④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70
- ⑤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지원 73
- ⑥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74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76

- ①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76
- ②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79
- ③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80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82

- ①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82
- ②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86
- ③ 불임부부 지원 93
- ④ 산모도우미 지원 95
- 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97
- ⑥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강화 98



Part 02

2. 일과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101

2-1. 모성보호 강화 101

①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101

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04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107

①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확산 107

②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109

③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 110

④ 출산 · 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작 복귀 지원 111

2-3. 학교 ·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14

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114

②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115

③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16

④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117

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118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19

3-1. 아동 ·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119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119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121

③ 학교폭력 예방 · 근절 대책 강화 1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

Part 02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28

- 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128
- ② 아동의 발달 지원 130
- ③ 국내입양 활성화 131
- ④ 유해환경 차단 강화 134
- ⑤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135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137

- ① 드림스타트 활성화 137
- ②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검토 139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41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48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148

- ①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48
-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52
- ③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연금체계 구축 155
- ④ 특수직연금 제도개선 157
- ⑤ 기초노령연금 시행 159
- ⑥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161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63

- ① 퇴직연금제도 확대 163
- ② 개인연금 활성화 165



Part 02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168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168
①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168
② 노인질화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171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174
2-2. 공적 노인요양보험체계 확립	176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176
②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180
2-3. 노인 권익 증진	182
① 독거노인 보호 강화	182
② 노인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184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186
3-1. 노인 일자리 창출	186
①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	186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90
①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90
②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19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

Part 02

3-3. 노후생활설계 기반 194

- ① 노후생활 설계 기반 마련 194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96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96

- ①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96
- ②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99
- ③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200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204

- ①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204

Ⅲ.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206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213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213

- ① 적극적 여성 고용 정책 강화 213
- ②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216
- ③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218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220

- ①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220
- ② 임금피크제 지원등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222
- ③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223
- ④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25
- ⑤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227



Part 02

1-3. 외국적 동포 ·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228
① 외국적 동포의 인력활용	228
②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229
③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230
④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231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34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234
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234
②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236
③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238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241
① 산업현장의 안전 · 보건 증진	241
②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42
3. 고령친화산업 육성	244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245
①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	245
②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 · 표시제도 도입	249
③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251
3-2. 고령친화산업 기술개발 촉진	253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2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

Part 02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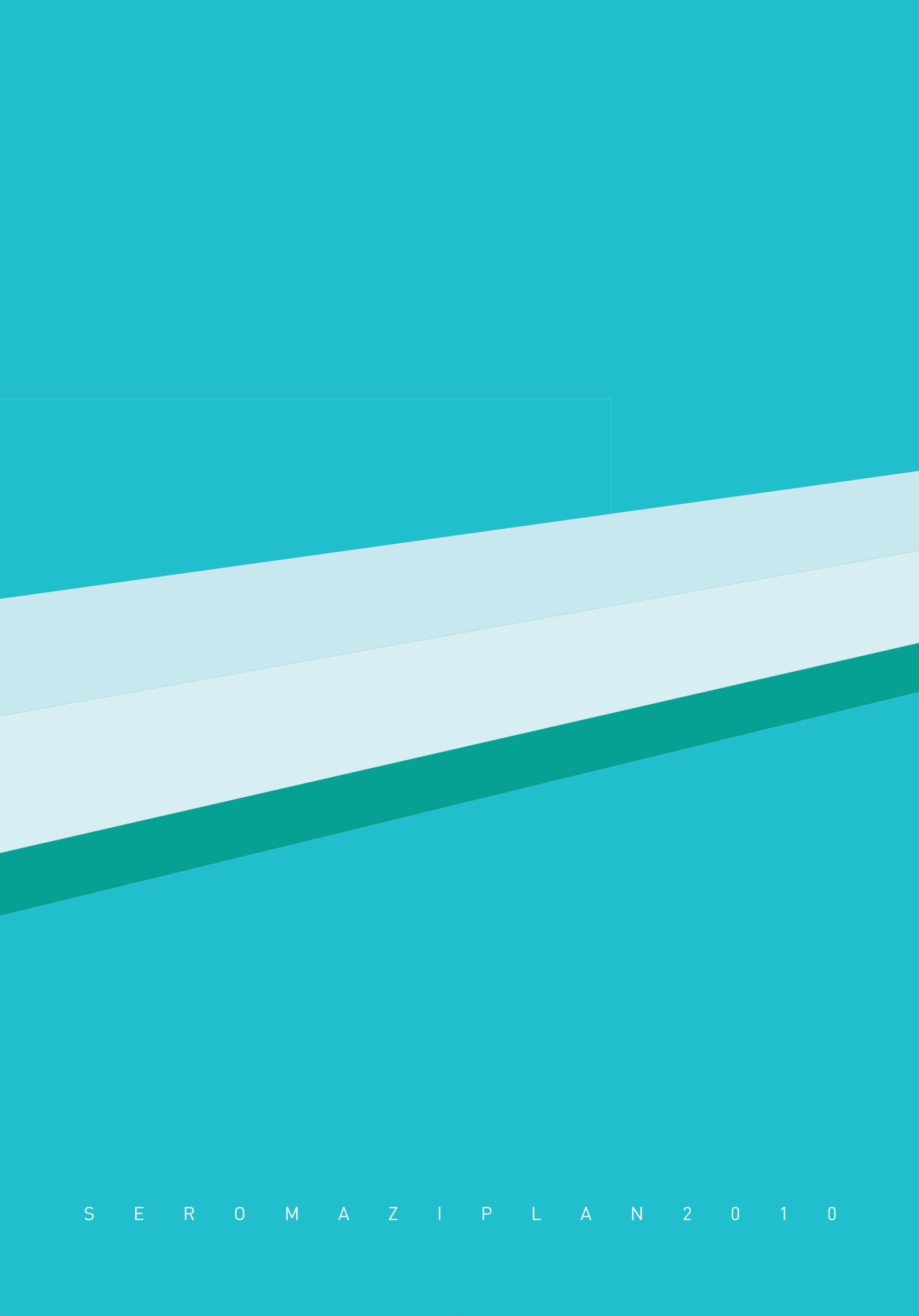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258
① 역모기제도 활성화	258
②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260
③ 장기국채시장 육성	262

IV.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64

1. 전략적 교육 홍보	265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70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72
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272
②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확립	273

부 록

I.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방안	276
1. 연차별 투자계획	277
2. 자원조달방안	278
II. 과제별 소관부처	279
III.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294



S E R O M A Z I P L A N 2 0 1 0



새로 마즈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플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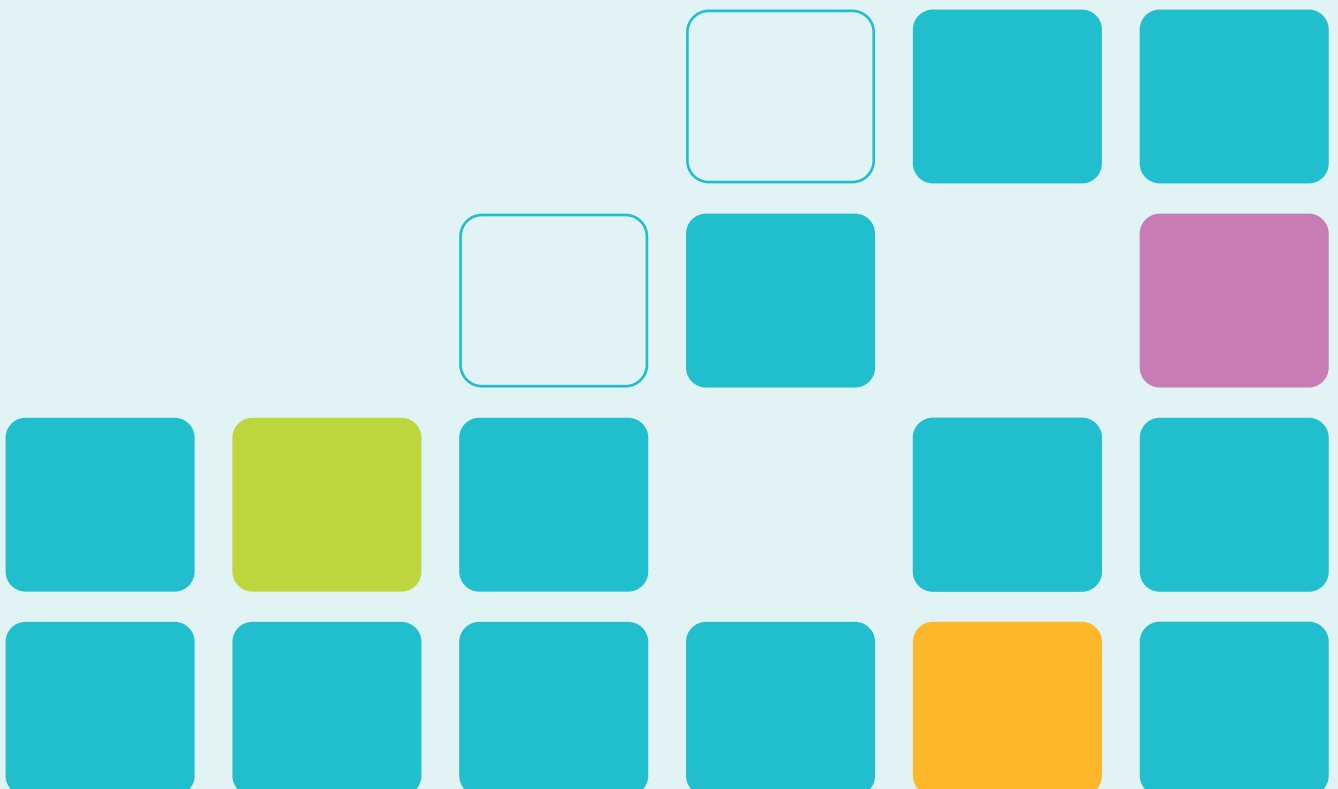
- I. 기본계획 수립배경
- II.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
- III. 그간의 주요 성과
- IV.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 V.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I

기본계획 수립배경



새로마지 플랜 2010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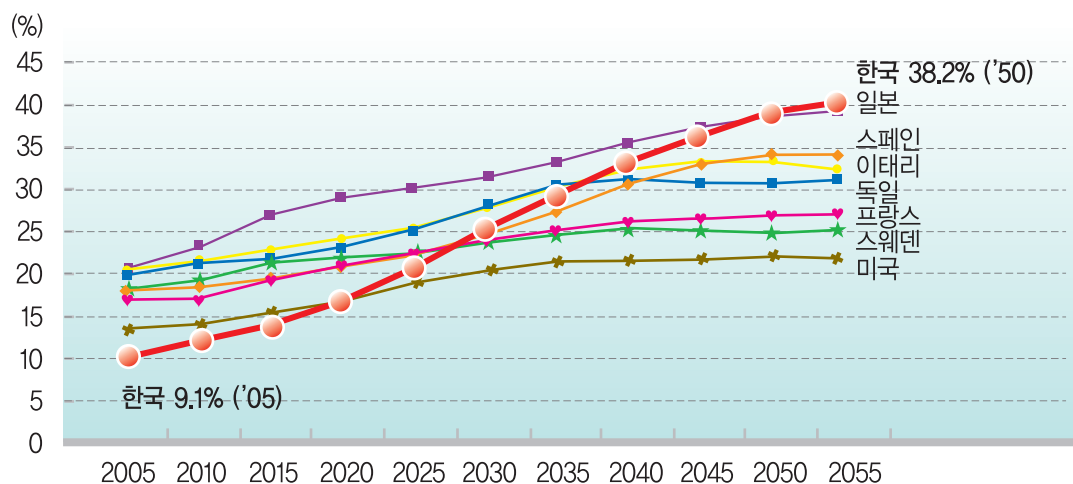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는 65세이상 인구비율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 (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
 - 고령화는 OECD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나, 고령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긴 준비 기간을 두고 고령 사회에 적응

♥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 필요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년 이후 고령화 가속
-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 부담 완화 등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

♥ 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구축

- '05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관의 위원회로 조정되어 새 위원회 출범 ('08.4)
 - * 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위원 : 10개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 11명
- 15개 중앙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대폭 참여하여 5년간('06~'10) 추진할 정책 과제를 발굴, 「제1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06.8)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06~'08)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 출산·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국가 차원의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
-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개선
- 저출산·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기초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보완('08.11)

-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새로 도입된 정책 반영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양육지원수당,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반영

기본계획 수정·보완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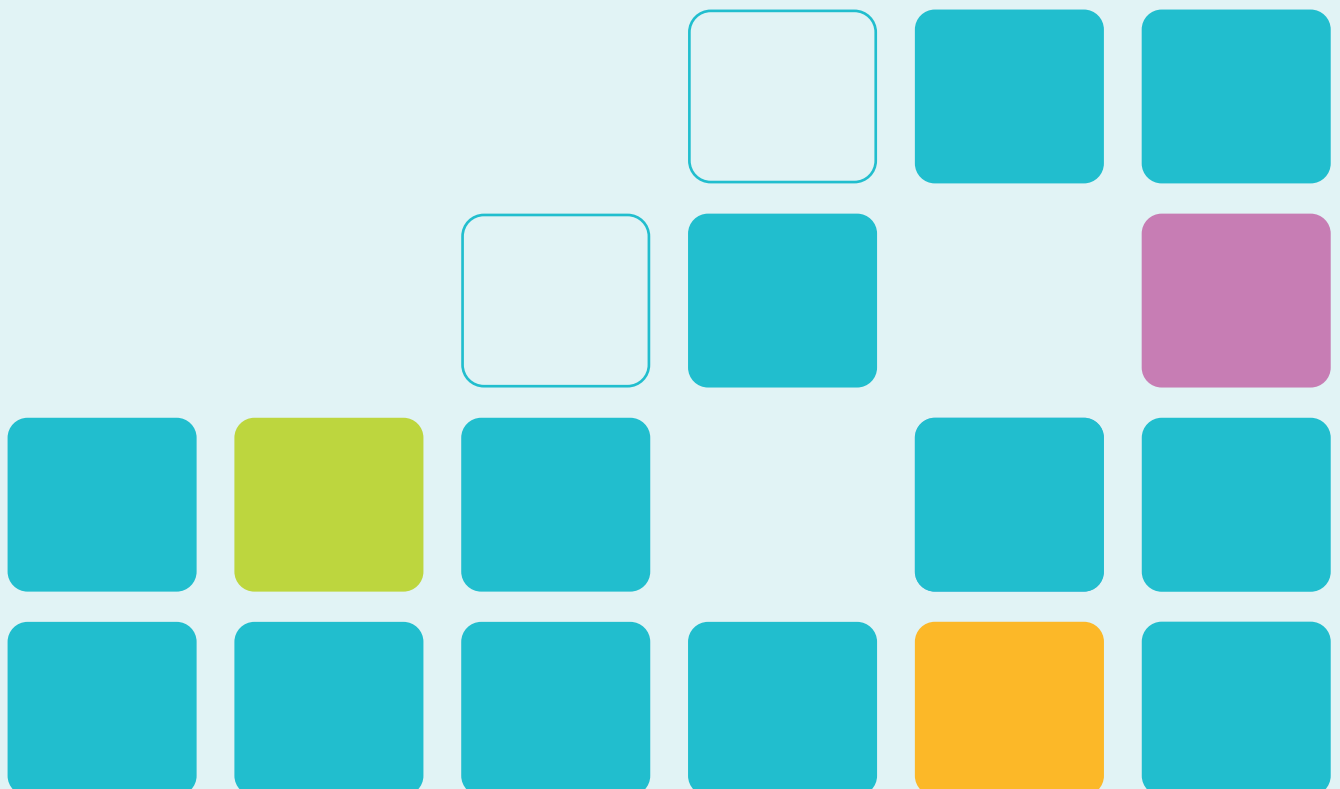
- 제1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 수정·보완 추진계획 보고('08. 4.18)
-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신규과제 발굴'을 주제로 연구 용역 실시('08.5~8월)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08.5.21~28, 5차례 개최)
- 권역별 지자체 간담회('08.6.19~30, 4차례 개최)
- 신규발굴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08.6)
- 실무위원회 2차례 개최 및 분야별 중점 보완과제 논의
 - 저출산인구분야 실무위원회('08.7.15)
 - 고령화 및 고령사회경제산업분야 실무위원회('08.7.17)
- 기본계획 보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8.9.18~2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 보완(안) 심의·의결('08.11.24)

II

저출산 · 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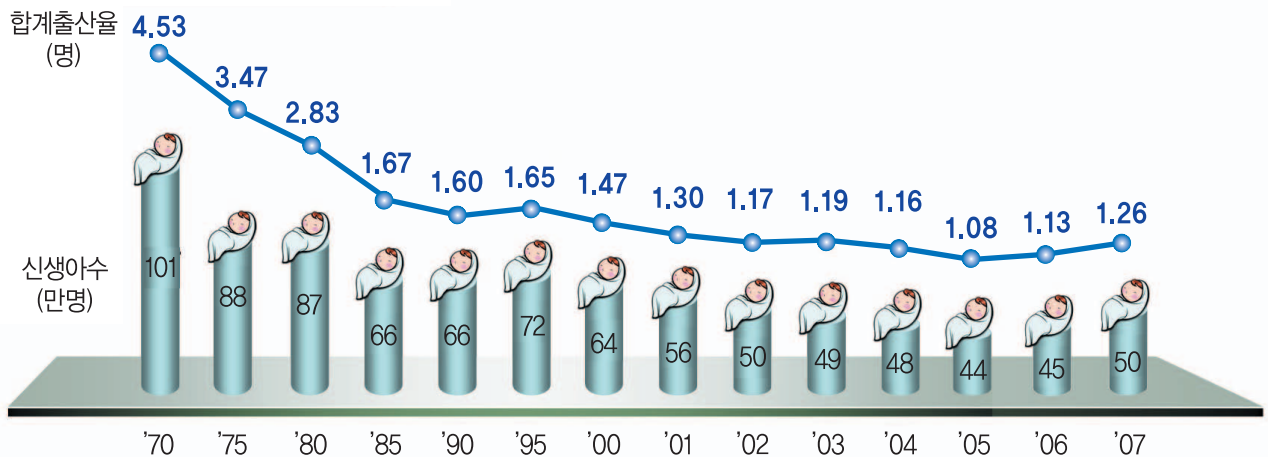
새로마지 플랜 2010



1 저출산 · 고령화의 진행 현황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특히 외환위기 이후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 '07년 출생아 수(50만명)는 '70년(101만명)의 절반 수준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 **대체출산율**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

가임기 여성의 인구 추이

연 도	'07	'15	'30	'50
주 출산층(25~34세)	386	325	260	172
전체 가임기(15~49세)	1,323	1,226	931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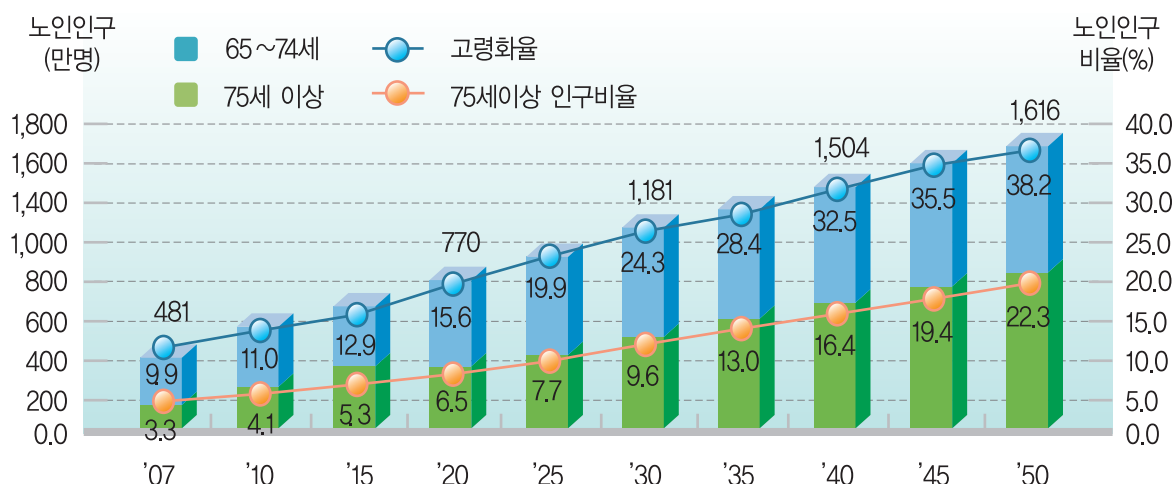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출생아수 추계 : ('05) 438 → ('10) 434 → ('20) 377 → ('30) 348 → ('50) 226천명

기대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7년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

- 기대수명은 영양·건강상태 개선,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71년 62.3세에서 '06년 79.1세로 상승하였고, '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
- 노인인구는 '08년 502만명에서 '26년 1,000만명, '40년 1,500만명으로 증가 예상
– '16년 노인인구(659만명)가 유소년인구(654만)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 특히 신체적 특성상 의료 수요가 많은 7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노인인구 중 75세이상 노인 비율 : '07년 34% → '50년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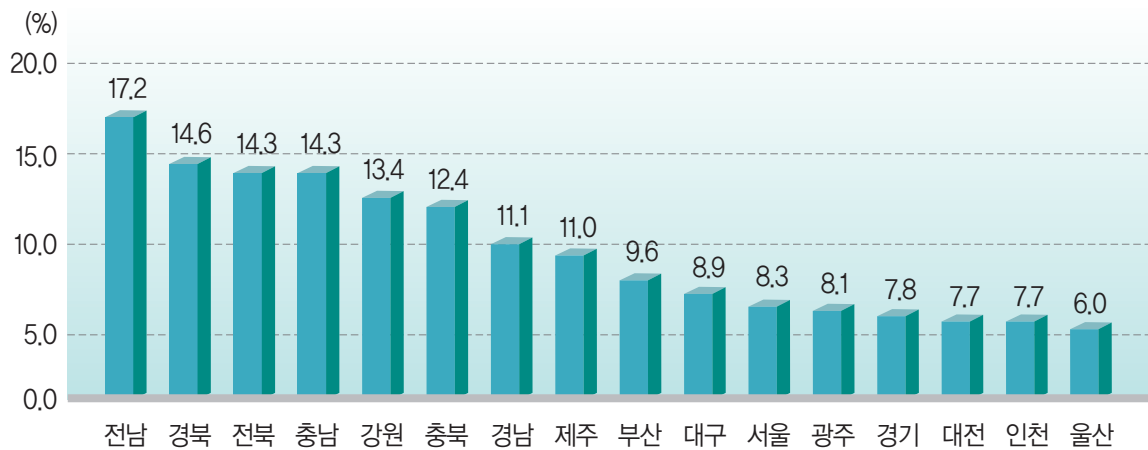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 자료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2006)」, 「2007 고령자 통계」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일부 지역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
 - '07년 현재, 서울을 비롯한 광역 대도시 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은 5~8% 수준이나, 농어촌이 많은 전남, 경북 등은 10%를 상회
 - 고흥군, 군위군, 의성군 등 59 기초지자체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 진입

16개 시도의 노인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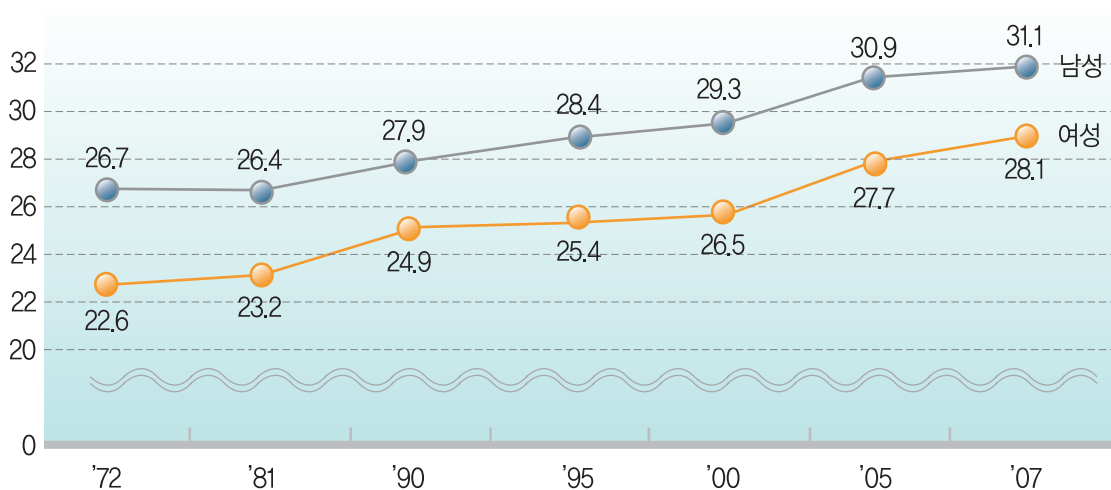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7.

2 저출산의 원인

♥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 지속

- 남성의 초혼연령은 '90년 27.9세에서 '07년 31.1세로, 여성은 '90년 24.9세에서 '07년 28.1세로 상승

초혼연령 변동 추이(197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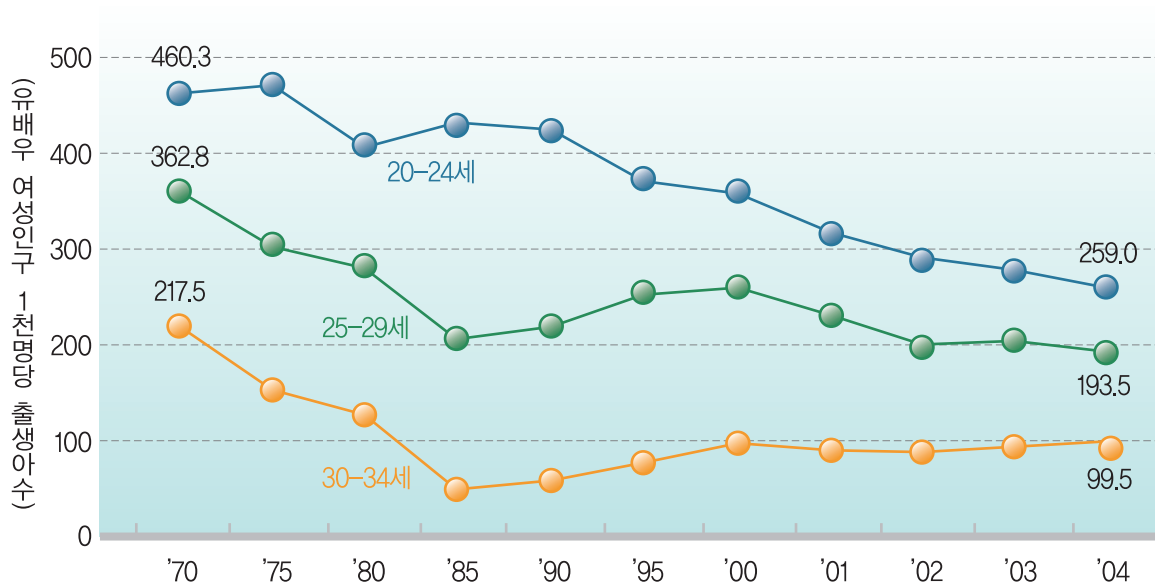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KOSIS, 2008.

–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불임 증가, 출산에 대한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

* 20~24세 결혼시 평균출생아는 1.95명이나, 25~29세 결혼시 1.65명, 30~34세 결혼시 1.22명, 35~39세 결혼시 0.73명으로 감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05)

- 결혼한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20대의 유배우출산율 감소 폭이 커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의 출산력이 저하됨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 유배우출산율 : 특정 연도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천명당 출생아 수
- 자료: 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2005

- 결국 최근의 합계출산율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동반하여 나타난 결과

- '90년대에는 결혼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포기 등으로 유배우출산율 감소와 결혼연령 상승의 영향이 유사하게 작용

* 자료 :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 자녀 수 감소는 ①소득 및 고용 불안정 ②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③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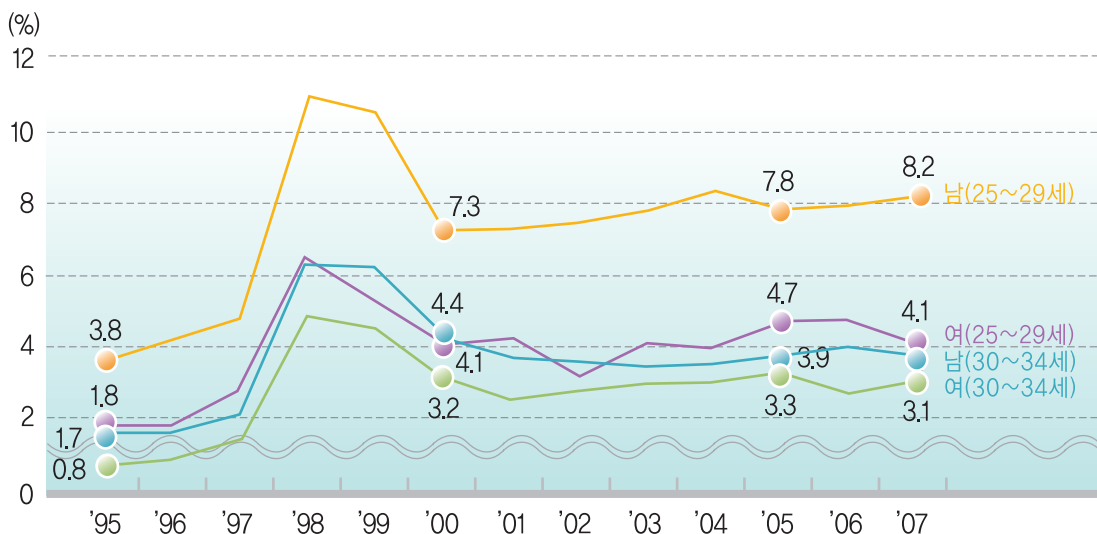
①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져 고용 불안정 심화

– 25~29세의 남성 실업률은 '95년 3.6%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8%대 유지

25~29세의 여성 실업률은 '95년 1.8%에서 2000년대에는 4%대 유지

청년층 실업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20대 남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95년 32.1%에서 '02년 43.7%까지 높아졌고 이후 40%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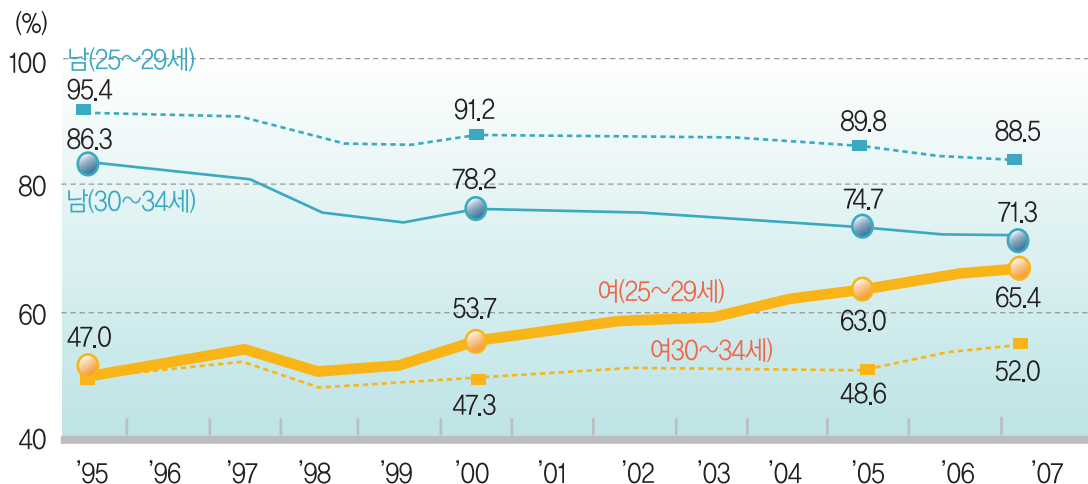
20대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중은 '95년 35.2%에서 '02년 46.0%까지 상승, '07년 37%

-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유배우율이 감소
 - 남성의 초혼연령은 '90년 27.9세에서 '07년 31.1세로, 여성은 '90년 24.9세에서 '07년 28.1세로 상승
 - 25세~29세 여성의 유배우율이 '70년 90.3%, '90년 77.9%에서 '00년 59.9%로 감소

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미흡한 점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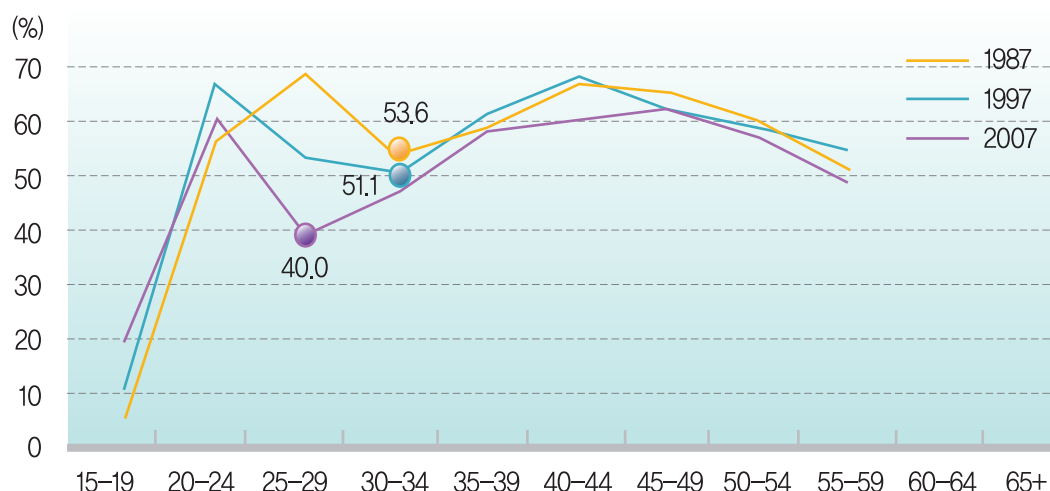
성별 / 연령별 고용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하여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357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OECD, 「OECD Factbook 2008」, 2008) 단시간 근무나 재택 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이 미흡
 - 주 출산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폭 낮아지는 M-curve 현상 지속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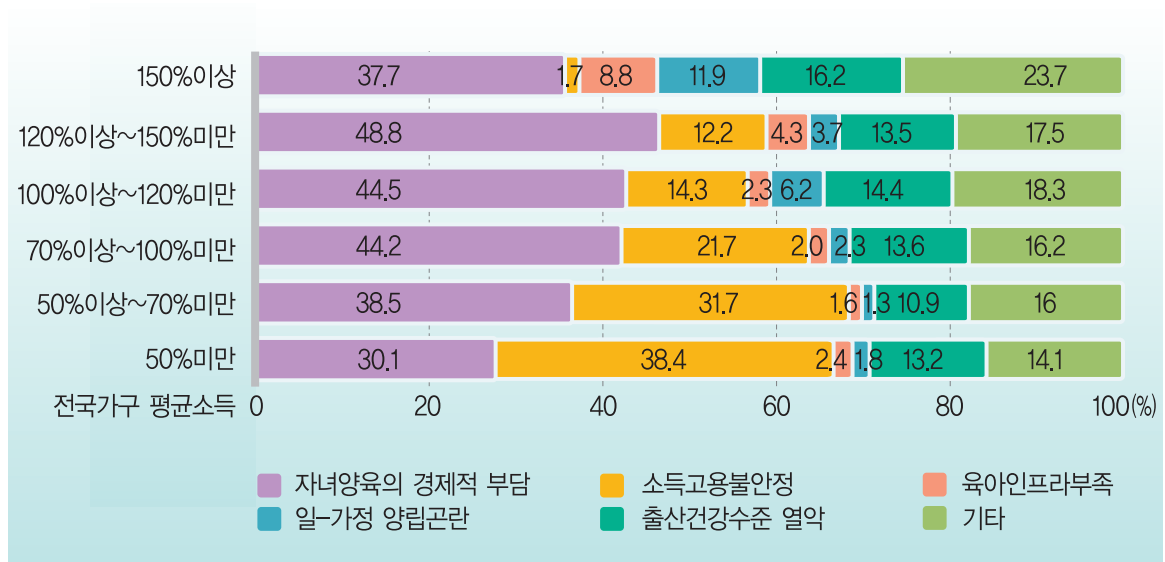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청년층 여성의 결혼연기 및 출산 중단이유로 자아성취욕구도 높은 비율을 차지
 - 자아성취욕구 : 25~29세 여성 결혼연기사유의 13.7%, 출산중단사유의 9.5% (보사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6)

③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 비용부담 증가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 시간연장 보육 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미흡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육아인프라 부족,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으로 인한 출산중단 비율이 증가
-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내 육아 지원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
 - 3세대 가족비율 추이 및 전망 : '90) 12.5% → '05) 7.0% → '10) 6.8% → '20) 6.5%
- 보육비용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거나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
 - 자녀양육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

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2자녀 이하)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6 (소득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결혼관 및 자녀관 등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로 이어져 출산율 하락을 초래
 - 미혼남성(20세 이상)의 71.4%, 미혼여성(20세 이상)의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보사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6)
- 노후의 경제적 지원, 가문계승의 필요성 등 전통적 자녀관의 퇴색도 출산 자녀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

3 저출산 · 고령화의 파급영향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 '07년 현재 0.33%인 인구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19년 0%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인구구조 변동 추이 및 전망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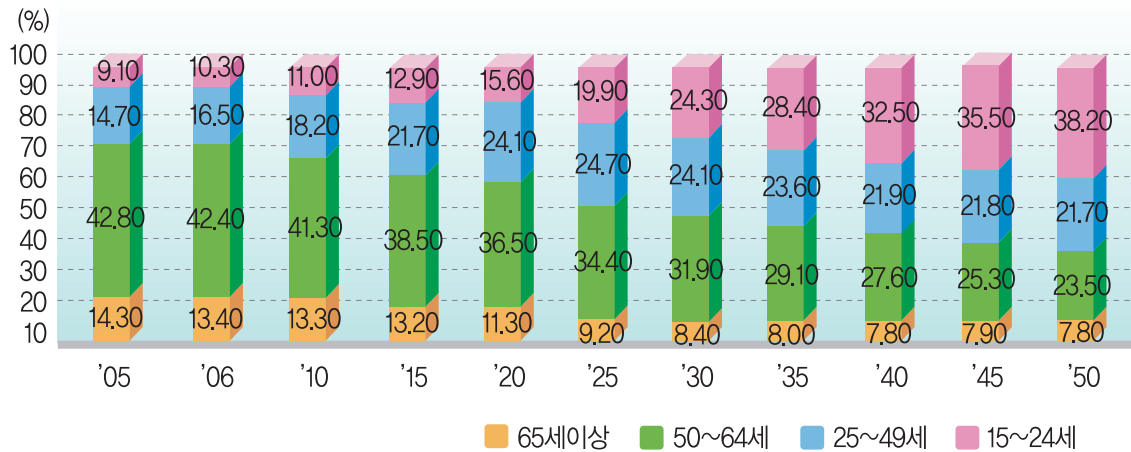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합계출산율 '05년 1.08명, '40년 1.28명으로 가정

♥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 · 소비 · 투자 위축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 3,619만명(총인구의 73.4%)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핵심 근로계층(25세~49세)은 '07년 2,06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인구구조 변화 전망



• 자료 : 통계청 2006 전국장래인구추계

- 취업자 수 증가율(15세이상)은 '06년 0.96%에서 '20년 0.16%, '30년 -0.80%, '50년 -1.57%로 하락 예상(출산율 1.08명 유지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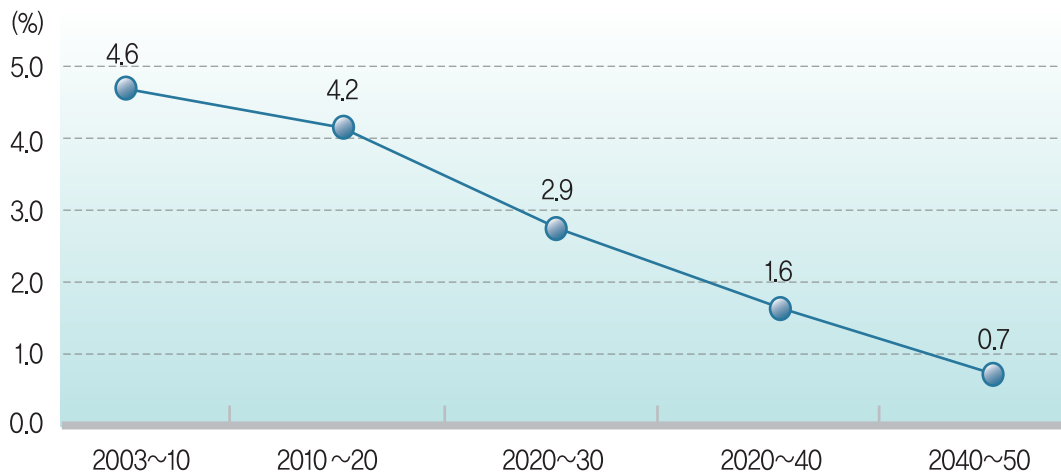
*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15년 63만명, '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2005)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05년 38.0세에서 '20년 41.8세, '50년 43.1세로 증가하여 노동력의 고령화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산업현장 근로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80년 15.7% → '04년 39.5%로 증가, 20대 근로자는 '80년 60.6% → '04년 27.5%로 급감 (경총, 「기업내 근로자 고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56%에서 '20년대 2.91, '40년대 0.74%로 하락 전망

잠재성장률 전망



• 자료 : 잠재성장률 전망(2006, KDI), 합계출산율 1.19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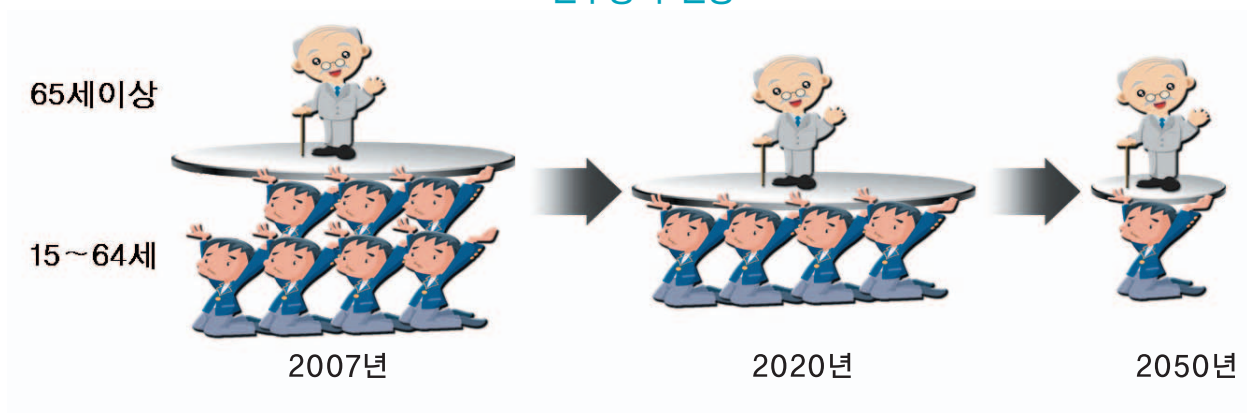
IMF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실질GDP는 생산가능인구 1% 증가시 0.08%p 증가, 노인인구 1% 증가시 0.041%p 감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2004

▶ 사회적 파급효과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

-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0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0명이 노인 1명을 부양 하였으나, '20년에는 4.6명, '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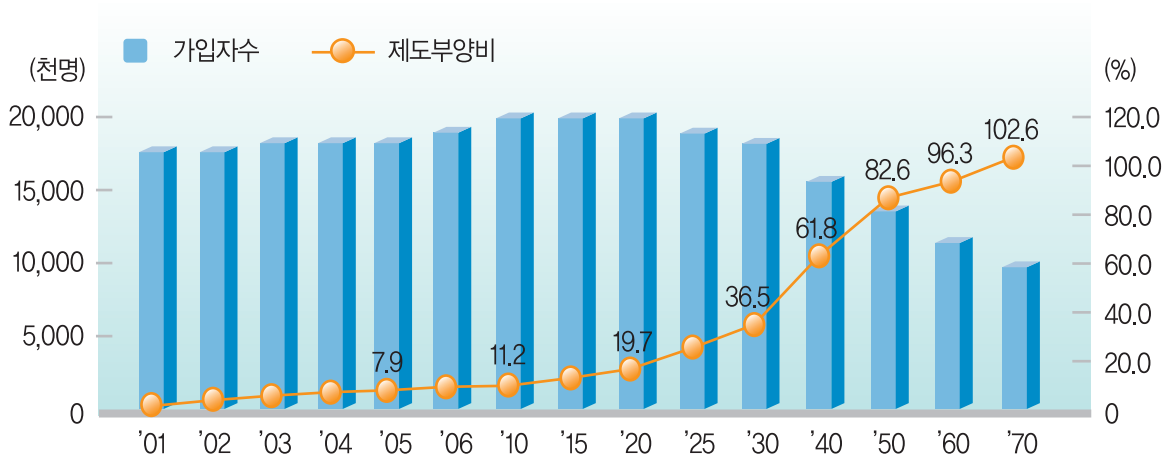
노인부양비 전망



- 연금가입자는 '14년 1,87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

- 국민연금 당기적자가 2044년에 발생하며, 기금은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됨
- 노령연금자 수는 2070년에 가입자 수를 초과하여 제도부양비가 100%를 넘어 설 전망

* 제도부양비 : 노령연금수급자수 ÷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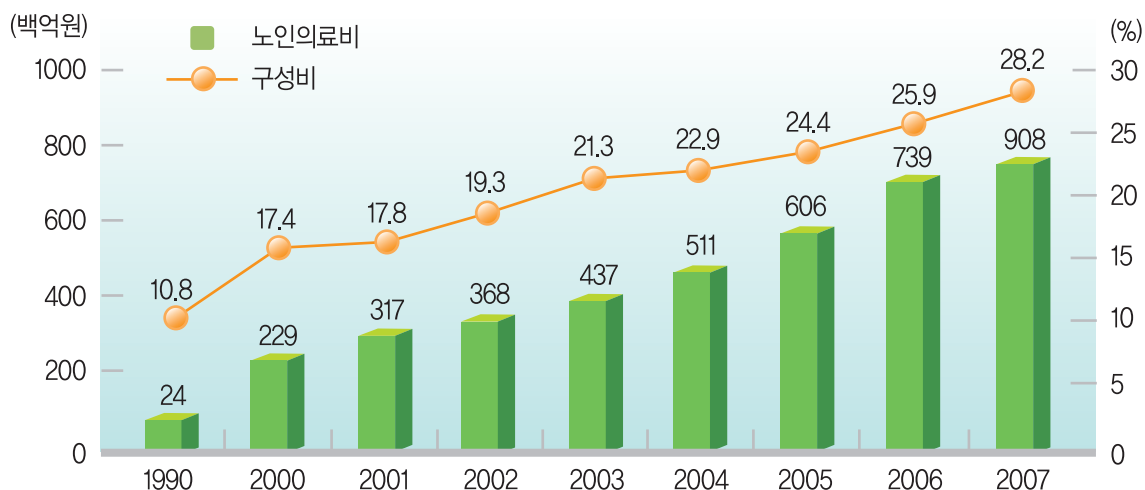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07년 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추계모형 재구축 및 재정시뮬레이션」, 2007.

-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타 연령층에 비해 의료수요가 큰 노인인구(특히, 75세 이상)의 증가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

- '0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은 9.2%이나, 진료비 비중은 28.2% (9.1조 원)에 달하며, 1인당 진료비(207만원)도 전체 평균(67.5만원)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및 전체 의료비 대비 비율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노인 요양비용도 치매노인 수 증가('05년 36만명 → '20년 70만명)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저출산 · 고령화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 ·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노인세대도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나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 저하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77.9세이나, 건강수명은 67.8세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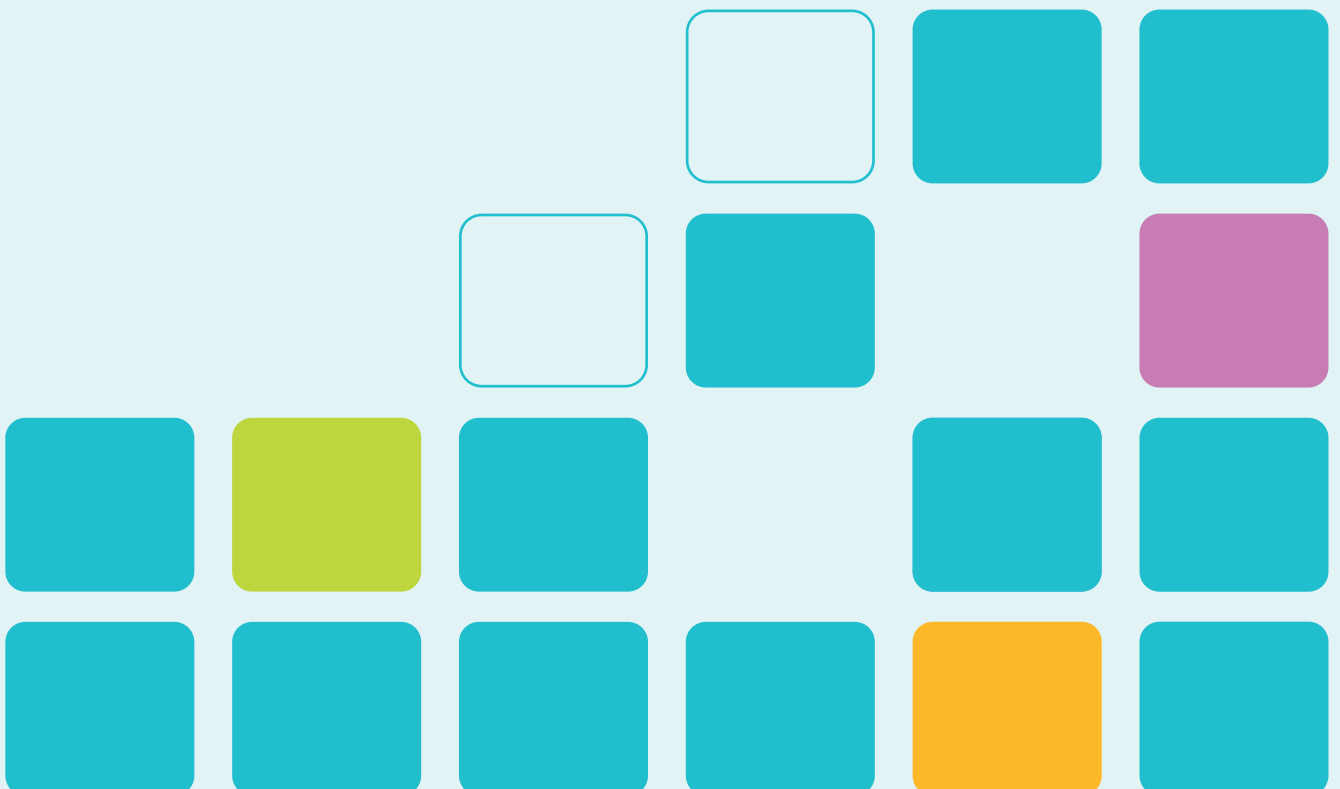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준비가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III

그간의 주요 성과



새로마지 플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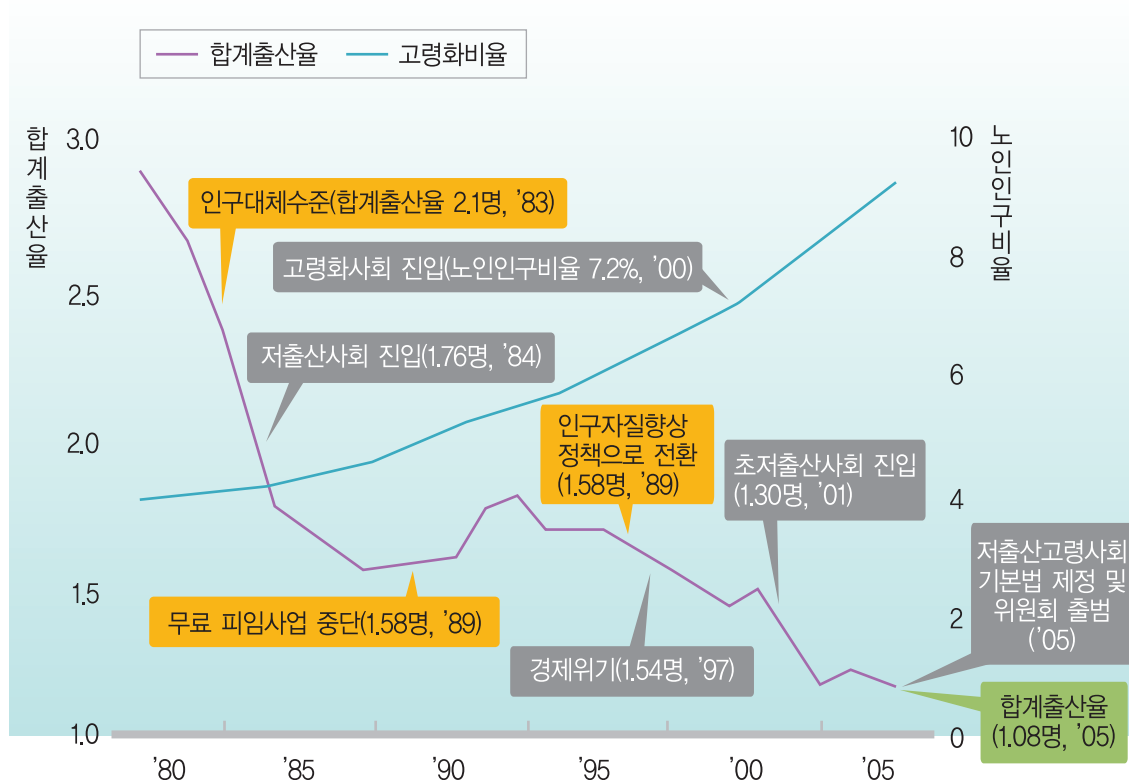


1 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정책 평가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 미흡

- 인구정책,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15~20년간의 정책 시차 존재
-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2.08명)으로 하락하였으나,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대응 지연으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 초래
 - 오랜 인구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정책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녀관도 크게 변화

저출산·고령화 추이 및 관련 정책방향 변화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이후에도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에 한계

- 정책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 효과에 대응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이 중요

❖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으로 국민전체에게 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체감도가 낮은 실정

- 양육 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며, 고령화 역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
- 종전의 정책은 종합적 시각의 결여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

❖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 출산·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

참고 : 인구정책 변천

■ 1961~1995년 : 출산억제정책기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 추진 결정
- 가족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슬로건 : “적게 낳아 잘 기르자”(6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70년대),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70년대 후반~80년대)

■ 1996~2003년 : 인구자질향상정책기

- '9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유지됨에 따라 종전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
- 주요내용 :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저출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사망률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 방지,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AIDS 및 성병 예방, 가족 보건 및 복지증진 등

2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주요 성과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 부처별로 추진되던 정책이 일관된 목표 하에 추진되면서 관련 정책 개발과 함께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 총 투자 규모 증가 : '06) 4.5 → '07) 5.9 → '08) 8.4 → '09) 10.7조원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06		'07		'08		'09		'10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획	예산안	
계	32.1	3.7	4.5	5.7	5.9	7.1	8.4	7.3	10.7	8.3
저 출 산	18.9	2.1	2.1	3.2	3.0	4.0	3.8	4.6	4.7	5.0
고 령 화	7.2	0.8	1.3	1.3	1.6	1.8	3.2	1.4	4.6	1.9
성장동력	6.0	0.8	1.1	1.2	1.3	1.3	1.4	1.3	1.4	1.4

-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
 - 지자체 자체사업 총 투자 규모 : '07) 1.6조 → '08) 1.8조원으로 증가

지자체 자체사업 예시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출산축하금 지급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08년 16개 시·도에서 시행),
- 농어촌 지역의 이동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경남)
- 지역주민센터를 활용, 시간제 보육시설·어린이 놀이시설 등 "영유아 플라자" 설치 (서울)
- 취업여성 자녀가 도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감면 (경기)
- 세 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지원 (제주)
-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 통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국제결혼 지원 (전북 정읍)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넷째이상 고등학생·다섯째이상 대학생 전액지원) (경기 안산)

♥ 감소세가 지속되던 출산율 반등의 단초를 마련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가 지난 2년간 연속 상승

구 분	'05	'06	'07
합계출산율 (명)	1.08	1.13	1.26
출생아수 (천명)	438	452	497

• 자료 : 통계청

- 이는 ①경제 및 가족관계 안정 ②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출산대책 추진 등이 어우러진 결과

♥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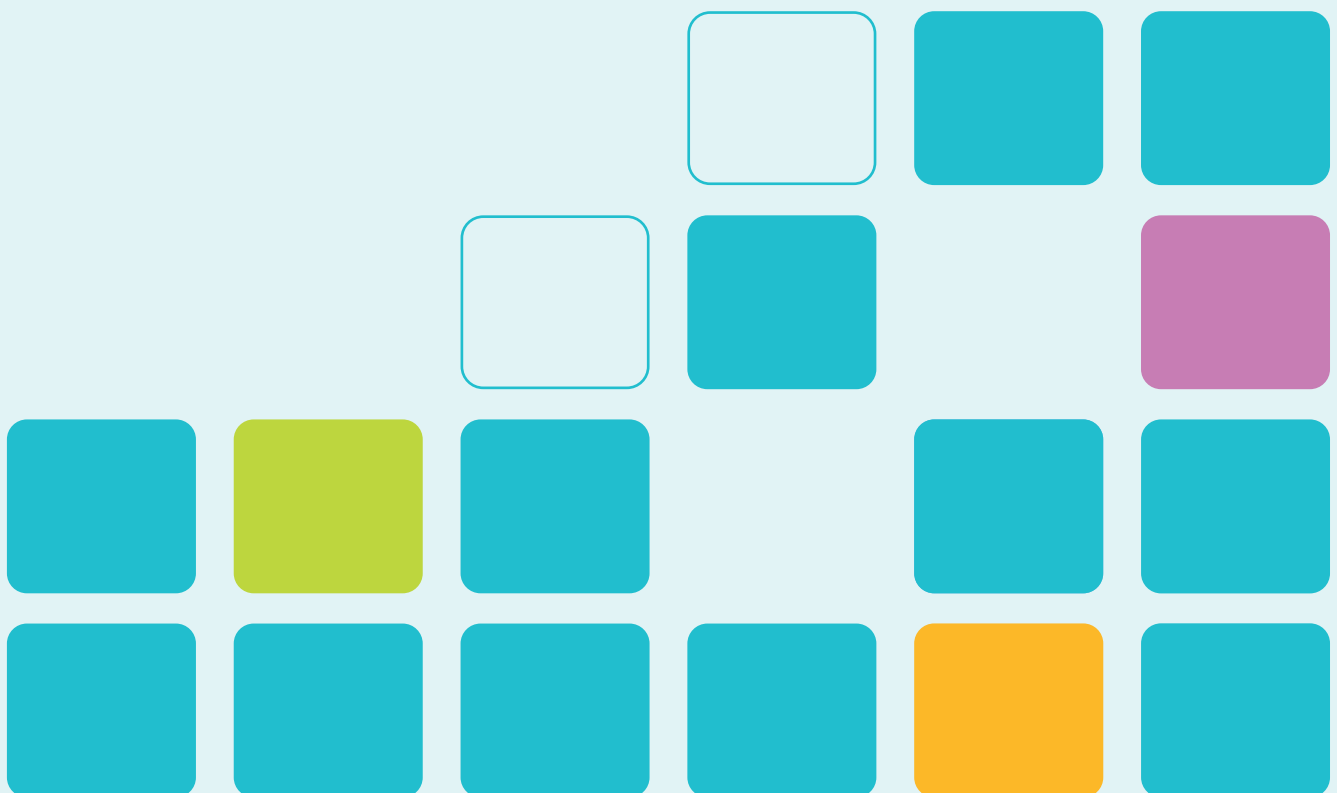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7.12)
 -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목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 대상의 교육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07.12)
 - 배우자 출산휴가(3일) 신설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5~30시간) 도입 등
- 기초노령연금 시행('08~)
 - 노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연금 지급
('08년 기준, 60%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8만 4천원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
 -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간병 서비스 제공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08.3)
 - 직원 모집, 채용에서부터 퇴직, 해고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 금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06.12)
 - 고령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노인 관련 제품·서비스 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IV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새로마지 플랜 2010





1 장기 정책목표

☛ '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실현

☛ '20년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 수립

시 기	추진 목표
제1차 ('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3차 ('16-'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에서 237개 세부사업을 추진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가족 친화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 노인의 사회참여 및 노후준비 기반 마련, 주거·교통·문화 등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 전략적 교육·홍보,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중앙-지자체간 연계 강화,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2 정책 추진방향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정책 추진

- 사회 각 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책임의식 확산
 - 저출산·고령화 대응과정을 통한 세대간·세대내 통합 등 사회통합 유도
-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정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개별정책이 전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에 부합하게 설계·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장기적 정책비전과 목표에 의거한 경제·사회 전반의 대책을 수립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
 -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대응을 통해 미래의 고령 사회에 대비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고령화의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전반의 선진화 계기로 승화

-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정을 통해 보편적 정책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확산을 유도

3 분야별 정책 방향

① 저출산 분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추진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 해소
-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
-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 유도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안전사고, 학대, 학교 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② 고령화 분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 국민에 대한 1차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확립
- 공적연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내실화하여 기본적 생계유지를 지원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반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전 국민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 일상생활에 상당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노년생활의 활력 증진

-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주거·교통·여가·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

-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편안하고 활기찬 가정·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 및 이동성 제고

③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 ·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여성 · 고령자 · 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제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
- 외국적동포와 외국인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고령사회의 제한된 인적자원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인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질병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예방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노인의 생활 편의 및 안전 증진을 도모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 기술적 지원과 함께, 수요 창출기반 마련
- 역모기지, 장기국채시장 활성화 등 고령사회에 적합한 금융기반을 조성하여 자본 시장의 양적 · 질적 선진화 추진

④ 국민인색개선 분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해 전략적 홍보와 생애 주기별 학교교육·사회교육 추진

- 범정부적 홍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확대
-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적합한 사회문화 조성 및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가치 모델 설정·확산

▶ 노동계·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 정책수립과정에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사회주체들의 책임과 역할,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 중앙-지자체간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 발굴·확산
-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과제 범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

-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파급영향이 매우 복잡적이고 광범위하므로 단일 계획 또는 정책만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함께, 고용·소득안정, 학제개편, 공교육 정상화, 주택시장 안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 이들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고용·소득안정은 만혼과 출산연기·포기 완화에 영향
 - 학제개편은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통한 만혼현상 완화에 기여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사교육 부담 해소에 긍정적 영향
 - 주택시장 안정은 결혼의 장애요인 해소에 기여
 -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대책은 고용 창출과 성장에 도움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각 분야 국가계획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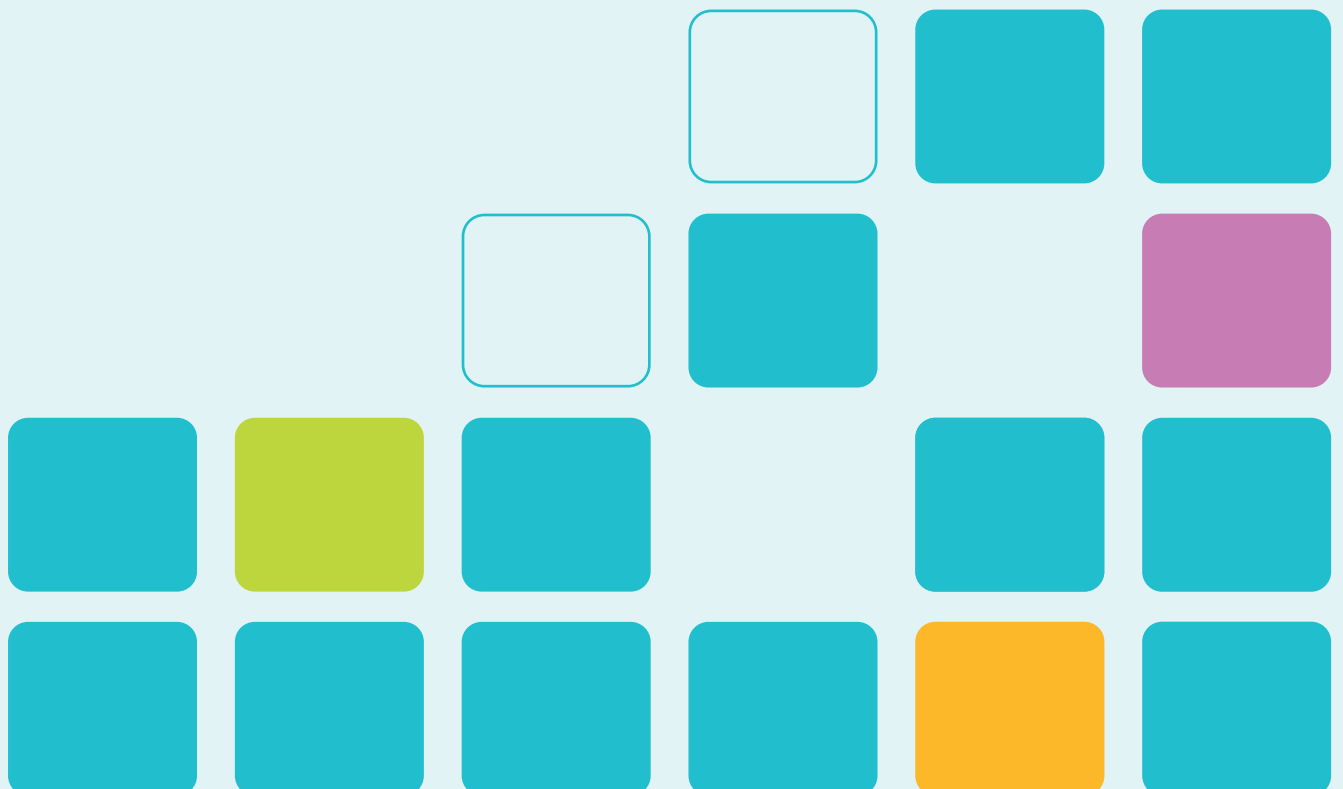
- 이를 감안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과제 범위를 설정
 - 출산·양육여건 조성, 노후소득·건강대책 및 생활기반 조성,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인력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충, 주택시장 안정, 학제개편 등은 타부처 및 별도의 위원회 등에서 계획을 수립·추진중

V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새로마지 플랜 2010



❖ 저출산·고령화는 개인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도전이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고령화 속도를 완화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및 고용·산업 등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고령화의 충격 감소

❖ 출산율 가정에 따른 인구 및 사회경제지표 변화 전망

합계출산율 가정

- 1.00 : 합계출산율이 '35년까지 1.00으로 하락 후 유지
 - 1.08 : 합계출산율이 '05년 수준(1.08)으로 유지
 - 1.4-1.6 : 합계출산율이 '10년 1.4, '15년 1.6으로 회복후 유지
 - 1.4-1.6-1.8 : 합계출산율이 '10년 1.4, '15년 1.6, '20년 1.8로 회복후 유지
- 1.6은 OECD 평균수준, 1.8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고출산국가에 해당하는 북유럽국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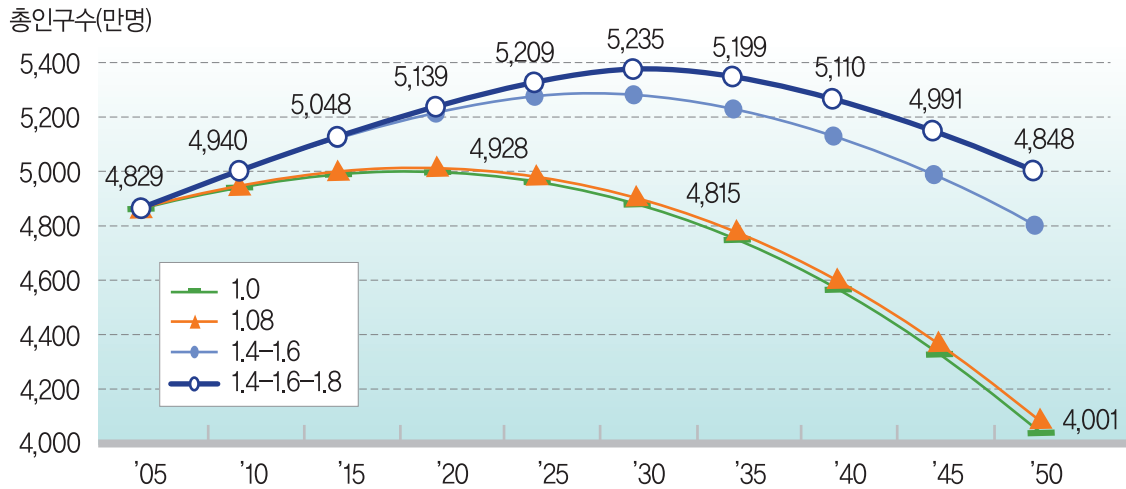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라 총 인구 수, 생산가능인구의 규모 및 평균연령, 노인인구 비율 등의 추계에 큰 차이

- 총 인구와 노인인구비율은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라 단기간에 변화를 보이거나, 생산가능 인구 규모,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 노년부양비에 대한 영향은 '20년 이후에 나타남

❖ 총인구 규모는 '05년 합계출산율 1.08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18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나

- 출산율이 OECD 국가 수준인 1.6 또는 1.8로 회복되는 경우, '30년까지 총 인구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합계출산율 1.08 유지시와 1.8로 회복시의 '50년 추정 총 인구는 약 850만명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합계출산율 가정별 인구규모 변동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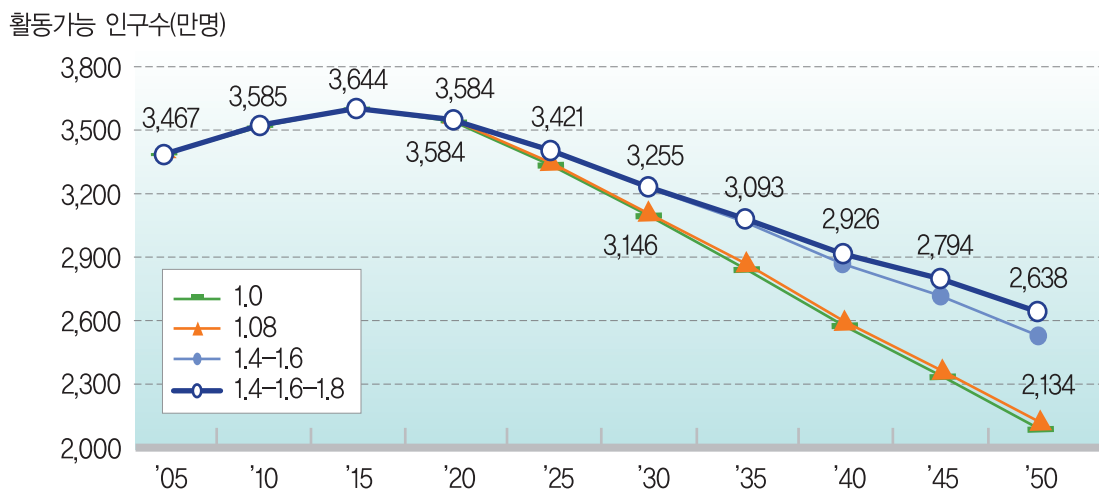


• 자료 : 보사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이하 같음)

🌱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는 출산율이 회복되어도 '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되나, '2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에 따라 감소 폭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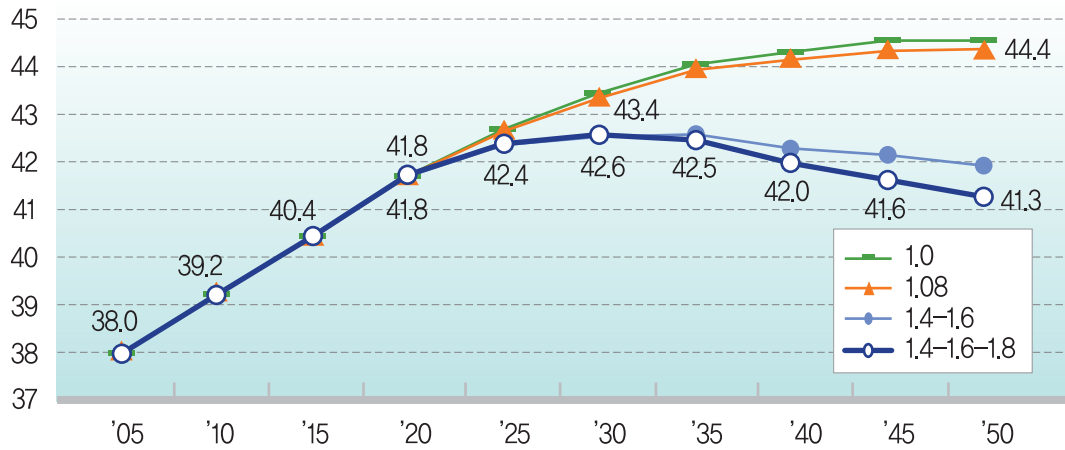
- '30년 이후에는 가정별 차이가 점점 크게 나타남
- 출산율이 1.8로 회복되는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30년 42.6세, '50년 41.3세 이나, 1.08 유지시의 평균연령은 '30년 43.4세, '50년 44.4세로 상승

합계출산율 가정별 생산가능인구 변동 전망



합계출산율 가정별 생산가능인구 평균 연령 변동 전망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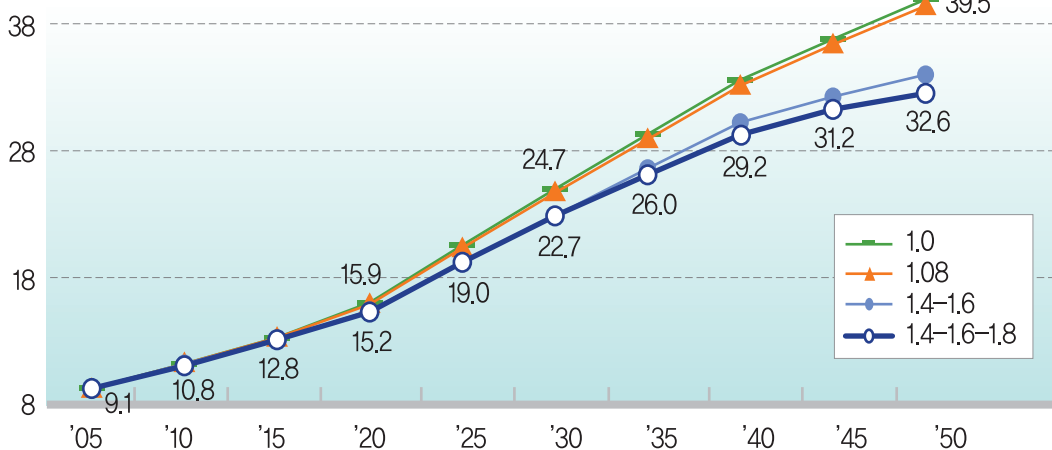


노인인구비율과 노년부양비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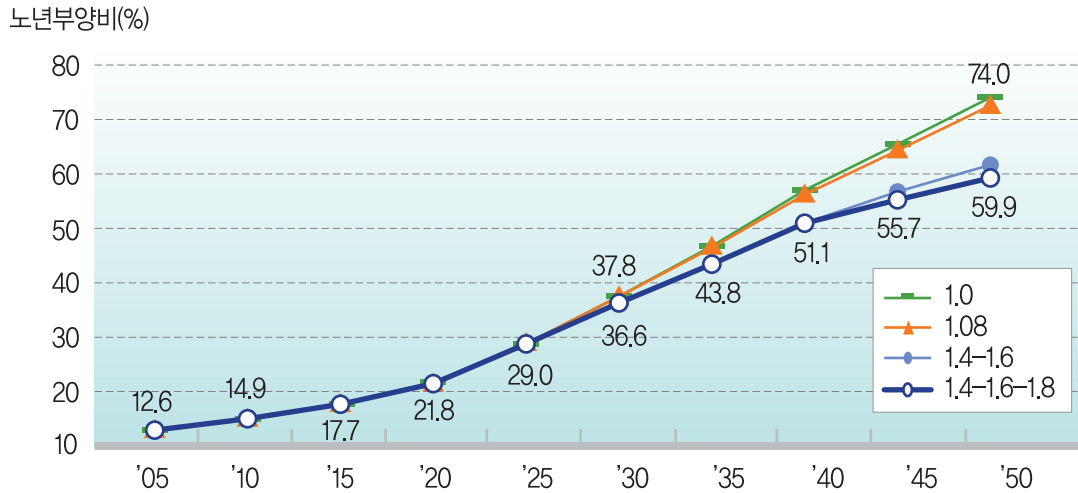
- '05년 합계출산율 1.08이 유지되는 경우 '50년의 노인인구비율이 39.5%인데 비해, 합계출산율이 1.8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32.6%
- 노년부양비도 '20년까지는 차이가 없으나, '20년 이후 차이가 뚜렷해져 합계출산율 1.08 유지시 '30년 37.8%, '50년에는 74%이나, 합계출산율이 1.8로 회복되는 경우 '30년 36.6%, '50년 59.9%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인인구비율 변동

노인 인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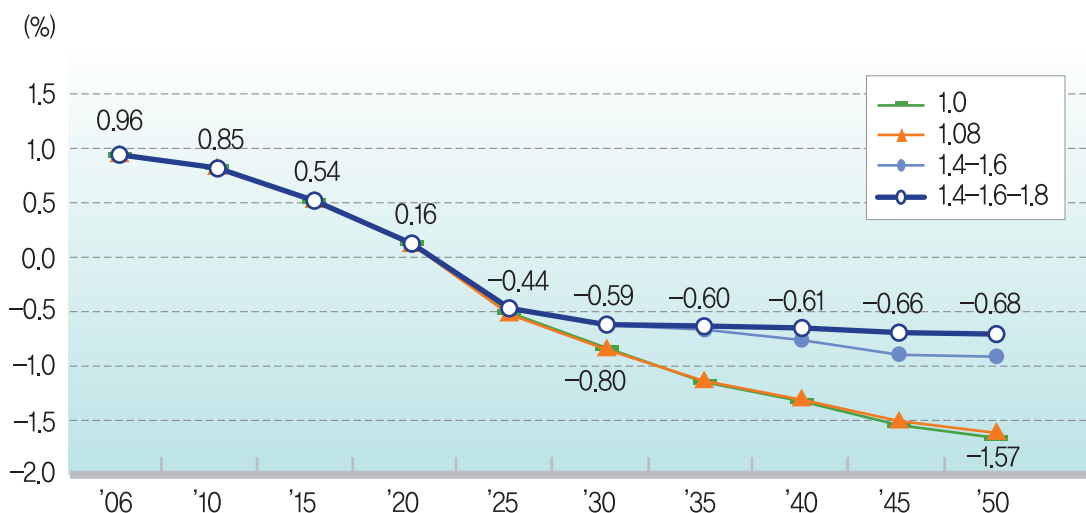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가정별 노년부양비 변동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20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나, 취업자 수 감소 정도는 출산율 변동에 따라 차이

- 현재의 출산율 1.08이 유지되는 경우 '30년 취업자수 증가율은 -0.80%, '50년 -1.57%로 예상
- 출산율이 1.8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30년 -0.59%, '50년 -0.68%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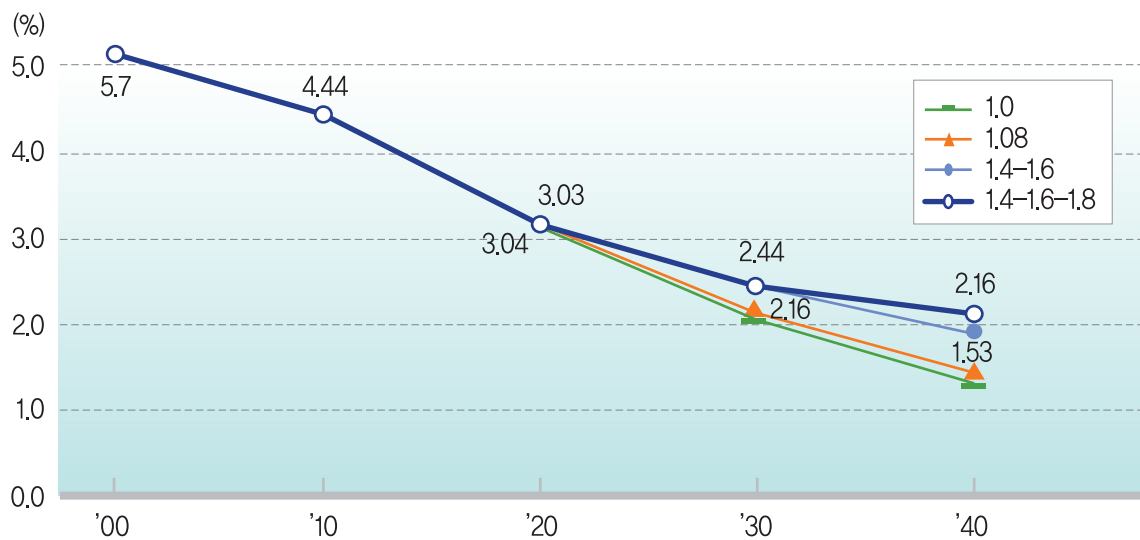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가정별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 (15세 이상)



▶ 잠재성장률은 출산율이 1.08로 유지되는 경우, '30년 2.16%, '40년에는 1.53% 수준으로 전망

– 이에 비해, 출산율이 1.8로 점진적 회복시 '30년 2.44%, '40년 2.16%로 출산율 1.08 유지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성장률을 나타냄

합계출산율 가정별 잠재성장률 전망





새로 마즈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플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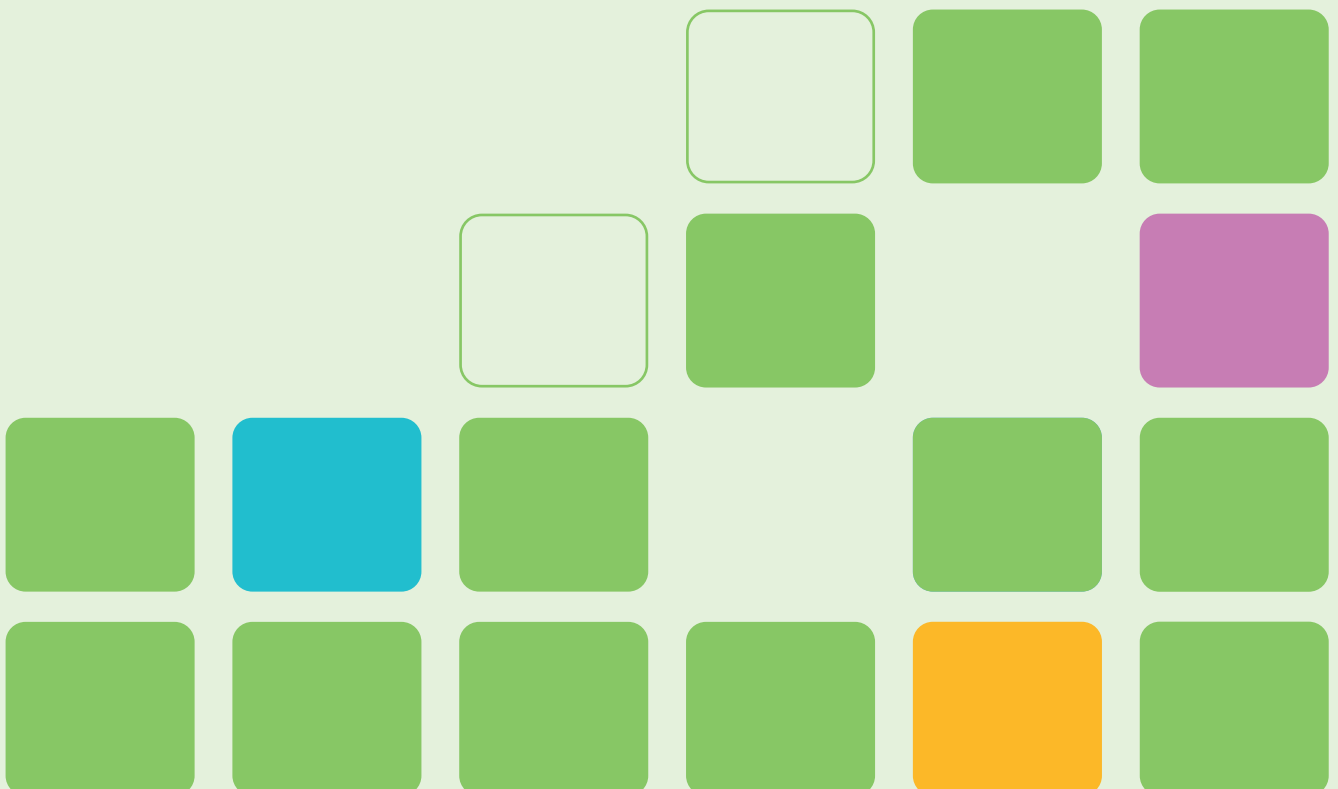
-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III.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I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새로마지 플랜 2010



추진 배경

❧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하는 국민이 출산을 중단·포기하는 것은 주로 사회·경제적 제약에 기인

- 출산연령대 남녀의 희망자녀수는 2명 내외이나 '05년 합계 출산율은 1.08명, '07년에는 1.26명에 불과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어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초저출산 현상 지속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상태가 악화되고 가계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결혼의 연기 및 출산 중단·포기 증가

❧ 보육·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보육인프라의 부족과 함께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도 불충분한 상태

-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사유 중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29.8%에 달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6)
-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가정의 다양한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0~2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희망하는 여성들이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약 30%로 영아보육시설이 크게 부족
 - 1자녀를 가진 전문·사무직 여성의 19.8%가 보육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둘째아 출산을 기피
- 만혼 및 고령출산, 스트레스에 따른 임신소모율과 불임증이 증가하고 있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제도 필요

❧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결혼과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5년 47.2%에서 '07년 65.4%로 증가하였고 30~34세의 경우도 47.0%에서 52.0%로 증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적 분담 수준 확대 필요
 - 중소기업에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에 대한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나, 대기업은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무거운 실정
-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고, 휴직 중 기업의 인력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실정
 - *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의 비중은 36% 수준('07)
-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직장문화 부족으로 출산 전후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는 근로여건 미흡
 - * 기혼여성(20~44세)의 49.9%가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구축 미흡

-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가족해체의 증가, 아동학대·폭력 증가 등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급증
-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범사회적 노력 부족

추진 배경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②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③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출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하는 출산율 회복정책을 추진

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

- 젊은 세대에게 결혼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보금자리 마련 지원 등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여 만혼화 현상 완화
-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비용의 직접적 지원, 방과후 학교의 대폭 확대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시행
 - 자녀가 많은 가정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시설 확충, 민간 육아지원 시설의 서비스 개선 지원 및 질 관리 강화
 - 부모가 근로시간 등 직장여건에 따른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 모성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영양 관리 시스템 구축
 - 아이 낳기를 희망하나 불임 문제로 고통 받는 가족을 위해 불임시술 비용 지원

-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

②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 강화
 - 육아휴직제도 다양화, 근로형태 유연화 등으로 출산·육아기 이후 직장 복귀가 용이하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여성들이 출산·육아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가정·사회에서 가족가치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가사 및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사노동 분담 및 성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홍보 지속 추진
 - 가족원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단위 여가문화를 지원

③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보호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유해환경으로 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 빈곤가정의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자립자금을 함께 저축하는 아동발달지원 계좌 확대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 결혼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 지원

1 결혼 · 출산 주연령층 대상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가. 현 황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법적 혼인상태에서 출산하고 있으나, 혼인율은 하락하고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율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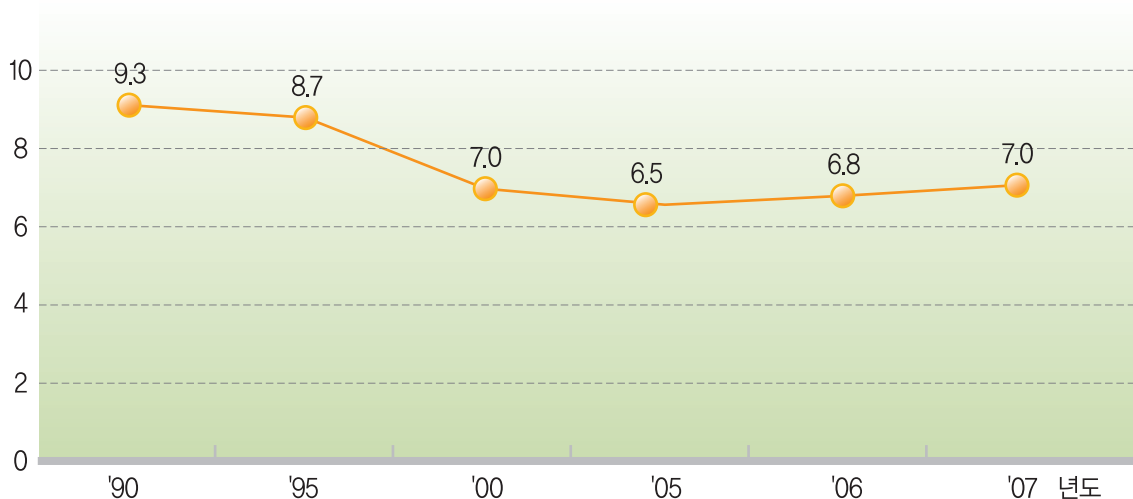
– 혼인상태 출생비율 : ('00)99.1→('05)98.5%, 미 63.2, 영 57.1, 프 51.6, 일 98.0

– 천명당 혼인건수 (조혼인율) : ('90)9.3→('95)8.7→('00)7→('05)6.5→('06)6.8→('07)7건

– 초혼연령 : ('90)남27.9 여24.9 → ('95)남28.4 여25.4 → ('00)남29.3 여26.5
→ ('07)남31.1여 28.1세

* 20~24세 결혼시 평균출생아 1.94명, 25~29세 결혼시 1.65명, 30~34세 결혼시 1.22명, 35~39세 결혼시 0.73명으로 감소

연도별 조혼인율



• 자료 : 통계청 혼인통계

-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 단축, 불임 증가 등이 저출산의 주원인 중 하나이나, 그간 만혼화에 대한 직접 대응은 미흡
 - '80년대까지는 유배우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이었으나, '90년대부터는 결혼연령 상승이 주원인으로 작용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단위 : %)

구 분	'59~'69	'70~'79	'80~'89	'90~'99 ('95~'99)	'99~'04
유배우출산율 감소	90	85	61	-95(-2)	49.1
결혼연령 상승	10	15	39	195(102)	50.9

•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07년 현재 1000여개(9월경 정확한 통계 집계) 결혼정보회사가 영업중이나, 고비용 및 부정확한 정보취득 등으로 인해 적령기 남녀의 보편적 접근 곤란
 - 상품 및 업체 광고 목적 외 결혼준비 및 결혼생활에 대한 객관적 통합정보 제공 사례 전무
 - '0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부부교육 및 상담 실시('07년 현재 65개소 운영) 중이나, 기혼 유자녀자에 치중
-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등이 곤란하여 결혼 및 출산을 연기 하는 단절현상 발생
 - 더욱이 최근 남성의 군복무 연령층이 상승하고 있어, 군복무기간 중 결혼 및 출산의 연기로 인한 만혼화 현상을 심화

나. 추진계획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지원사이트(www.match.kr)를 확대 개편하여 결혼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저비용 결혼 알선, 정확한 신용관리를 통해 미혼자의 접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강한 만남의 장 제공
- 결혼준비, 건강한 가정생활 등 결혼과 관련한 종합정보 제공
 - * 만남 - 결혼준비 -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한 단계별 정보 제공

☞ 대학생 및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상호의사소통, 갈등관리, 일과 가정의 균형, 임신출산육아 체험 등을 통해 건강한 결혼관 및 자녀관 확립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고 대학 교양강좌에 가정생활 관련 내용을 보강

☞ 현역 및 예비역 장병 대상 교육시 결혼·출산·육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남성에 대한 교육 강화

- 정훈 교육,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전·의경 교육 등 남성 집합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09~)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을 확대하여 평등한 가족문화조성

☞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병행하는 결혼·출산 주 연령층의 결혼초기 생활 안정이 필요

- 기혼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하고, 배우자 임신 또는 자녀양육 사유시 입영기일 연기('07.7.1 시행)
 - 유자녀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분류하여 가정생활 병행('08.1.1 시행)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가. 현 황

- 주택 구입 및 임차 등 결혼준비비용 부담의 증가는 만혼화 경향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요이유 중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혼비용의 대부분은 주거비 부담
 - ※ '07년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1억 7,245만원이고, 그중 주택마련비용은 1억 2,260만원 (71.1%)('08년, 한국결혼문화연구소)

미혼남녀(20~44세)가 결혼하지 않는 주요 이유

(단위: %)

성 별	경제적상황	결혼 비용	결혼생활의 어려움, 자아성취 방해	결혼나이	마땅한 상대 없음	결혼생각 없음	기 타
남 자	31.7	11.5	11.5	27.7	9.6	2.6	5.5
여 자	10.2	7.6	20.6	35.9	14.2	5.9	5.6

• 보사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 유배우여성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 중 ‘주택마련 곤란’ 이 1.7%를 차지하는 등 미혼 뿐 아니라 기혼자에게도 주택마련은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청약가점제의 도입('07.9)으로 인하여 신혼부부의 신규 주택시장 진입 곤란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중단 이유

(단위: %)

분 류	이 유	전 체
경제적불안정	소득부족	20.5
	실업/고용 불안정	1.8
자녀양육환경 미흡	자녀양육위한 주택마련 곤란	1.7
	육아지원시설/가족지원부족	13.0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비 부담	28.6
	자녀교육비 부담	2.9
일-가정 양립곤란	출산으로 인한 직장차별	0.1
	사회활동지장/자아성취 곤란	3.4
개인/부부중심 가치관	부부역할분담 불공평	3.2
	여가/부부생활 향유 곤란	0.5
출산건강수준 열악	불임	6.1
	건강문제	6.1
기타		12.4

• 보사연,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나. 추진 계획

▶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및 주거비 경감을 통하여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고자 보금자리 주택을 특별공급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60㎡이하 소형분양주택의 30%와 전세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신설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08.7)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정('08.7)

▷ 임대주택(2.5만호) : 국민임대 2만호, 전세임대 0.5만호

▷ 분양 또는 분양전환주택(2.5만호) : 10년임대 등 공공임대 1만호, 소형분양주택 1.5만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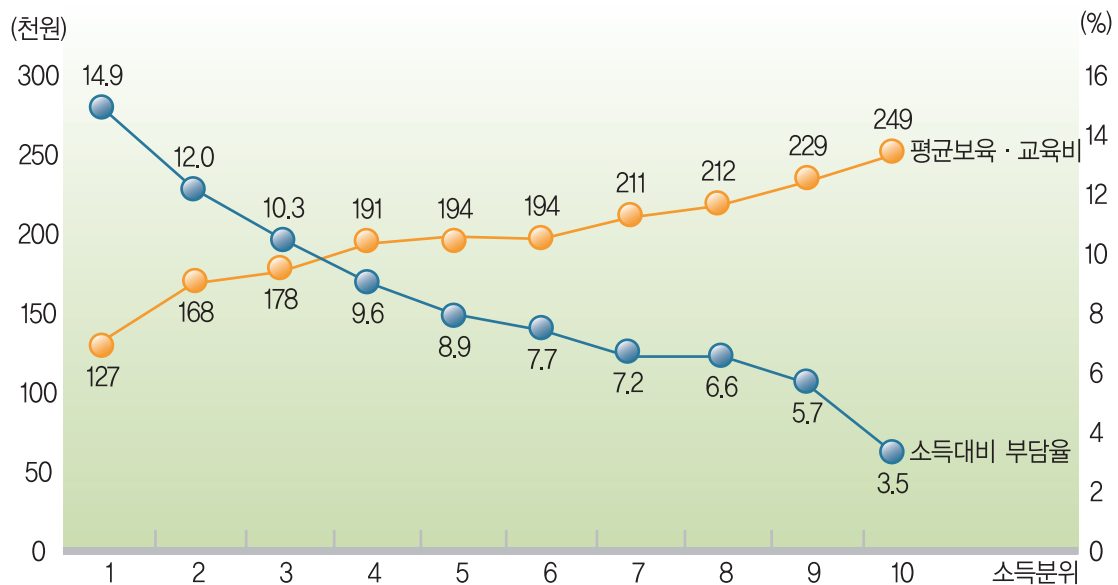
-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결혼(재혼포함) 5년 이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 출산(입양포함) 이후 청약 가능
 - 저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月 257만원, '07, 통계청)로 제한하되, 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月 367.5만원)로 기준 완화
 - 공급순위는 결혼년차에 따라 결정(1순위 : 결혼 3년 이내, 2순위 결혼 5년이내)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 많은 사람이 우선 → 추첨
-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저리의 구입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연간 7만 세대)
 - (구입자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
 - (전세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4.5%, 2년 상환(최장 6년), 6천만원 한도

1-2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 사회적 부담 경감

1 보육 · 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가. 현 황

-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 대비 보육 · 교육비 지출은 평균 8.3%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1%에 달함



•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보육 · 교육실태조사」, 2005

- 정부는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육 ·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을 차등 적용 중
 - 만 0~4세아 차등보육 · 교육비, 만5세아 무상보육 · 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현황

('08년 기준)

구 분	지원대상 가구	지원수준	대상자수(천명)
만0~4세아 차등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비의 100, 80, 60, 30%	730 (621+109)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보육·교육비 전액 보육시설·사립 유치원, 월 167천원 (국공립 유치원, 월 55천원)	257 (130+127)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둘째아부터)	보육·교육비의 50%	84 (70+14)
장애아 무상보육·교육비	보육시설 이용 장애아 (만12세 이하)	보육료 전액 (월 372천원)	15
	유치원 이용 장애아 (만5세 이하)	교육비 전액 (사립 유치원, 월 361천원 국공립 유치원, 월 90천원)	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교육비의 70% (만5세아는 100%)	29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지소유 5ha 미만	보육·교육비의 35% (만5세아는 50%)	25

- ()안의 대상자수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유치원 이용아동
- '0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 398만원

연령에 따른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수준('08년)

- 보육비 : 만0세아 372천원, 만1세아 327천원, 만2세아 270천원,
만3세아 185천원 만4~5세아 167천원
- 교육비 : 만3세아 185천원(사립), 만4~5세아 167천원(사립),
만3~5세아 55천원(공립)

나. 추진계획

▶ 만0~4세아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 만0~4 영유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
-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09년)
 - 연차적으로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 만 5세아 보육·교육비, 2자녀 이상가정 추가지원, 장애아 및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속 시행

- 취학준비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욕구가 높은 만5세 아동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까지 전액 지원
- 육아지원시설 이용 장애아에 대하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대하여 둘째아부터 보육·교육비의 50%를 추가 지원
- 일정규모(5ha) 이하의 농지 소유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위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자녀 양육비 지원

▶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제도 도입

-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토록 개편

▶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e-보육,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39개),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가. 현 황

-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가정의 어려움으로 출산 중단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자녀양육비용은 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 (보사연, 2006)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큰 상태
 -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0~2세) 의 비율 69% (0세 84.7%, 1세 72.1%, 2세 50.5%)
 - * 0세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정부는 월34~71만원 지원하나, 가정 양육시 지원 전무
 -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대신 조부모 · 친인척 등 가정양육 비율이 큼
 - *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조부모 · 친인척 양육이 70.9%, 가사대리인 9.4%
- 대다수 OECD 국가 (우리나라 · 터키 등 4개국을 제외한 26개국) 를 비롯한 전세계 90여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도 양육지원 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중
 - * 서울시 :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월10만원) 지원
 - 부모의 부담이 큰 영아기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

나. 추진계획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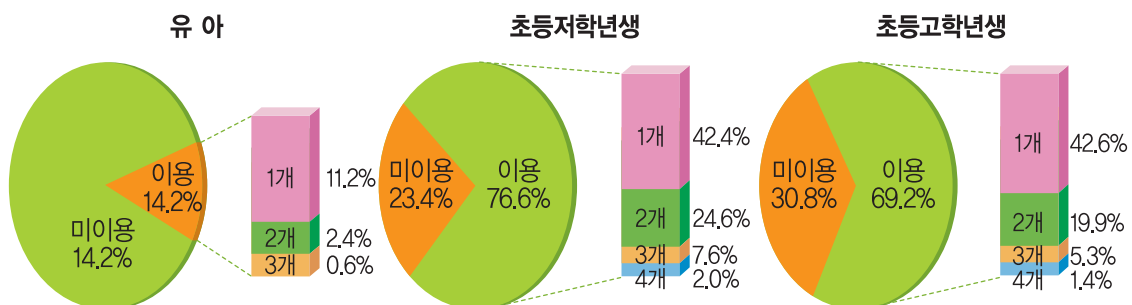
- 보육시설 ·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차등보육료 · 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 '09년 차상위 계층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신청시 양육수당 또는 보육시설 이용료 중 선택
 -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보육시설 이용료와 양육수당을 모두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3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가. 현 황

- 방과 후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아동의 학습 보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사교육비는 자녀양육 가정에 큰 부담이며, 출산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아동의 방과후 보육·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할 필요
- *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76.6%, 고학년은 69.2%

사설학원 이용현황



• 자료 :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2005

-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필요
- 초등학생 학부모의 47.2%가 방과후 학교에서 자녀를 보호해주기를 희망하나,
 - 학부모·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이 미흡
 -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지원 필요
- * 초등학생 31.3%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교과부, 「방과후 교육활동 현황」, '05. 3)
- 초·중등 학생에 대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04년 3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후 '05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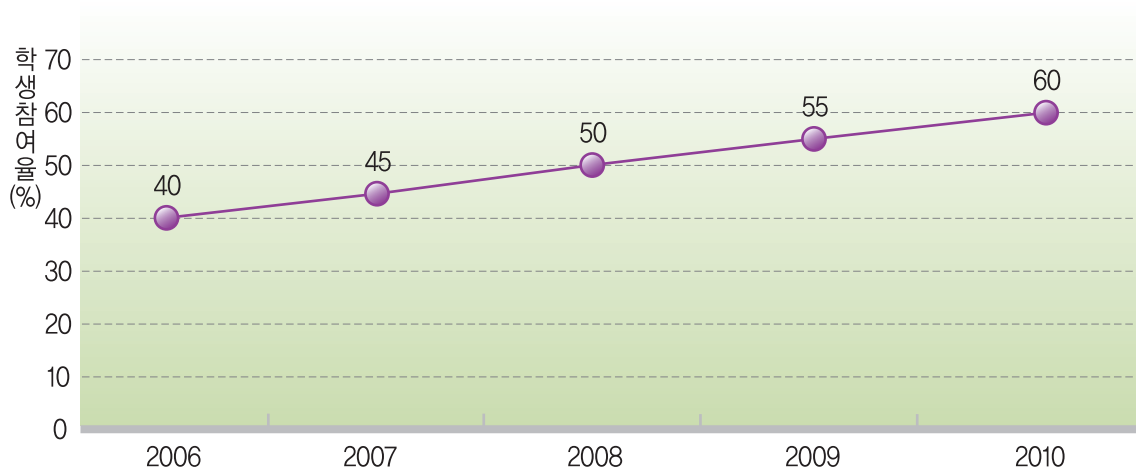
-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역,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부담 해소

나. 추진 계획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의 개방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교원,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 전망



- 방과후 학교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바우처 (자유수강권)를 지급하여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 이용 쿠폰 지원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
 - 지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수용학생 및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차상위계층 등)

- 이용 프로그램 : 본교 및 타교에서 개설한 방과후학교 강좌 및 학교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강좌 등
- 바우처 지원대상 학생 수 확대 :
9만명('06)→27만명('07)→32만명('08)→35만명('09)→39만명('10)
- 농·산·어촌 지역은 바우처 위주의 운영만으로 자립이 어려우므로 별도 지원 추진
- 지역 단위로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총액 지원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기자재비, 이동수단비 등으로 활용
- * '06년) 19개 군 선정 운영 모델 개발 → '08년) 140개 시·군(전체 농산어촌 지역)

❖ 방과후 학교 초등 보육교실 운영확대

-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보육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초등 보육프로그램 확대 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시행 학교(개교)	1,100	2,400	2,549	2,799	3,100

❖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 사이버 가정학습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실질적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으로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지역별로 시행중인 인터넷 교육방송 등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 콘텐츠 제공
 -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보충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중장기적으로 e-러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보완 기능 강화

4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가. 현 황

- '04년 출산·양육관련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용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출산·양육 관련 소득공제 및 비과세 규모

('08년 기준)

종 류			현 황	근 거
소득 공제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 공제	소득세법\$50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한 당해연도 해당 자녀 200만원 추가공제	소득세법\$51
		다자녀추가공제	자녀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소득세법 \$51조의2
	특 별 공 제	교육비	- 영유아 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초·중·고생 교육비 : 1인당 200만원 한도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7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소득세법\$52
		의료비	자녀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금액 소득공제 (연 500만원 한도)	소득세법\$52
		보험료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소득세법\$52
		기부금	아동복지시설 및 모자복지시설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	소득세법\$52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소득세법\$12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 독신가구와 4인 가구간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OECD 평균은 5.5%p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2%p에 불과
 - 조세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

가구유형별 소득세 부담률 국제비교

구 분	평균소득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률(%)		가구유형별 차이 (%p)
	독신자 가구	4인 가구 (부부+ 2자녀)	
한 국	4.6	2.1	2.5
미 국	16.9	4.1	12.8
독 일	22.0	3.3	18.7
프랑스	14.1	8.2	5.9
일 본	8.1	4.3	3.8
OECD평균	15.9	10.4	5.5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6/2007」, 2008
 • 소득세 부담률(%)= 소득세/근로소득

-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절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자녀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 불리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부과하여 육아휴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외국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인정하여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녀양육 크레딧(Credit for childcare) 실시
 - * 자녀 1인당 프랑스 2년, 독일 3년, 스웨덴 4년, 오스트리아 4년의 납입기간 인정

나. 추진계획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체계 개편 (적용시기 : '09.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는 확대
 - * 1인당 공제 확대 : 100만원 → 150만원
-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초 공제를 일부 축소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
 - * 근로소득 기초공제 축소 : 500만원 이하구간 : 100% → 80%
- 자녀 교육비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확대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효과

(단위 : 만원)

총급여	1인 가구				4인 가구			
	현 행	개 정	증감액	증감율	현 행	개 정	증감액	증감율
3천만원	87	68	△19	△21.3%	48	29	△19	△40.1%
6천만원	534	460	△74	△13.8%	474	385	△89	△18.8%

▶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 ('09~)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생활수준점수 산정시 2자녀 이상 가구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육아휴직자는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보험료의 50%를 경감 ('07.7~)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운영 내실화

-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08.1~)
 - 둘째 자녀 1년, 셋째 자녀부터 1년 6개월 (최장 50개월) 부여
 -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적용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쪽에 균분

5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가. 현 황

- 주택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주거비용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주거안정을 이루기 어려움
-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혜택으로 체감하기에는 미흡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동일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점 혜택 부여 ('05. 11월)
 - * 3자녀 가구에 3점, 2자녀 가구에 2점 부여

나. 추진계획

▶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택 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

-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실시 ('06. 8월~)
 -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특별공급 실시
 - 다자녀 가구의 많은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85m² 초과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실시

▶ 다자녀 가정, 초기 가정형성기 등 실수요층에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혜택 부여

- 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0.5%p 수준의 우대금리, 한도 5천만원 상향 적용 중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한도 2천만원 상향 적용 중

6 미혼모 · 미혼부 지원 확대

가. 현 황

- 미혼모 · 미혼부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나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부족하고, 기존 제도 활용도 미흡
 - 미혼모 지원은 출산 전후 회복과 단기간 시설 거주 제공 정도에 그쳐 자녀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
 - * 08년 현재 미혼모자 보호시설 25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5개소
 - 임신 · 출산 · 양육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서비스 등의 국가 지원이 미혼모에 적극 적용되지 못함
- 최근 자녀양육 희망 미혼모의 증가추세와 우리사회의 선진화 수준을 고려할 때 미혼모 · 부의 역량강화와 자녀양육 지원 필요
 - 가족의 지지와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미혼모의 자녀 양육 의사 증대
 - * 시설입소 미혼모 중 양육희망 비율(여성부): 1.2%('98년) → 11%('01년) → 31.7%('05년)

나. 추진계획

♥ 미혼모 · 부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 ('09년~)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 · 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전문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 · 운영하여 미혼모 · 부자 지원
 - 129센터와 공조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위기발생에 대처하고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직업연계, 보호시설 등과 연계
 - 위기상황 지원, 자녀양육 및 생활계획 상담 등 미혼모 · 부의 초기안전망 역할 담당
 - * ('09년) 10개소 → ('10년) 16개소

기초생활보장 적용 기준 완화를 통한 생계지원

- '03년부터 시행된 “미혼모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철저히 적용하고, 적용시기를 출산에서 임신초기로 확대('09년~)
 - 미혼임신의 산전관리 및 영양보완으로 미숙아 출산 등 예방
- 주민등록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미혼모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여 보호

미혼모자 가족 거주지 지원

- 미혼모 · 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확대 ('10년~)
 - 기존매입임대주택(국토해양부,주택공사)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주택확보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양육에 적합한 구조로 시설 개조 ('09년~)

1-3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가. 현 황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
 -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0.8%에 불과
- * 보육시설 만족도(4점 만점) : 국공립 보육시설(2.89) > 민간 보육시설(2.84)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 및 이용아동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직 장	가 보 정 육	부 협 모 동
				법인외	민간개인			
시설수(개소) (%)	30,856 (100)	1,748 (5.7)	1,460 (4.7)	1,002 (3.2)	13,081 (42.4)	320 (1.0)	13,184 (42.7)	61 (0.3)
아동수(명) (%)	1,099,933 (100)	119,141 (10.8)	118,211 (10.7)	55,906 (5.1)	612,484 (55.7)	15,124 (1.4)	177,623 (16.1)	1,444 (0.2)

• 자료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7. 12월 (직장보육시설에는 비의무사업장에 설치 시설수 포함)

- 특히 중소도시 이하 취약지역의 국공립시설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

보육시설의 지역별·시설유형별 분포

구 분	국·공립	법 인	법인외	민 간 개 인	직 장	가 정	부 협 모 동	계
대 도 시	7.5	3.1	3.2	43.9	1.3	40.7	0.2	100.0
중소도시	3.4	3.0	1.9	40.5	0.9	50.2	0.2	100.0
읍면지역	7.2	13.7	7.1	43.8	0.9	27.4	0.0	100.0

• 자료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7. 12월 (직장보육시설에는 비의무사업장에 설치 시설수 포함)

-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 비중이 낮아 향후 추가수요 발생 시 대응 곤란
 - 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68.6%가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만 3세 미만 영아는 21%만이 시설 이용

영유아 연령별 육아지원시설 이용현황

구 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 고
전체아동	2,832,282	449,027	439,640	449,410	476,281	490,314	527,610	통계청 (’07,추계인구)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	1,038,615 (37)	68,908 (7)	122,663 (12)	222,258 (21)	237,919 (23)	207,305 (20)	179,562 (17)	보육통계 (’07.12.31), 여성가족부
유치원 이용아동수 (%)	535,057 (19)	-	-	-	93,005 (17)	170,726 (32)	271,326 (51)	교육통계연보 (’07.12.31) 교육부

• 주)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1,099,933명) 중 만6세 이상 아동 제외

- ’06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율 증가 추세 : ’05년 21.6% → ’06년 25.7%
→ ’07년 32.0% → ’08.6월 59.5%

구 분	의무사업장 (개 소)	의무이행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
		계	설 치	수 당	위 탁	
2008.6월말	817	486	275	168	43	331
	100.0%	59.5%	33.6%	20.6%	5.3%	40.5%

나. 추진계획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 신축 · 기존시설 활용 등 다양한 확충방식 추진
 - * 민간시설 매입, 복지관 등 공공건물 신축 시 복합화, 폐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 의무설치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 학교 신설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 학교 BTL 사업 추진시 설립된 병설유치원에는 종일제 운영

BTL 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 ·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 · 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장에 시설설치비 융자 및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 보육아동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보육수당 지급 및 위탁 보육 권장
- 체계적인 직장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수요를 반영한 보육서비스 제공 유도
 - * 근로여건(3교대 근무, 산업단지), 육아여건(영아보육, 원거리 거주)을 고려, 수당, 원 · 근거리 위탁, 직접설치 중 선택하는 수요조사 실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관리

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가. 현 황

- 보육아동의 70%가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부모 만족도가 국공립보육 시설에 비해 낮은 실정

* 보육시설 만족도(4점 만점) : 국공립 보육시설(2.89) > 민간 보육시설(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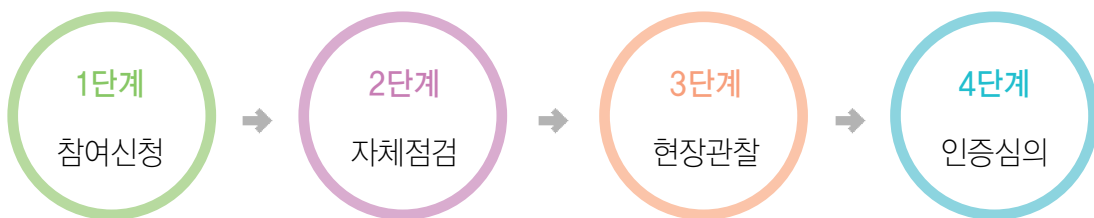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2005)

나. 추진계획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시설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실시
 - '09년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1차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향후 매3년마다 재인증 추진

평가인증 과정



-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공립·법인, 일정규모 이상 민간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 의무화 및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3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가. 현 황

- 부모의 육아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부족
 - 대부분 보육시설은 오후 7시 30분에 종료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시설은 전체의 9%에 불과('07년, 2,867개소)
 - 종일제 유치원의 경우 '01년 12.7%, '03년 34.3%, '05년 62.5%에서 '07년 81%, '08년 91% 수준으로 지속 증가
- 핵가족화와 맞벌이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정내 자녀양육 기능이 약화되어 아동 돌봄에 공백이 발생
 - 보육대상(0~5세)아동 283만명 중 44%는 시설 미이용 ('07년)
 - *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미이용률이 79%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나. 추진계획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연장보육을 위한 보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월 100만원) 지원
 - * 인건비 지원대상 : '07) 4천명 → '08) 5천명 → '09) 5천명 → '10) 6천명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돌보미 파견지역 확대로 이용의 편이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 양육자의 출장·야근·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 아이돌보미 파견지역 및 수혜아동 : 38개 지역 14만명('07) →
65개 지역 20만명('08) → 65개 지역 22만명('09)

- 지원가족 유형 및 아동 특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발

🌱 동네 품앗이 육아망 구축

- 공적, 민간기구의 돌봄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형태 모색으로 양육 문제 해결의 유연성 도모
 - 3개년 시범사업 추진 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검토 ('08년 10개 지역~'10년 30개 지역)
 - 가족봉사단, 자원봉사자 등 풀뿌리 자조모임을 활용하여 품앗이 육아망 구축
- 품앗이 조를 연결해주는 역할담당자 (코칭리더) 선정, 교육
- 돌봄필요 5~10가구를 1조 체제로 구성하여 1개 지역내 10~20개조 50~100가구 운영

동네품앗이 육아망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육아망 코치(Community Care-network Coach, CNC) 로 양성
- 온-오프라인상 품앗이를 희망하는 가정을 연결하고 관리
예) 전업주부-맞벌이, 맞벌이-맞벌이, 할머니-맞벌이 가정 등 연계

🌱 종일제 운영 유치원을 '08년 91%에서 '10년까지 전체 유치원(100%)으로 확대

-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 '08년~'10년, 매년 200억원 지원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가. 현 황

- 임신·출산 관련 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임신 중 산전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자녀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임신에서 출산까지 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약 50~70%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됨
 - * 분만 비용(입원)은 자연분만시 본인부담이 면제(제왕절개는 20% 본인부담)되고, 상급 병실·선택진료 이용시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 * 산전 진찰 비용(70만원 내외) 중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49만원 내외)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부담

임신·출산 관련 1인당 평균 비용 실태조사 (건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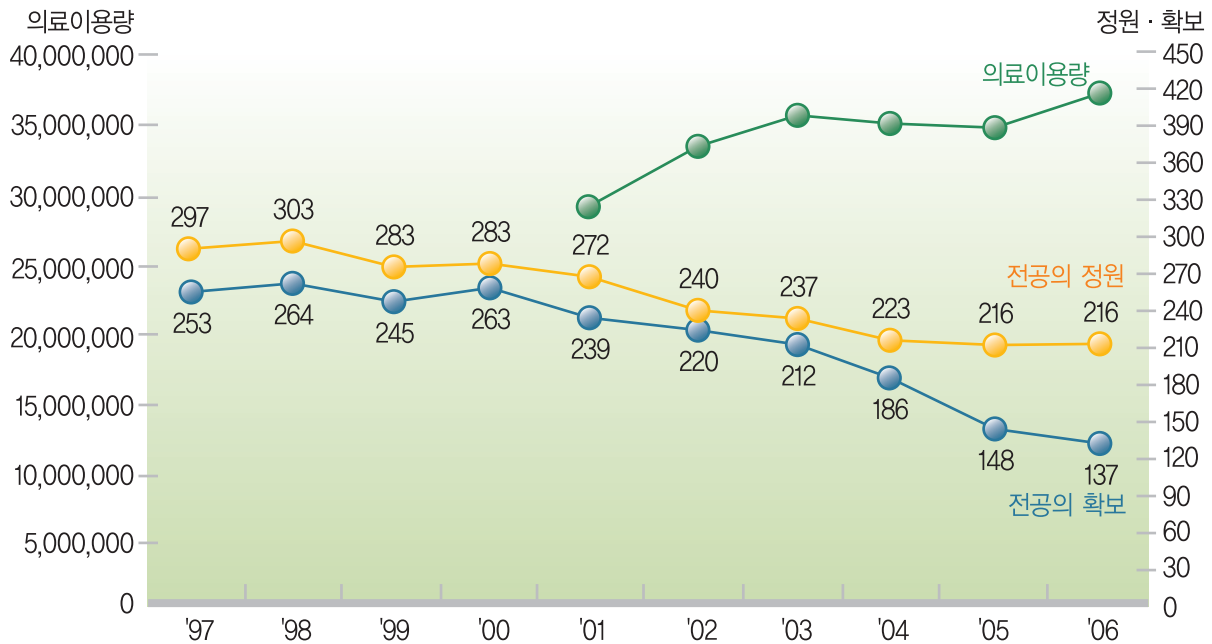
구 분	총비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 용
산전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 (7.6%)
		본인 부담	급여	7.4만원 (4.0%)
			비급여	48.6만원 (26.3%)
분 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 (37.3%)
		본인 부담		46.0만원 (24.8%)
합 계	185만원	-		185.0만원 (100.0%)

산전진찰 지원 해외 사례

구 분	운영주체	급여방식	서비스 내용
대 만	건강보험에서 산전진찰을 무료로 제공	현물급여	산전진찰 : 10회 초음파 검사 제공
일 본	정부 차원에서 시정촌 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임신, 출산, 육아 및 영유아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	현금급여 ※ 다만 출산 후 산전진찰 및 출산을 포함한 출산비를 현금급여로 지급	건강보험은 산전진찰 및 분만 급여하지 않음
영 국	NHS	현물급여	산전진찰 : 11회 초음파 검사 제공
프 랑 스	건강보험에서 급여	현물급여	산전진찰 : 8회 초음파 검사 2회 제공 ※ 임신·출산으로 인한 임금 상실부분의 보상을 위해 지원금 성격으로 현금 급여도 병행
네덜란드	건강보험	현물급여 ※ 산전 검사비 및 출산비는 기본적으로 임신부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보험회사로부터 환급 받음	산전진찰 : 14회

- 의료사고 발생 위험, 과중한 업무강도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군 지역에서는 기존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증가하고 개업은 전무한 실정
 -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임신부들은 원정 검사·출산을 해야하며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 대처 곤란 등 모성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

산부인과 의료이용량, 전공의 정원 및 확보 추이



-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 27개에 이름 (강원도 인제, 전북 완주, 경남 고성 등, '08.9월 기준)
- '08년부터 경상남도 및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산부인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산전진찰 서비스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공 중

나. 추진계획

❖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대해 임산부 본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추진

- 산전 진찰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산전 진찰 비용 지불시 결제하도록 함 ('08.12~)

* 1인당 20만원, 1회 방문시 4만원 범위 내 사용하는 방안 추진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 지자체와 공동 분담하여 산전진찰, 임신부 관리, 유소견자 2차 검진 의뢰 및 산전진찰 종료 후 분만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제공('09)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례(경남)

- 산부인과가 없거나 멀리 떨어진 군지역의 임신부들을 찾아가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부 건강 증진
 - * '07년 현재 경남지역 10개군 중 5개군의 9개소 개업하여 운영중 (분만 가능 1개소)
 - 45인승 버스를 산부인과 진료실로 개조하고 초음파 및 심전도 등 산전진찰에 필요한 의료장비 탑재, 예약된 시간에 군지역 보건소 방문
 - 산부인과 의사 등 6인의 의료진이 1인당 총 13회의 산전검사 (기본검사,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등)를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버스구입·개조비 및 운영비(인건비 등)의 50%는 지자체가 부담 (운영비의 50%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담)
- 유소견자 2차 검진 의뢰 및 사후관리, 산전진찰 종료후 분만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 지방의료원 산부인과, 분만실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비 지원
-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지원시 산부인과 분만실 설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 추진
 - 비예산 : 민간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비용자사업에 포함추진예정
- 취약지역 보건소 등에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 지원
- 1339을 통해 분만가능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야간 응급상황시 긴급이송할 수 있도록 상시대응시스템 강화

2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가. 현 황

-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in Life)’의 보장을 위해
서는 모성·영유아기의 체계적 건강관리 요구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만혼 및 결혼 후 첫 임신까지의
기간 증가
 - * 고령임신·출산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의 증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의 출생율
증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및 평균출산연령

(단위 : 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전체	28.3	28.5	28.7	29.0	29.3	29.5	29.8	30.1	30.2	30.4	30.6
	첫째 아	26.9	27.2	27.4	27.7	28.0	28.3	28.6	28.9	29.1	29.2	29.4
	둘째 아	29.1	29.3	29.4	29.7	29.9	30.2	30.5	30.8	31.0	31.3	31.5
	셋째 아	31.9	32.0	32.1	32.2	32.5	32.7	32.9	33.1	33.3	33.5	33.6
	넷째 ↑	34.3	34.3	34.4	34.5	34.8	34.9	34.9	35.3	35.3	35.4	35.5
평균초혼연령 (여)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결과, 2008. 8, 2007년 혼인통계결과(2008. 3)

- 영아사망률은 OECD평균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저체중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발생은
증가 추세
 - *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5.3명('02) : 주요 사망원인은 신생아 호흡곤란(11.8%),
심장선천성 기형(9.9%), 태아발육장애(9.8%) 등
 - * 저출생체중아 발생률 : ('00)3.8% → ('04)4.2% → ('07)4.7%

주요국의 영아사망률

구 분	'90	'93	'96	'99	'02	'05
한 국	12.8	9.9	7.7	6.2	5.3	—*
일 본	4.6	4.3	3.8	3.4	3.0	2.8
미 국	9.2	8.4	7.3	7.1	7.0	6.8
영 국	7.9	6.3	6.1	5.8	5.2	5.1
스위스	6.8	5.5	4.7	4.6	4.0	4.2
스웨덴	6.0	4.8	4.0	3.4	3.3	2.4

- 출처 : OECD Health Data, 2005.
-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 특정연도의 1세 미만의 사망아수/당해연도의 연간 총 출생아수 × 1,000
- '96년 영아사망률부터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추세를 보임.
- *'05년 한국 자료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영아·모성사망조사(보사연, 복지부) 2008년 보고서 출간 이후에 파악 가능

-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나, 관련 인프라 부족과 사전 예방적 체계적 건강 관리 미흡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충 영양관리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성·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강화 필요
- 모유는 각종 영양소 및 면역체가 포함되어 있어 성장기 아동의 질병예방 및 두뇌발달에 이상적인 영양원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유리한 환경 조성 필요

우리나라 모유수유 실태

〈15~44세 유배우부인 대상 조사〉

(단위 :%)

연 도	'85	'88	'94	'97	'00	'03	'06
모유 수유율	59.0	48.1	11.4	14.1	10.2	16.5	24.2

- 모유수유율 : 15개월 미만까지, 완전모유수유와 모유+이유식을 하는 경우 포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06년

나. 추진계획

🌱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 신생아 출생시부터 전산망을 활용한 건강정보 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 건강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신생아와 산모가 적기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정보 확보 및 활용 방안 검토
 - 보건소 연계, 출산 가정에 E-Mail, 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필요 서비스의 적기 제공 등
 - 「보건의료 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 등 검토
 -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실시
 -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분석·검토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계획 확정
 -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내용 변경·보완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 효과성 제고
 - 임산부의 산전후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검진결과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에 대한 개선방안
 - 표준모자보건수첩 활용 홍보 강화
 - 수첩 내용 및 디자인 개선 등

❖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 가임기 여성이 주로 대학생 등 20~30대임을 감안하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검증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포털사이트(www. aga-love.org) 운영
 - 산부인과 등 전문가의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1644-7373)
 - 민간사이트의 부정확하고 유해한 정보를 찾아 개선하고 전문가(관련학회, 전문가 등)의 감수를 받아 신뢰성있는 정보제공
- 가임기여성의 생식건강증진 및 인공임신중절·자연유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예방 차원의 생식건강교육프로그램 지원
 - 직장여성, 결혼이주여성, 대학생 등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광역단위 신생아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 지원·육성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에 대해 미숙아 의료비 체중별 차등지원

구 분	체 중	최고지원금
미숙아	2,000g~2,500g 미만	5백만원
	1,500g~2,000g 미만	7백만원
	1,500g 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미숙아 등 고위험신생아 발생시 집중치료를 위해 광역단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 지원

* '08년) 45억원(3개소), '09년) 30억원(2개소), '10년) 100억원(4개소)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08) 지원수준 인상

구 분	체 중	최고지원금
미숙아	2,000g~2,500g 미만	5백만원
	1,500g~2,000g 미만	7백만원
	1,500g 미만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셋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 기존의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확대 개편

- 생후 4개월~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5회(4 · 9 · 18 ·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및 성장발달 평가

검진 항목		검진시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문진 및 진찰		●	●	●	●	●
신체계측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건 교 강 육	안전사고예방	●	●	●	●	●
	영 양	●	●	●	●	●
	수 면	●				
	구 강		●			
	취학전 준비					●
	구강검진			●		●

검진시기	검진시기 접종가능 항목
4~6개월	Polio, DTaP, B형간염
9~12개월	MMR, 일본뇌염, 독감
18~24개월	DTaP, 일본뇌염, 독감
30~36개월	일본뇌염, 독감
54~60개월	장티푸스

- 검진시 예방접종도 함께 실시하여 검진결과와 접종사항을 동시에 관리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6종검사 및 사후 관리비 지원
 - * 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단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신생아에 대한 난청 조기진단 및 확진 검사비 지원으로 언어발달장애 및 정신 지체 예방
 - '09년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확대 실시
 - * '07)시도별 1개 보건소 → '08)시도별 2개 보건소 → '09)차상위 계층
- 취약계층 임신·출산·수유기의 여성과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보충 영양관리 사업 확대
 - 보충영양식품의 가정배달, 개인상담 및 단체 영양교육,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과 연계하여 영양-건강 종합서비스 제공

🌱 모유수유증진 홍보 및 실천 환경 조성

-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모유수유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여 모유수유 실천 환경 조성
 - 공공시설 및 직장 내 모유수유(착유)실 지원 및 홍보
 - 보건소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통해 정확한 모유수유 방법 교육 등 상담실 운영 및 모유수유 활성화 도모
 - 소아과전문의로 구성된 엄마젖 인터넷 상담(www.mom-baby.org) 사이트 운영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인증 및 재평가를 통해 모유수유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미숙아·저체중 출생아 등이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인정범위 확대



🌱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 지방국립대병원 3개소의 30병상 병상설치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별 불균형 개선
 - * 전국 75개소 1,014병상 중 서울·경기 43개소 658병상(64.9%) 운영 중

3 불임부부 지원

가. 현 황

- 만혼, 고령임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불임 증가
 - 불임부부는 유배우 가임여성(15~44세)의 13.5%(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03)
 - 불임관련 수진자 : '01)97천명 → '03)150천명 → '05)178천명 → '07)224천명(한양대, 황정혜, '08)
- 고액의 불임진단 비용으로 주요 시술 대상인 '새내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큼
 - 불임 진단 후 26.6%가 비용부담으로 치료포기, 83.2%가 심각한 경제부담 호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06년)
 - * 불임진단이후 총 소요비용 : 평균 911만원(2006년, k대)
- 정부는 '06년부터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 1회 150만원 이내(1회 평균시술비의 50% 수준), 지원횟수 2회
 -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255만원 이내(85% 수준), 지원횟수 2회
 -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시술비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등 확대 필요

나. 추진계획

♣ 불임시술 지원 확대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확대
 - '08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가구, 평균시술비의 50%이내 2회 지원 중
 - '09년 지원회수(2회→3회) 및 지원금액(기초생활수급권자 평균시술비의 85% → 90%) 확대 예정
 - '10년부터 기초 및 일반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 계획
- 불임예방,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참고자료 1 국가별 보조생식술 지원 현황

구 분	독 일	일 본	호 주	프랑스	미 국	기 타
지원 대상	법적 혼인 ○	○	-	-	-	
	연령 여성 (25~40세) 남성 (25~50세)	연령제한 없음		여성 (43세 이하)	여성 (21~41세) (뉴욕)	이스라엘 (45세이하)
	소득 수준 -	부부합산 소득 920만엔 (약76백만원)	-	-	-	-
	자녀 유무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지원 수준	지원 횟수 시험관아기 (3회) 인공수정 (6~8회)		시험관아기 (6회)	시험관아기 (4번) 인공수정 (6번)	불임치료 시험관아기 (3~4회)	-네덜란드 · 캐나다 (3회) -이스라엘 (2명 자녀출생까지만)
	지원 금액 50%	정액제 1년 20만엔 (약2백만원) 상한으로 5년 지급	85%	100%	정액제 난자채취시술 (일생동안 4회, 일리노이즈) \$15,000 ~ 100,000 (아칸소, 메릴랜드)	-캐나다 · 덴마크 · 네덜란드(100%) -오스트리아 (70%) -영국 (임상조건에 맞는 23~29세 여성에게 IVF 최소 3회 시술) -스웨덴 (불임검사, 수술, IVF 일정한도의 비용지원)
	건강 보험 지원 ○			○		

4 산모도우미 지원

가. 현 황

-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내 지원여건이 악화되어, 산후조리원·산모도우미 등을 이용하는 산모 증가
 - 저소득층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민간 산후조리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므로 산모의 건강회복과 초기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 산후조리서비스 이용비용(2주 기준) : 산후조리원 1~2백만원, 산모도우미 1백만원 수준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해 해산급여 50만원 지급('06)
- '06년부터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06.6)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06.10)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08.1)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08.7)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산급여를 받으므로 제외

현행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내용

구 분	총 구매력 (A=B+C)	소 득	바우처 지원액(B)	본인부담금 (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567,000원	46,000원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521,000원	92,000원	
쌍생아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1,134,000원	46,000원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1,088,000원	92,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747,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1,701,000원	46,000원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1,655,000원	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나. 추진계획

♣ 산모도우미 서비스 강화

- 수혜대상을 저소득층(현행 전국가구 평균의 50% 이하)에서 중산층으로 단계적 확대

산모도우미 지원계획

연 도	'06년	'07년	'08년	'09년
지원대상(천명)	13	37	43	50
지원단가(만원)	40	55	58	61

- 서비스 가격을 현실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
 - 제공기관 선정시 4대 사회보험가입을 준수토록 하여 제공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보장
-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제공인력의 전문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산모도우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
 -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지원금 차등적용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력

5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

가. 현 황

-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육아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1인당 약 45만원 소요
- 선진국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건강과 및 사회안전을 보호함
 - * 일본 : 지정병의원에서 무료접종,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비 환불 받음
 - * 영국 : 중앙정부로부터 매주 공급받는 백신으로 일반의 및 방문간호사가 접종
- 현재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 전염병, 8종 백신) 비용 지원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나 접근성이 낮아 예방접종률이 저조함
 - * 8종 백신 :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 '06년 기준, 영유아의 완전예방접종률 74% 수준
(19개월까지 접종해야할 BCG, B 형간염(3회), DTaP(4회), 폴리오(3회), MMR(1회))

나. 추진계획

♥ 0~12세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

- 09년, 보건소는 무료, 민간 병·의원은 접종비의 1/3 (13만원) 지원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비 2/3 (26만원)은 본인부담)
- 병의원 이용 접종항목 및 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접종기관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제고
 - 지리적·시간적·경제적 접근성 강화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전염병퇴치수준인 95% 이상 달성
 -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기 접종 강화 및 누락 접종 방지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6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사업 강화

가. 현 황

- 형법(제269조 및 270조)는 인공임신중절 당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벌금 또는 일정 기간 징역을 명시하고, 모자보건법 또한 제한적으로만 중절수술을 인정
 -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는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2. 전염성 질환
 3. 강간
 4. 법률상 혼인불가 혈족
 5.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을 해하는 경우 등
- 최근 유배우 가임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06년 34%로 여전히 높고,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중절 또한 20%에 달함
 - 출생아 전체 성비는 '02년 110.0, '03년 108.7, '04년 108.2로 완화되고 있으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출생성비는 각각 141.2, 136.6, 132.7명으로 정상적 출생성비 105에 여전히 크게 미달
 - * '06년 전국표본조사 결과, 유배우 가임여성의 마지막 인공임신중절 시술 사유 중 태아 성감별에 의한 판단은 2.6%

유배우 부인(15~44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단위 : %)

'97년	'00년	'03년	'06년
44	39	40	34

• 자료: 김승권 외,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유배우부인(15~44세)의 임신종결형태 구성비

(단위: %)

임신종결형태	1994	1997	2000	2003	2006
정상출생	61.0	62.9	63.8	65.5	69.0
임신소모	36.9	35.5	34.0	32.9	29.0
(사 산)	(0.4)	(0.3)	(0.3)	(0.2)	(0.3)
(자연유산)	(8.2)	(9.1)	(9.7)	(9.6)	(9.5)
(인공임신중절)	(28.3)	(26.1)	(24.1)	(23.1)	(19.2)
현임신	2.1	1.6	2.1	1.6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06, 보사연)

• 임신소모 : 정상출생이 아닌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종결되는 임신

- 인공임신중절은 사회적·윤리적 문제와 함께 후천적 불임 등 모성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

– 특히, 기혼여성 인공임신중절(연간 20만건)의 72% 수준으로 추정되는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연간 14만건) 예방대책 마련 필요

결혼상태별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시술의료기관 조사〉

(단위 : 명)

	기혼여성	미혼여성*	전 체
연간 추정건수	198,515	143,918	342,433
15-44세 연간 추정건수	196,622	143,195	339,818
15세 미만	0	118	118
15-19세	293	11,556	11,849
20-24세	8,252	69,453	77,705
25-29세	30,901	43,688	74,589
30-34세	67,069	13,384	80,453
35-39세	63,031	4,422	67,453
40-44세	26,453	1,297	27,750
45세 이상	2,517	0	2,517

• 출처 : 고려대학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05년)

• 주) 미혼여성은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과 이혼/별거/사별 여성도 포함

나. 추진계획

♣ 생명존중 및 낙태폐해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사업

- 시민단체 · 전문가 등과 생명존중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지하철, 개봉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예방 공익광고
- 학교 보건교과목 개설시 성건강 관련 내용 반영 검토
 - 피임교육 등 맞춤형 성교육 실시

♣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의료계, 여성계, 종교계, 학계 등 여러 전문가 단체와 생명포럼 운영
- 의료취약지역(시설) 청소년 등을 위한 성건강 이동클리닉 운영
 -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의료취약지역 청소년 및 미혼모시설 입소자들을 위한 성건강 이동클리닉 운영 서비스 제공

2 일과 가정의 양립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가. 현 황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출산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보장 되며,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대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60일 분은 사용자가 부담

산전후휴가 지원실적

연 도	'04	'05	'06	'07
수혜자 수(명)	38,541	41,104	48,972	58,368
지급액(억원)	417	460	1,108	1,324

• 자료 : 노동부

- '06년부터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 부여
 -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 :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 60일, 28주이상 : 90일
 - * '07년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154명, 300백만원 지원
-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급여보전을 위하여 급여상한액의 상향조정 필요
 - * 현재 상한액 135만원은 월통상임금(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6년 187만원)의 72%

나. 추진계획

☞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추진

- '06년부터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산전후휴가 90일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최고한도 월 135만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대기업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60일간의 산전후휴가 급여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일반회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원 분담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확충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율 29.7%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활성화
 -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정규직 전환시 1년간 540만원,
비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240만원 지원
 -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 *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 도입 검토(현행 2년 한도를 연장)

산전후휴가 외국사례

국 가	도입시기	휴가기간	휴가급여(임금대비)	재원부담주체
영 국	'48	26주	92~104%	사회보험
프 랑 스	'28	16~24주	100%	건강보험
독 일	'79	14주	100%	건강보험
일 본	'80	14주	60%	건강보험
스 웨 덴	'74	60주	80%	부모보험
캐 나 다	'71	17~18주	55%	실업보험
네덜란드	'76	16주	100%	실업보험

• 자료 : 노동부

☘ 유산 · 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 '06년부터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의 휴가 부여
 - 임신 16주이상 21주이내 :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 : 60일, 28주이상 : 90일
-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가기간 전체(최대 90일까지)에 대하여, 대기업은 30일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 부여('08년~)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가. 현 황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만 3세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 '07.1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08.1월 출생아부터 적용
 - * 육아휴직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 지급,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월 20~30만원) 지원
-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 저조
 - * '07년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36.3%
- 육아휴직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특히, 남성근로자의 출산·육아에 대한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
 - * 현행 월 50만원은 월 통상임금(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06년 187만원)의 26.7%에 불과
 - * '07년 육아휴직급여 수혜자중 남성 비율 1.5%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연 도	지급액 (백만원)	인 원 (명)			1인당 월 지원액 (만원)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자 비중 (%)
		전 체	여 성	남 성		
'05	28,242	10,700	10,500	200	40	26
'06	34,521	13,670	13,440	230	40	28
'07	61,000	21,185	20,875	310	50	36

• 자료 : 노동부

- 근로형태 유연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활용 저조
 - *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기업 비율 2.7%, 시차출퇴근제 시행기업비율 2.7% (노동부,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나. 추진계획

☞ 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기간 중 적정한 소득보장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수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12)
 - * 외국사례 : 스웨덴은 휴직전 임금의 80%, 일본은 휴직전 임금의 총 40% 지급
-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채용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인상
 -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의 지급시기 등 개선(~'12)
 - * 육아휴직자 복귀 후 지급하고 있는 시기를 대체인력활용 중 매분기별 지급
-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체계 강화
 -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제도이용방법, 권리침해시 조치사항 등을 전자우편으로 자동안내하는 「happy mail 시스템」 운영
- 남성 근로자의 육아참여 활성화
 -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실행 사업체에 대한 지원·우대 방안 마련(~'12)
 - * 일본 : 남성육아참가촉진급부금 (사업주에 1년 50만엔씩 2년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 육아기간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년)
 - *육아휴직 미이용자의 45.2%가 시간제 육아휴직 희망(노동연구원, ’03년 육아휴직 실태조사)
 - *프랑스, 스웨덴은 육아기간동안 1/2 또는 3/4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수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부분휴직 제도를 운용
- 사업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지원(’08년)

☞근로형태 유연화

-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기업에 대하여 교대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08)
- 양질의 자발적 단시간 일자리 모델 개발·보급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사업주 컨설팅 및 사례 홍보
- 육아·학습 등을 위해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법제화 검토(’09)
 - *외국사례 : 프랑스(오브리법, 2000), 네덜란드(근로시간단축권리획득, 2000), 독일(6개월 이상 고용 근로자 근로시간단축권, 2001)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1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확산

가. 현 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직장문화 미흡
 - 기혼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실정
 - * 취업 기혼여성(20~44세)이 결혼전후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비율은 61.3%에 달하며, 일과 가사의 양립 곤란, 임신·출산 등이 주요 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 장시간 근로, 시간외 근무, 회식문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공유시간 부족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우수기업의 경영성과등을 홍보하여 가족친화경영의 확산 필요

나. 추진계획

♥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을 위한 인증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위원장 : 차관)
 - 당연직(7명)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중소기업청
 - 위촉직(7명) : 가족친화 민간전문가
-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검토, 인증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 결정, 인증기업지원 방안 마련 등 심의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노력 촉진 (’08년 하반기~)
 - 인증기업은 인증마크를 상품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이미지 제고 (인증유효기간 3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



- 밝은 다홍색은 가족의 사랑,
- 노란색은 기업의 배려와 열정,
- 초록색은 사회적 관심과 안정된 제도 상징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서, 그러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꽃 '가족친화경영'을 피울 수 있다는 의미

- 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융자시 가점 부여 등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촉진

참고 : 가족친화인증제 외국사례

일본 차세대 인정마크제도

- '차세대 육성법'에 따라 기업은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신고 (301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
 - ※ 상시 고용 301인 이상 기업 (12,842개) 중 99.1%인 12,726개 기업이 행동계획 제출 ('06.3월 현재)
- 신고업체 중 기업주의 신청에 의해 정부가 정한 기준(8개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차세대 인정마크 부여
- 차세대 인정마크 부여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서식 및 광고 등에 마크 부착 허용 이외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실정

2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 현 황

-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08.6시행)
 - * 가족친화제도 이용 : 탄력근무제도 11.5%, 보육제도 21%, 근로자지원제도 25.2% (보건복지가족부, 「출산·가족친화 기업경영 확산방안 연구」, 2006)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비용부담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에 소극적 태도
 - 따라서 가족친화프로그램 전문강사의 양성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필요

나. 추진계획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와 노동생산성·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지원
 - 가족친화지수 (FFI) 웹시스템 운영('08)
 -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여 가족친화 인증 평가지표 자료로 활용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속 추진

- 기업·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 CEO 마인드 변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교육, 사내 강사 및 전문강사 양성
-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실시
 - 탄력근무제, 근로자지원제도 등 맞춤형·자문형 컨설팅

3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

가. 현 황

-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어, 장기간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 노부모,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조화가 어려움

* 한국 연간 근로시간 2,302시간('07년)으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임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 1,777시간('06) (자료 : OECD 2008 Factbook)

나. 추진계획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추진(~'12)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휴직 부여
 -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1년 이내의 가족간호휴가제도를 두었음 (재직기간 중 총 3년)

가족간호휴가 외국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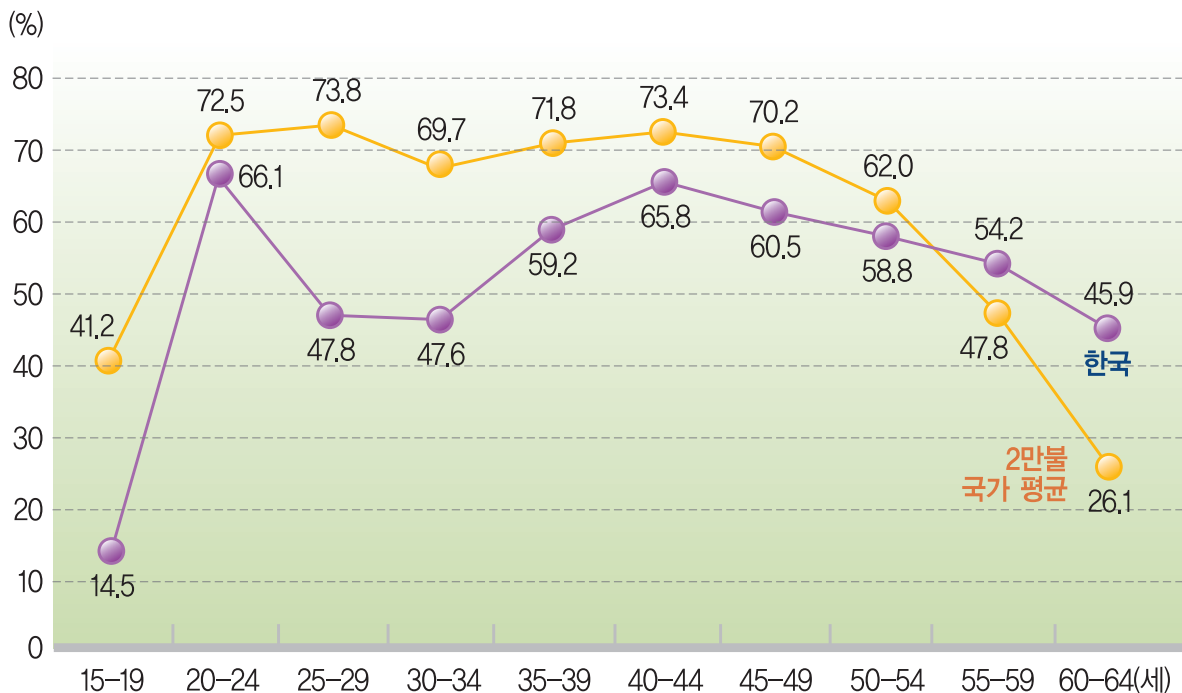
국 가	휴가형태	휴가기간	휴가급여	재원부담주체
캐 나 다	특별돌봄휴가	8~12주	원칙은 무급 (6주간 임금의 55%정도 가능)	고용보험
미 국	가사휴가	12주	무급	-
일 본	개호휴업 자녀간호	12주 5일	실비	육아·개호비용 조성금
스 웨 덴	일시적 육아휴직	60일	임금의 80%	부모보험
덴 마 크	자녀간병휴가	2~8일	임금의 100%	일반조세+사용자 -비용인기금
네덜란드	가족돌봄휴가	단기: 10일 장기: 6개월	단기: 임금의 70% 장기: 최저임금의 70%	실업보험

4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가. 현 황

- 출산·육아부담으로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 선진국의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역U자형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M자형을 나타냄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03년)



• 자료 : OECD

-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 재취업한 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 등 저숙련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단기 적응훈련 및 직장적응을 위한 교육 실시하고 있으나 재취업을 위한 특화된 지원서비스 미흡

* 45개 기관 50개 프로그램 운영 1,046명 참여 (취업률 72.5%)

나. 추진계획

🌱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 유도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 산전후휴가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06. 7월~)
 - * 지원수준 : 정규직으로 재고용시 1년간 총 540만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시 6개월간 총 240만원 지원

🌱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응훈련사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훈련 규모 확대 및 강화
 -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특화훈련시설을 갖춘 기관과 협약 체결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09~)
- 재취업지원 3단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재취업지원 3단계 특화 프로그램

- 1단계: 재취업성취 프로그램(Home to Work) 개발·시행('08~)
- 2단계: 경력단절여성 인턴제도 실시('09~)
- 3단계: 엄마채용장려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08~)

- 주부 등의 직업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기간 및 단시간 실업자훈련과정 활성화 추진('08~)

* 1~2개월 과정 및 일일 4시간 이하 훈련과정 승인 활성화 검토

☞ 고용지원센터의 여성 취업 지원기능 강화

- 육아 문제 등으로 구직활동에도 애로가 많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08~)

- 고용지원센터내 수유시설, 놀이시설 설치 확대 등

* 외국사례 : 일본의 Mother's hello work

- 경력단절여성취업에 필요한 취업정보 뿐만 아니라 보육정보도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원 지정제도 도입('08~)

* 여성고용지원센터(민간위탁 6개, '07) : 알선 6,198명, 취업 1,114명(취업률 22.2%)

2-3 학교 ·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가. 현 황

- 미래사회의 주축인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을 강화할 필요
- 저출산 · 고령화 관련 인구 · 가족가치 ·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나. 추진계획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학교교육 강화

-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내용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연차별 개발 추진
 - '0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13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용 도서 개발 완료하여 모든 학교 현장에 적용
- 저출산 · 고령사회 관련 교육을 위한 지도자료 발간 · 보급
 - 고등학생용 인구교육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 · 보급('08~'09)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매년 '인구교육지침서' 발간 · 배포하고 다양한 교수 - 학습자료 제공('09~)
-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인구교육담당 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시 · 도 교육연수원에서 인구교육담당 교사 직무 연수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보급 및 강사 인력풀 제공('09)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가. 현 황

- 결혼·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구·결혼·가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전환 요구
 - 저출산·고령화 관련 가족가치·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교육에 대한 지원 미흡
- 시민단체·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나.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 강화

- 직장인, 군인,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사회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개발
 - 지역복지관, 시민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가치관 형성기부터 결혼준비기, 출산·자녀양육기, 자녀성장기, 자녀독립기, 은퇴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 결혼, 가족,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제 가정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정생활교육, 노후 대비 교육 등 지원

❖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사회교육 강화

-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하여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 가족캠프,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임산부의 날, 부부의 날, 노인의 날 등)을 교육기회로 활용

3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가. 현 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이혼 증가 등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노동의 한계
-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 : 16개소('05) → 50개소('06) → 66개소('07)
 - * 건강가정지원센터 참여인원 : 연간 45만명

나. 추진계획

♥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비부부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어린이교육 등 가족생애주기별 교육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실시
 - 찾아가는 교육 상담 서비스 확대 등 가족교육·상담서비스 내실화
 - 학교, 보육시설,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활성화

♥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개발·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및 강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66개소('07)→ 80개소('09)
 - 관련단체 및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으로 사업 활성화 추진
-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전문인력 양성
- 가족상담 서비스 기관간 연계방안 구축
- 자녀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문화운동 전개

4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가. 현 황

-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의 다양성 및 복잡성 증가
 - 전통적인 역할규범이 적용되기 어려운 가족 내 다양성과 역동성 증가로 가족관계변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인식과 적극적인 사회화가 필요
- 주5일 근무제 확산 및 주5일 수업제 시행으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급증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으로 가족갈등의 적극적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 제고
 - 건전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으로 친밀한 가족관계 강화 필요
 - 종교문화체험 등 가족형 여가프로그램과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활동기반 마련 필요

나. 추진계획

❖ 다양한 가족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및 종교시설을 이용한 문화공간 활용 지원
-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및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지원 등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하여 가족단위의 체험형 여가활동공간 확충
- 한부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새터민가족 등 취약가족의 복지관광 지원
- 다양한 가족 여가·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
 - 각종 영화·연극제, 음악회 등 행사에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 지원
 - 가족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가족 체험활동 지원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학부모 저녁모임 등 가족-학교-지역 간 소통 지원사업 등 실시
- 세대간 가족 가치관의 조화를 모색하는 문화조성 프로그램 운영
 - 가족 내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및 문화체험 공유 기회 확대

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 현 황

-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연계 강화 등 가족친화적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노인 1인 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의 기능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분담 필요
- 가족의 돌봄 기능 공백을 보완하고 안전과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을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

외국의 사례

- **독일** : 가족친화 지역사회 정책으로 423개 지역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족을 위한 지역 연대활동과 가족에 대한 공간·시간의 배려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가족친화적 도시 만들기 사업 실시
- **호주** : 가족친화 지역사회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아동기 초기-성장을 위한 투자, 보육서비스의 선택과 유연성 확대 사업 추진
- **미국** : IBM, 엑손모빌, 존슨앤존슨, TI 등 9개사가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형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으로 지역 공동 직장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 운영

나. 추진계획

- 지역의 도서관, 학교, 박물관 등을 부모와 자녀, 이웃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상적 가족친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행정안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친화 마을 조성
 - 생태마을 조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적 마을 환경 조성
-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모델 개발 보급
 - 홍보 등을 통한 가족친화마을에 대한 인식 확산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가. 현 황

- 제1차「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2003~2007)
 - 동 대책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10만명당)는 2007년 6.3명으로 2002년 12.4명에 비해 49.2%가 감소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임

대상국	우리나라	EU 평균	영 국	핀란드	독 일	일 본
비 율	6.3	5.32	2.7	5.38	3.15	4.8
년 도	2007	2005	2005	2005	2004	2002

• 자료 : 통계청 사고원인통계, 2007 / WHOSIS 2005

-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가 전체의 절반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

사망사고의 유형별 분류

(단위: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210	1,016	891	756	645	538
교통사고	594	497	374	337	318	259
익사사고	198	156	183	156	78	78
추락·질식사고	248	204	178	139	127	128

• 자료 : 통계청 사고원인통계, 2007

-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사망원인통계) 등 11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통계의 신뢰도가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한계
 - * 교통사고 통계(경찰청)는 신고 처리된 자료만으로 생성되고,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시스템은 원인별, 장소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한정된 기관의 통계만 집계하고 있는 실정

나. 추진계획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계획’ 과 연계하여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마련('09.3)
- 교통, 추락, 익사 사고 등 주요 안전사고 중심으로 추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등 아동안전 관련기관 업무 협조체계 강화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강화
- 아동 안전체험 행사 개최 등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아동안전 관련 통계기반 구축

- 안전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 정보시스템 협력방안 강구
 -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조사 범위 확대 및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보고기관 확대
 - 선진외국의 통계관리 사례 연구 및 어린이 안전통계 지표 발간
- 각 부처, 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의 통계청 통계자료 반영 추진
 - 교통사고(경찰청), 화재 및 익사(소방방재청), 식중독(식약청), 생활안전(소비자원) 등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가. 현 황

-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아동학대·방임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중복학대 및 방임의 비중이 지속 증가
 - * 중복학대 : '01) 29.6% → '07) 37.4%, 방임 : '01) 31.9% → '07) 37.7%

아동학대 발생추이

(단위 : 건)

	'01	'02	'03	'04	'05	'06	'07
계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신체학대	476	254	347	364	423	439	473
정서학대	114	184	207	350	512	604	589
성학대	86	65	134	177	206	249	266
방 임	672	814	965	1,367	1,635	2,035	2,107
유 기	134	212	113	125	147	76	59
중복학대	623	949	1,155	1,508	1,710	1,799	2,087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예방 교육 등을 실시
 -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24시간 운영
 - * 아동복지법 개정(2008.6)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09.7.1시행)
 - * 아동보호전문기관 : '00) 17개소 → '08) 44개소

-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은 발생비중이 높은 학대 유형이나 학대행위의 발견 곤란과 미신고 등으로 방임아동에 대한 체계적 보호와 지원이 미흡
 - 방임은 가시적 피해는 없을지라도 아동의 심리 위축과 정서 발달 장애 초래,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성장과 발육에 치명적인 손상
 - 기존 ‘사후관리적 개별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포괄 서비스’로 아동보호체계의 기능 전환 필요
 - * 대부분 아동학대가 빈곤가정에서 발생(전체 학대행위자의 54.2%가 무직,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등으로 소득수준이 낮음) 되는 상황에서 처벌 위주의 아동보호보다 예방적 체계 구축 필요

나. 추진계획

♥ 학대아동의 조기발견 · 예방체계 구축

- 학대아동의 조기 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을 개설하여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교육
 - 신고의무자 : 교사, 의사, 학원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업군의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
 - '08년 사이버교육 : 신고의무자 중심 추진 ('09년부터 교육대상 점차 확대추진)
- 아동학대와 방임의 근본적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체계 마련
 -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방임아동 조기발견 · 보호
 - * 2007년 희망스타트로 출발한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전국 32개소에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 교육, 복지 등의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프로그램으로 방임아동의 발견 및 보호,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학교, 학원, 종교단체, 병원 등과 협조체계 구축

🌱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설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설치(현재 전국 44개소)
 - * 아동복지법개정(2008.6) : 전국(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규정마련
-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상담원 확충
 -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치료사 배치 추진(임상심리사, 미술치료사 등)
 - 성학대 등 유형별 전문 상담원 양성
 - * 성학대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연 3회 실시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케이블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강좌 개설, 운영
 - 2008. 6 18 강좌 개설로 현재 운영 중
 - 연도별 교육대상자 점차 확대로 일반인들의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 예비군 훈련, 공공장소 홍보매체 등을 통한 교육
 - 예비군 훈련 시 홍보용 동영상 상영
 - 공공장소의 홍보매체(지하철 홍보용 TV 등)를 통한 대국민 홍보
 - *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로 아동학대예방 효과

참고 : 아동학대신고 및 보호현황

• 아동학대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구 분	아동학대 신고 건수	학대아동 보호 건수	인구 천명 당 신고율	인구 천명 당 학대아동보호율
2006년	8,903	5,202	0.82	0.46
2007년	9,478	5,581	0.89	0.52

🌱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 보호시스템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 경찰청 실종신고 자료와 보건복지가족부(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 무연고 아동 신상 카드 자료간 전산DB 연계 구축
-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 등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

3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가. 현 황

- '95년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의 추진으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 시민 및 관련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활동 등 국민적 관심 제고
 -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교육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사이버경찰청), ‘청소년유해자막표시제’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폭력 발생 추이

(단위 : 명)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	11,310	7,318	7,769	7,488	6,604	6,267	11,270

• 자료: 교과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04) 및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05.2)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
 -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필요
- 학교폭력 발생건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는 미흡
 - 인터넷 유해 매체물과 새로운 사이버 비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가해·피해학생 대상 대안교육 활성화로 동일인에 의한 폭력 재발 방지 필요
 - 폭력에 대한 학교, 사회, 가정의 미온적 대처 개선 시급

- 전문적 상담체계 미흡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한계
 - 학교내 전문상담교사(475명, '08)와 교육청 소속의 전문상담 순회교사 (304명, '08년) 제도만으로는 효과적 상담 불가

나. 추진계획

♥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학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입체적인 상담지원망 구축
 - 지역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도 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전담부서’, 학교단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활성화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 피해학생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로 전문병원 지정
 -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상담, 의료, 수사 등의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지원 센터 확대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다양화
 - 연중 운영 가능한 대안 위탁 교육기관 확보·운영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학부모의 협조,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다양한 선도 방식 개발

❧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기능 강화

-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상담의 홍보 강화
 - * 1588-7179(학생고충 상담전화), 1388(청소년 긴급전화), 1366(여성 긴급전화), ‘학교 폭력상담 신고센터’(사이버경찰청), 1588-9128(학교폭력SOS지원단) 등
-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입체적 상담 지원
 - 인성교육, 폭력예방, 청소년심리·교정,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전문 인력풀 구성
 - 학교 내의 전임 전문 상담교사 배치와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상담 기능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교육 강화
 - 사이버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개발·보급 및 학부모 참여 확대
 - 학교 폭력 예방·근절 우수사례 전파
- 학교폭력 추방의 날’ 운영, 학교별 담당경찰관제 및 유해업소 단속 강화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가. 현 황

-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학습지도·상담 등 돌봄 서비스를 추진

방과후 지원사업 현황 ('07년 기준)

부 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청 소 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방 과 후 초등보육	방과후 학 교
대상아동	18세미만	초4- 중2	초1-6학년	초1-6학년	초중고생
장소·시설수	전용 공간 2,618개소 예산지원 2,088	청소년수련관 등 190개소	보육 시설 1,007개소	학교 교실 2,718개	10,979학교
이용아동 수	68천명	8천명	18천명	5만명	*27만명
주요기능	보호·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통합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보호·학습지도	보육·보충학습 등	특기적성·교과 보충 프로그램
예산('08) 지방비포함	914억원	300억원	9.6억원 (인건비만 포함)	757억원	2,257억원

• 방과후 학교 바우처 대상(빈곤 아동)만 산정

-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보호·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보육시설, 청소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초등보육 등 4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동일 연령층 대상 유사서비스 제공하는 문제점을 야기
 - 시설간 불균형적 서비스 제공
- 방과후 서비스 시설 인프라 부족 및 중장기적 운용방안 부재

나.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09년~)

-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는 중고생(1318) 중심센터로 활용, 방과후 보육은 지역아동센터 전환 검토
 - 방과후 학교 및 드림스타트 등과 상호 연계·협력 추진
 - * 방과후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운영('08. 7~9월)
- 방과후 지원 인프라 확대를 통한 서비스 대상 확대('08~'12)
 - '12년까지 지역아동센터(읍·면·동 평균 1개소) 3,650개소('08년 2,088), 방과후아카데미(시·군·구당 평균 1개소) 250개소('08년 190) 및 현행 아동복지시설 등 최대한 활용
 - 아동복지교사는 시설당 최소 1명 이상 배치('08년 2,700 → '12년 4,000명)

▶ 청소년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

-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치료·자활 등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적·정서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부서비스를 연계

▶ 관련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파악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2 아동의 발달 지원

가. 현 황

-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 투자, 건강관리를 통한 균형발달 지원, 다양한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국가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 필요
 - 비만 및 과체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비용은 2조 1,691억원으로 추계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초등학교 4명중 1명이 문제행동 및 정서·발달적 장애를 경험(2006년, 복지부)

나. 추진계획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대여), 부모와 아이와의 상호관계법 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국가 인적자본 개발 및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2~6세 이하 아동 대상

☞ 비만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운동처방·운동지도·영양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균형발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 인적자본 확보

- 정도(비만지수 20%)이상 비만 초등학교(만7세~12세) 대상

* 비만지수 : (실측체중-신장별표준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

☞ 심리, 정서,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장애아동에게 시의적절한 전문적 개입 통해 전인적인 발달 도모 서비스 제공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가구중 장애 및 문제행동 아동 대상
 - 소득수준, 욕구정도(중증도), 조기예방 효과정도(저연령)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 선정
- 문제행동이 가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부모 및 가족 상담 병행

❖ 취약지역 빈곤아동의 출신배경 및 성장환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양질의 발달경험 서비스 제공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중 취약계층 아동 우선지원
 - * 학령기 아동 현장문화체험(경기 시흥시), 과학체험을 통한 비육성 서비스(경북 구미시),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서비스(전북 무주군)

3 국내입양 활성화

가. 현 황

- 부모와 헤어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매년 1만명 내외 수준 발생
 - *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 '01년 10,586명 → '06년 9,034명 → '07년 8,861명
- 요보호아동 규모에 비하여 국내 입양실적이 저조하고 국외입양 비율이 높은 실정
 - '58년 이후 '07년까지 전체 입양아동 230,635명 중 국내입양 70,327명(30%), 국외입양 160,308명(70%)으로 국외입양 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 '07년 총 요보호아동(8,861명) 중 15.7%(1,388명)만 국내 입양
 - * 국내입양 활성화 등 성과로 '07년 국내입양이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추월하여, '07 입양 아동(2,652명)중 국내입양 1,388명(52.3%), 해외입양 1,264명(47.7%)
 - *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38,822명 중 국외입양 38,489명(99.1%), 국내입양 333명(0.9%)으로 국외입양이 99% 이상을 차지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2000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계	230,635	205,175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2,652
	국 내	70,327 (30.5)	59,477	1,770	1,694	1,564	1,641	1,461 (41.0)	1,332 (41.2)	1,388 (52.3)
	국 외	160,308 (69.5)	145,698	2,436	2,365	2,287	2,258	2,101 (59.0)	1,899 (58.8)	1,264 (47.7)

입양국가별 해외입양 현황('07)

계	미 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호 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1,264명	1,013	14	80	22	20	44	68	3

나. 추진계획

✎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 입양수수료 현실화
 - 입양부모가 아동입양 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확대
 - 입양아 양육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 지원 대상 : 0~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추진
 - * 지원 금액 : 월 10만원에서 단계적 인상추진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확대
 -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

입양가정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071	1,071	1,300	1,400	1,500
입양수수료	1,878	2,058	2,400	2,700	2,700
입양아 양육수당	4,766	4,766	6,800	7,600	8,400

입양부모의 자격기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① 만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미만
- ② 법적으로 혼인 중일 것.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임소견서를 첨부
- ③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 ④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 ⑤ 나이와 결혼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여건이 안정적일 것
- ⑥ 가족구성원들이 입양에 대한 동의, 특히 두 부부의 합의가 되어 있을 것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입양기관, 아동상담소장 등 시행령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함 (법시행규칙 제2조 단서)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입양 및 파양절차 강화
- 입양특례법 개정추진
- 입양절차 및 구비 서류 간소화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사업 추진

- 모범적 입양가정에 대한 사례 홍보 및 표창·시상으로 사회적 관심 유도
 - 입양의 날(5.11) 및 입양주간(5.11~16) 행사 활성화
- 종교계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 유도
-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해 국민의식 개선

4 유해환경 차단 강화

가. 현 황

- 생활환경 변화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
 - 음란 인터넷 광고물, 신종 유해업소 등이 확산되는 반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노출에 사회의식은 관대
 - * 일부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묵인·조장하는 경우가 있어 유해환경 정화가 어려운 실정
- 가출, 폭력, 성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인프라 취약
 - * 청소년유해업소(개소) : '04)682,157 → '07)760,386
 - * 청소년 사이버 범죄(건) : '01)2,193 → '04)9,391
 - * 청소년 유해매체물(결정건) : '03)3,537 → '04)7,646
 - * 청소년 음주율(%) : '99)60.2 → '04)74.4
- 정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을 수립('05.11)하여 추진 중

나. 추진계획

🌱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청소년보호법 전문개정
 - 영리목적외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행위 금지
 - * 학교의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교육 일정시간 의무화 등
-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P, Youth Patrol) 프로그램 활성화 및 보급 확대
 - * 청소년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사이버 세계에 직접 참여하여 분별력 향상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 윤리 기준 설정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감시활동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부여

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가. 현 황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65%에 불과하며, 체계적인 보건 교육 및 건강 상담·관리기능도 취약한 실정
 - 학교보건실 기능이 보건실을 찾아오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

보건교사 배치현황 ('08.4)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학교	계
전체학교수	5,813	3,077	2,190	149	11,229
보건교사배치학교수	4,241	1,523	1,428	128	7,320
(배치율, %)	(73.0)	(49.5)	(65.2)	(85.9)	(65.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2008

- 고도 비만(표준체중보다 50% 이상 과체중)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
 - * '01) 0.74% → '04) 0.77% → '06) 0.84% → '07) 0.8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은 감소추세이나, 성장기 건강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중·고등학생 흡연실태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중	남 자	7.4	6.0	3.5	2.8	2.4	4.2	5.3	4.8	5.7
	여 자	3.2	2.0	0.9	2.3	1.7	3.3	3.3	2.6	2.2
고	남 자	27.6	24.8	23.6	22.1	15.9	15.7	20.7	16.2	18.1
	여 자	10.7	7.5	7.3	6.8	7.5	6.5	5.2	5.2	3.5

•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8

- 학교와 지역보건소와의 연계 부족으로 지역보건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학생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추진계획

♥ 학교의 보건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보건교육 시설·설비 확충으로 학교 보건교육 여건 개선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기능 중심의 체계적인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위생환경 개선·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

- 학생건강검진 및 건강실태조사를 내실화하여 학생의 건강상태 평가 및 질병관리를 강화
- 학생비만예방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비만 예방프로그램 운영
 - 저칼로리 음식섭취와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건강시범학교 운영 확대 등 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학교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증진학교 네트워크 구축
 - 일선학교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자료·정보의 DB화 및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 흡연·음주·약물남용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확대
- 지역의료기관의 금연·금주클리닉과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학교와 보건소의 연계를 통해 학생건강관리 강화

- 보건소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의 일환으로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진료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검진, 금연·금주 상담 등 학교보건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보건소와 학교가 연계 하여 학생에게 제공
- 학생에 대한 보건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고, 보건소인력,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학교보건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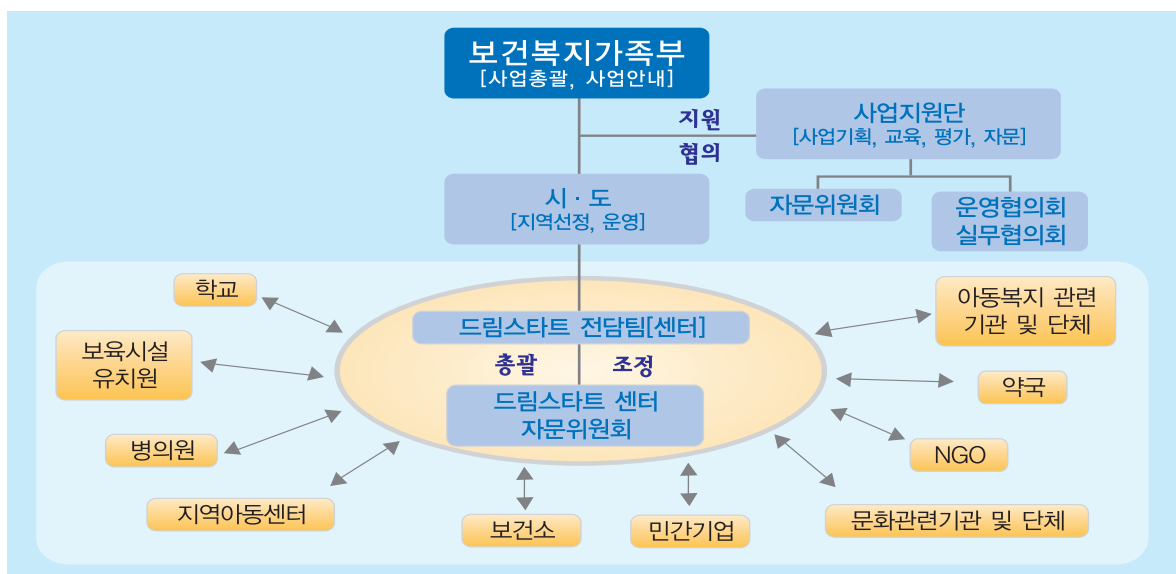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1 드림스타트 활성화

가. 현 황

- 아동기 빈곤은 생존 및 건전한 성장발달에 요구되는 기본자원의 부족, 양육과 보호를 제공 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결여 및 이로 인한 인간발달의 기회박탈을 의미
 - 빈곤은 생존과 건강, 영양과 교육, 참여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아동의 기본권리를 박탈
 - 빈곤아동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인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가정해체 등에 따라 빈곤아동의 증가추세에도 빈곤아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
 - *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아동 1백만명 추정
-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중 (’07~)
 - * ’07년(시범사업) 4,891명 → ’08년 9,600명

(참고)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체계



• 자료: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2008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매뉴얼, 2008.

나. 추진계획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요건 조성
 - 기초지자체 담당자 및 각 분야 전문인력으로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체계 구축
 - ※미국(Head Start), 영국(Sure Start) 등 선진국도 빈곤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07년 시범사업 결과 학업성취율·인지능력 향상 등 발달 개선에 효과적

- 설치지역의 단계적 확대

연도별	2009	2010	2012
개소 수(합계)	75	141	207

- '09년 (75개) : 기초수급아동 2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읍면동이 있는 시군구
- '10년(141개) : 기초수급아동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읍면동이 있는 시군구
- '12년 내(207개) 전국 확대 : 기초수급아동 60명 이상 거주 읍면 및 인접 2개동 100명

〈참고〉지역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현황(드림스타트센터 개소 수)

2007년도 사업추진 지역				2008년도 사업추진 지역			
지 역	센터수	지 역	센터수	지 역	센터수	지 역	센터수
서울	1	경기도	2	서울	1	경기도	2
인천광역시	1	경상북도	1	인천광역시	–	경상북도	1
대전광역시	–	경상남도	1	대전광역시	1	경상남도	2
광주광역시	2	전라남도	2	광주광역시	1	전라남도	2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대구광역시	1	충청북도	–	대구광역시	1	충청북도	1
울산광역시	1	충청남도	–	울산광역시	–	충청남도	–
강원도	1	제주도	1	강원도	1	제주도	1
전 체		16 개소		전 체		16 개소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2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검토

가. 현 황

-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빈곤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아동정책은 생계유지, 학비지원 등 최소한의 단기적·사후적 지원에 머무는 실정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 이루어질 필요
-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요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취업, 창업, 주거마련비용 등이 없어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차단하고자,
 - 이들 아동에게 어려서부터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어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 CDA) 사업을 시작

참고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인 월 3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1 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

[참고] 우리나라 아동발달계좌(CDA)의 적립수준

구 분	운 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기본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원금	투자신탁	36	180	360	540	648
총 이 자		3	88	381	971	1,490
총원리금		135	748	1,701	2,951	3,866

- 주 : 아동적립 월3만원, 추가적립 월5만원, 정부(지자체)매칭 월3만원 적립시.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안내」, 2007.

나. 추진계획

🌱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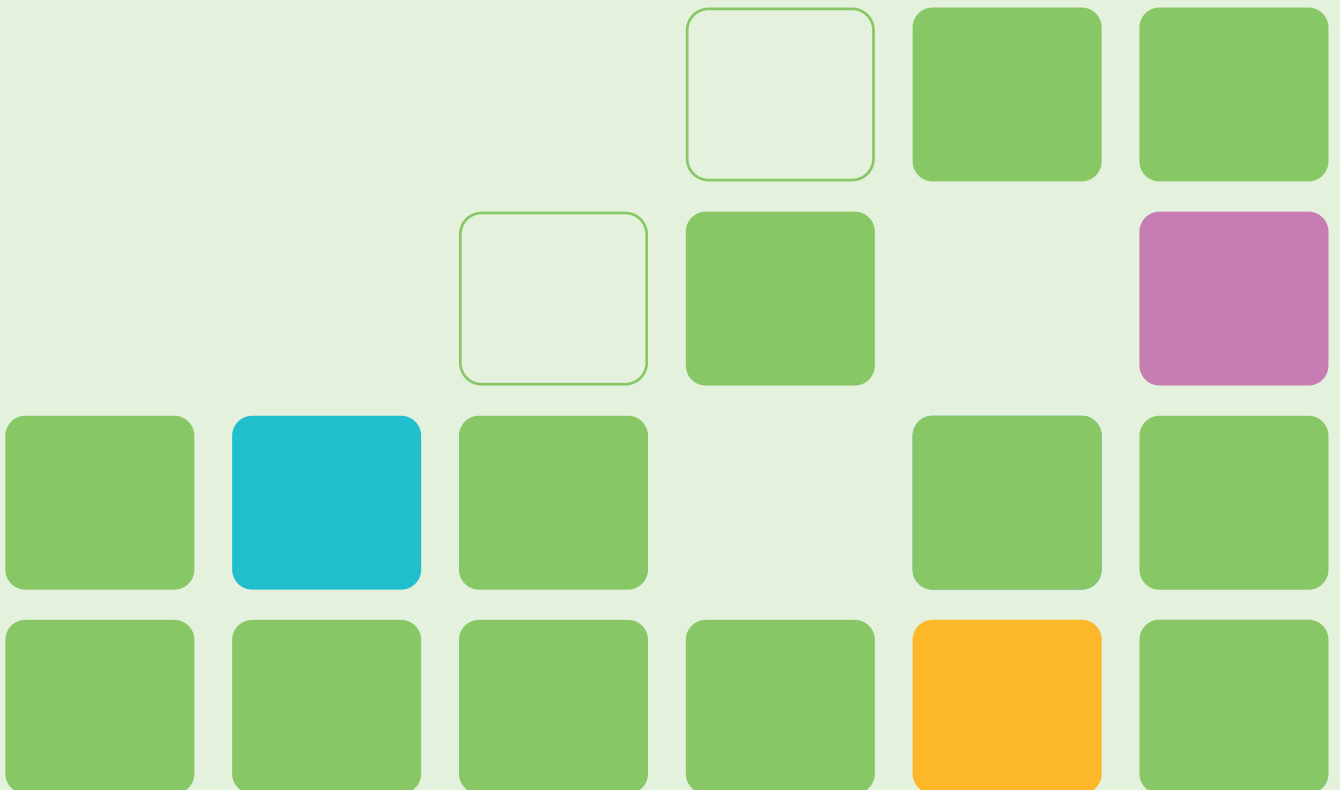
- 아동의 월 저축액과 동일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활용하는 CDA사업 확대
 - 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아동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 미국의 개인자립계좌(IDA), 영국의 아동장기신탁펀드(Child Trust Fund) 등 선진국도 저소득층 및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II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새로마지 플랜 2010



추진 배경

❖ 노인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노후생활안정이 사회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

- 2010년 국민 9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전체인구의 11%수준)
 - 40대 이상 비중은 2010년 46%, 2020년 55% 수준
- 노후생활안정은 노인이 빈곤, 질병, 소외감 등 3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립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달성 가능
 - 노후생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적 대책 마련 필요

노인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

사회적 관심사	소 득 지 원	취 업 지 원	요 양 보 호	교통 및 주거환경	문 화 여 가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응답률(%)	49.4	23.6	16.8	4.8	4.5	0.9

• 자료 : 보사연,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05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는 신·구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 연금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불안 등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 * 노인인구(65세이상) 1인당 생산가능인구(15~64세) : '07) 7.0명 → '20) 4.6명
→ '50) 1.4명
 - * 노인인구(65세이상) 1인당 실질생산가능인구(25~49세) : '07) 4.3명 → '20) 2.3명
→ '50) 0.65명
-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 대두

❖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노후생활안정 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긴요

-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노인세대가 되는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고령화대책 마련 필요
 -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미래 시점에서 대규모의 재정소요가 불가피함에 따라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우려
-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여 사회·행정체제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
 - 세대간 이해관계의 상충(trade off)을 상호 이해증진(win-win)하는 관계로 발전
 - 노인 개개인이 직업 및 사회경륜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노인인구 증가는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도 제공
 - 소득과 재산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미래노인세대는 실버산업 등 관련시장 수요창출의 동인(動因)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

❖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안정과 함께 세대간 통합을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핵가족화, 여성의 성 역할 인식변화 등에 따라 가족이 노인 부양과 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한계
- 노인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우리사회의 어른으로서, 후세대의 존경을 받으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
 - 노후소득 지원, 건강관리 및 요양서비스 확충, 자립과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교통환경 조성, 일자리마련·봉사·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 개발
- 노인세대가 단순히 국가의 부양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기본 방향

❖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②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③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 준비
기반 조성 ④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추진

-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예방과 사전적 대비와 예방에 중점
 - 노후의 경제적 궁핍,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기존의 노인대책에서 탈피
 - 노인이 되기 전부터 자산형성, 건강증진, 사회활동참여 여건을 보장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문제를 사전적으로 대비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
 -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소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
 - 노인세대의 수요를 정부가 기다리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
 - * 건강상담 · 의료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하고, 운동과 영양 상태를 관리해주는 노인건강지원 코디네이터 서비스 추진
- 정책대상자 · 수혜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투자는 노인세대에게 주는 실질적 만족도는 낮은 반면, 사회적 부담만 커지는 비효율성 초래
 - 노인세대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개발을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와 함께 노인세대가 사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계층이라는 편견을 해소
 -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 등
- 기존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최대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
 - 정부내 부처간 업무영역 중복, 중앙 · 지방간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
 - * 체육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등

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유지에 소요되는 생계비의 적정 수준을 보장

- 다양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
- 현재의 소득보장체계 틀 안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및 제도간 연계를 강화
 -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노후 빈곤을 사전에 예방
 -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 퇴직연금의 조기정착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적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통한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도모

② 노인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 사후적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필요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전환하고,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수준 하락을 사전에 방지
 -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집중 검진하도록 건강검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치매·당뇨·고혈압·구강건강 악화 등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지원 강화
- 일상생활에 상당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및 가족의 부담을 완화
 -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의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요양 시설 인프라를 확충
- 홀로 사는 노인과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노인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확대를 통한 노인 학대 예방

③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봉사·여가문화생활 및 노후생활준비 기반을 마련

- 노인이 경륜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노후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 민간분야에서 노인에게 유리한 전략직종을 개발하고, 정부지원 일자리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중심으로 내실화
- 노후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유쾌하고 신나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원봉사·여가문화생활 지원
 - 수요자 중심의 고령자 여가·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자기계발 및 사회봉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
- 고령자들이 미리 노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 건강, 여가, 재취업 등 노후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노인의 일상생활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교통 환경 마련

-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급증하는 만큼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
 -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안전한 주거공간의 최저기준 및 무장애(Barrier-free)개념을 도입한 주택설계지침 마련, 주택개조지원 시스템 구축
- 고령자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인 도로 및 교통시설 설치기준 마련, 고령자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조성,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환경기반 마련
 - 노인보호구역(실버 존) 및 노인보호차량(실버마크) 제도 도입

* 본 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주요 정책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또는 ‘노인세대’로 통칭하여 사용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핵가족화와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 인식 확산
- 다양한 교육수준·직업배경을 가진 노인세대 등장
- 2010년 전체인구의 약 11%가 65세 이상, 새로운 사회여론·소비주도 계층으로 등장

1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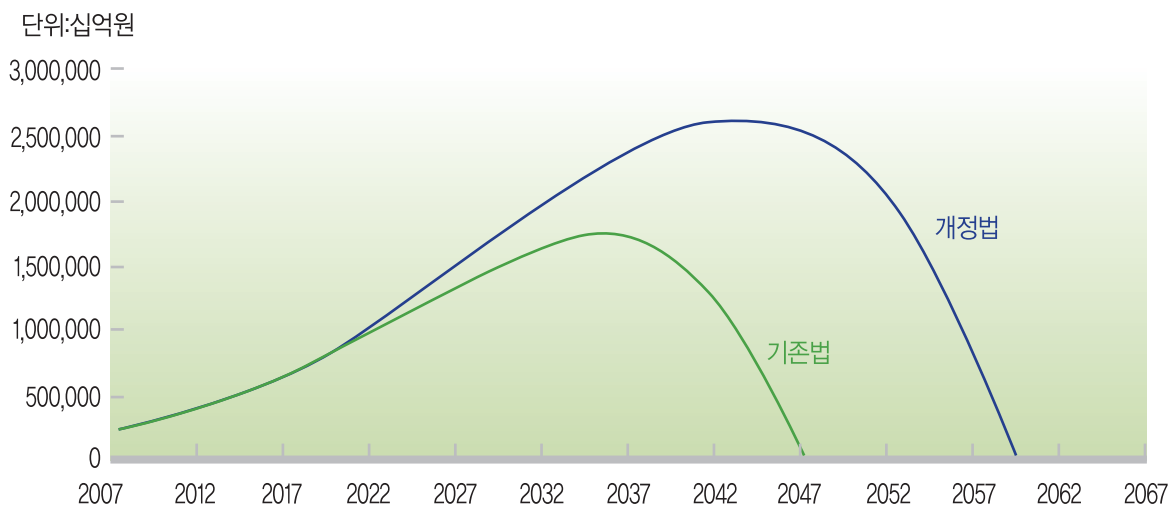
1-1 공적연금제도 체계화

1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 현 황

-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 증가로 2047년 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이 시급하였음
- ‘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급여는 덜 받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합의를 통해 통과('07.7.23시행)됨
 -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8년까지 40%('28년)로 단계적 인하 (*현행 60% → '08년 50% → '28년 40%, '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되었음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 그러나 급여율의 인하만 이뤄졌을 뿐 보험료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이 상존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07년 6월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4년에 최초 수지적자를 기록하고 2060년 소진 전망
 - * 위 추계결과는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배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임 (기본가정)
 -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1.6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대안가정),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 소진 전망

재정추계위원회의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

구 분	최대기금규모	최초 수지적자	기금소진
기본가정	2,465조 ('43년)	2044년	2060년
대안가정	2,670조 ('46년)	2047년	2064년

- 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국민연금의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
 - 전문가 중심으로 '07년 구성된 '운영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 조정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금개혁 시 효율적 사회적 합의방안 등을 논의 중

나. 추진계획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제고

-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추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 관련 제도 개선

- 노후소득보장 강화,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자격·징수, 급여 등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법령 개정 ('09년)

☞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0만원)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2.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함
- *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기준소득월액 상한조정의 필요성

- '95년에 정해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0만원)은 그간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소득월액이 360만원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현상 발생
- * 기준소득월액 360만원인 가입자는 175만여명 (13.2%)이며,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최고등급에 다수가 분포 (사업장가입자 약170만명, 지역가입자 약5만명) ('08.6월말 기준)
- 그간의 소득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대한 상향 조정 할 경우,
 - 고소득층의 보험료 납부가 증가하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급여액 상승효과가 있고 (특히 고소득층 가입자의 급여 적정화)
 - 고소득층가입자와 저소득층 가입자간 연금보험료의 실제 부담률 형평성이 높아짐

☞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 제고

- 인터넷 언론, 지역 언론 및 해외 한인 언론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홍보
-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시대'와 같은 테마홍보 등 온·오프라인 기획홍보 다양화
- 이동부스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홍보 강화

참고 : 국민연금제도 개요

• 국민연금제도란

-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질병, 사망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

• 연 혁

- '88.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 이후, '95.7월 농·어촌지역주민, '99.4월 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제도 실시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는 제외)

• 연금보험료

- 소득의 9% (단,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4.5%씩 부담)

• 연금급여 종류

(단위: %)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완 전	20세 이상 가입후 60세 도달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20년 미만 가입시 5%씩 감액
	재직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64세인 자가 소득이 있는 때 연령에 따라 지급률 적용 - 60세(50%), 61세(60%), 62세(70%), 63세(80%), 64세(90%)
	조 기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60세인 자가 소득이 없는 때 노령연금액에서 매년 6% 감액 지급 - 55세(70%),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4%)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 발생시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대상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반환/사망 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 도달하거나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등/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때	납부보험료에 일정이자 가산

• 제도 운영 현황 ('08.5월말 현재)

가입자 수(천명)					수급자 수(천명)		기금 운용 (천억, 07년 말기준)			
사업장	지 역	임 의	임의계속	총 계	연 금	일시금	수 입	지 출	조성액	수익률
9,384	8,888	27	29	18,328	2,380	8,272	2,561	365	2,196	7.05%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 현 황

- '99년부터 전국민 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 및 누적징수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가입자 수 : '99.12월 16,262천명 → '07.12월 18,267천명
 - * 월수 누적징수율 (누적납부월수/누적고지월수 * 100) : '02.12월 94.6% → '07.12월 96.1%
- 그러나 소득과약 인프라 미흡('07년 기준 33%) 및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에 따라 납부예외자가 전체가입자의 28.0%(511만명), 2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7.3%(134만명)에 달함('07.12)
 - * 납부예외자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등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 (납부예외 사유는 대부분 실직·휴직·미취업(76.9%)에 기인)
 - * 장기체납자 : 납부 예외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 천명, %)

납부예외사유	2003.12월		2007.12월	
	인 원	비 중	인 원	비 중
실직 및 휴업	3,574	78.3	3,925	76.9%
사업중단	219	4.8	428	8.4
주소불명	479	10.5	396	7.7
기초생활곤란 등	143	3.1	218	4.3
재학 및 병역의무	110	2.4	119	2.3
교도소수감, 3월이상 입원 등	40	0.9	21	0.4

-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지속
 - '03년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일용직·시간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총 556천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실적

1단계 ('03.7.1~)	법인·전문직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23만명 전환
2단계 ('04.7.1~)	건강·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 22만명 전환
3단계 ('06.1.1~)	나머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10만명 전환

•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수 증가 : '03)466천명 (전체 사업장 가입자의 6.7%) → '05)881천명(11.1%) → '06)1,100천명(12.8%) → '07)1,209천명(13.2%)

-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후정산제도 도입
 -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정산제도 도입
 -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8만명이 사업장가입자로 편입 ('07)
 - * '08년부터 민간부문 공사에도 확대 적용
 -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 공사현장의 사용자가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공사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을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
-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소정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수급기회 확대 ('08.1~)
 -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전액을 인정 ('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인정기간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 소득월액의 1/2을 인정 ('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나. 추진계획

▶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 축소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 건강보험 · 고용보험 및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납부대상자 확인
- 납부예외자를 유형별(연령/납부이력 등)로 나누어 맞춤형 관리를 통하여 납부 유도
 - 노후 준비에 관심이 큰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설계' 상담을 통해 노후를 위한 재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료 납부 유도
 - 노후생활설계 상담 시 추납 · 반납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기회 부여
 - * 추납 : 사업중단 ·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 반납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 종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
- 신규 소득신고자에 대한 납부안내 강화, 미납 초기 집중관리로 성실납부 유도,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보험료 징수율 제고
 - 체납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유관기관과 전산연계 등 징수업무 시스템화 추진
 - * 체납조기경보시스템 : 사업장 폐업 · 부도 등 체납 개연성이 있는 대상자를 매일/월로 확인하여 조기 납부예외 또는 체납처분
- 각종 신고 · 신청 및 보험료 납부편의방안 확대로 자발적 납부 유도

☞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 4대 사회보험 간 가입자 정보 공유, 다양한 홍보 및 방문 설득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의 확대 및 홍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특례적용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및 육아휴직자 등에게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신청시 적용제외 허용) 하는 방안 검토
 - 보험료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본인의 기여금 전액을 생계급여의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보전(17천명)
- 산전후휴가자(42천명) 및 육아휴직자(11천명)의 보험료 부담 경감 검토
- 실업급여수급자(85만명) 당연적용(신청시 납부예외 허용) 검토
 - 보험료는 본인이 50% 부담, 나머지 50%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3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가. 현 황

- 국민연금 급여제도상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음 (' 07.7월, 국민연금법 개정시 반영)
 - 근로활동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사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1) 연기연금제도 도입

- 60세 이상의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하는 1년마다 6%씩 급여액을 증액하여 지급

(2) 조기 연금수급에 따른 감액률 상향조정

- 60세 이전이라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연금을 감액하는 비율을 현재의 5%에서 6%로 확대하여 조기 연금수급을 억제하고 고령자 근로를 유인함

(3) 소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소득이 없어 60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급여액을 인상하여 소득활동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구 분		기 준	개 선
55~59세	소득활동 기간	연금지급 정지	변동 없음
	소득활동 종료 이후	기존의 연금액 지급	소득활동 기간 1년당 6%씩 증액한 연금 지급
60~64세	소득활동 기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연금액의 50~90% 지급
	소득활동 종료 이후	연금 지급	변동 없음

나. 추진계획

- 기 도입한 근로유인형 급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함

4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가. 현 황

- 연금 수급자수는 평균수명 연장 및 장기 근속자의 증가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불안정 심화

특수직역연금 연금수급자 및 재정적자 장기추계

(단위:명, 억원, '06년 불변가격기준)

연금명	연도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사 학 연 금	연금수급자	39,830	84,672	134,053	161,339	176,839
	재 정 적 자	-	-	57,496	99,905	167,723
공무원 연 금	연금수급자	282,815	490,403	708,512	862,235	951,280
	재 정 적 자	21,047	105,656	245,693	363,335	499,047
군 인 연 금	연금수급자	72,292	61,428	54,453	52,257	52,109
	재 정 적 자	11,271	13,776	19,826	30,256	49,141

• 군인연금의 경우 2050년 재정수지차는 현가로 환산시 13,582억원(물가 3% 적용)

- 저부담-고급여 체계,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재정지원액 증가
 - *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한 정부보전금 규모('06 예산) : 공무원연금(8,452억원), 군인연금(9,261억원)
- 연금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해 부담률 인상(7.5%→8.5%), 연금수급개시 연령 단계적 상향조정(50세→60세)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선진국도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 추진

주요 선진국도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혁 추진

급여수준 인하	부담률 상향 조정	기금 적립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나. 추진계획

▶ 부담 및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

- 각 연금별로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 기여율·부담률, 기여금 납입 재직기간, 연금산정 기준소득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정하고, 출산 크레딧 도입 등 제도 선진화 병행 추진

▶ 책임준비금 적립 방안 검토

- 연금기금 고갈에 대비하고 연금부담에 대한 세대간 불평등을 하소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 확보 방안 마련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형평성 제고

- 체계적인 민·관 생애소득 비교를 토대로 연금간 형평성 확보 방안 검토

참고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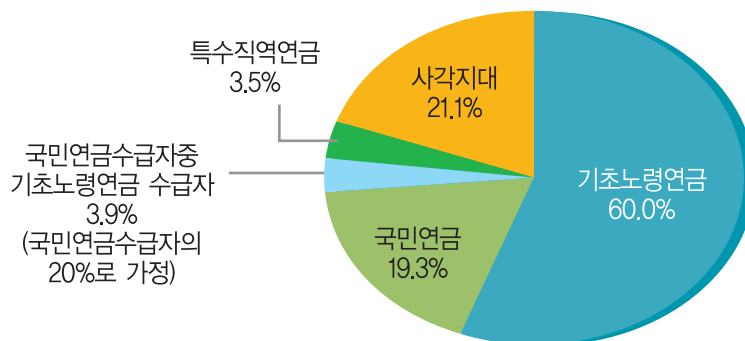
구 분		특수직역 연금	국민연금
취 지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 외에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및 산재보험적 성격 포함	기본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
기여율 (보험료율)		국 가 8.5%, 가입자 8.5% (사학연금 : 국가 3.5%, 법인 5.0%, 가입자 8.5%)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 4.5%, 가입자 4.5%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9%
급여	산 정 기 준	• 최종 3년 평균보수월액 * 보수월액 : 과세표준의 65%	•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 과세표준의 100%
	급 여 수 준	• 퇴직연금 : 최대(33년 이상 근무) 최종 3년 평균보수의 76% - 20년까지는 50%, 그 이후는 1년당 2.0%씩 가산 • 유족연금 : 퇴직연금 × 70%	• 노령연금 : 40년 가입시 전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 - 가입 1년당 1.25%씩 가산 • 유족연금 : 20년 기준 노령연금 × 40%~60%
	수 요 급 건	• 퇴직연금 : 20년 이상 가입 • 장애연금 : 공무원 장애시 • 유족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 장애연금 : 가입 중 장애 발생시 • 유족연금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지 방 급 식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연금
	지 급 시 기	• 퇴직 직후부터 지급 단,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51세에서 60세 또는 정년도달시	• 60세 도달시 지급 * 2013년에 61세,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여, 2033년 이후 65세에 지급

5 기초노령연금 시행

가. 현 황

-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반면, 가족 부양의식은 약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존재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07.4월, 시행 '08.1월)
 - 지급대상자 : '08년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만명, '09년 70% 360만명(3단계),
* '08.1월에는 70세 이상(1단계), 7월부터 65세 이상(2단계)으로 적용 확대하였음
 - 지급액 : 국민연금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의 5%(8.4만원, '08년), '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시기·방법은 별도 논의
 -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공적노후소득보장 수급율*이 개선되었음
* 33.3%('06) → 35.2%('07) → 78.9%('08) → 90.4%('09)

2008년도 공적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규모(추계)



- 선정기준은 '08.7월 현재 전체노인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환산액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인 경우
 - 기초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40~90% 범위내 국고 차등보조
* 시·도 및 시·군·구간 부담률은 시·도 조례로 규정

소요 자원 추계

(단위 : 억원 / 경상가)

구 분	'08년	'09년	'10년	'15년	'20년	'25년	'28년
계	22,281	33,819	34,553	60,251	94,916	146,638	373,542
GDP대비비율	0.21%	0.30%	0.29%	0.37%	0.43%	0.52%	1.14%
국 비	15,908	24,350	24,878	43,381	68,339	105,579	268,950
지방비	6,373	9,469	9,675	16,870	26,576	41,059	104,592

• (기본가정) 연금액 : '08~'27년 A값의 5%, '28년 A값의 10%
 A값 : '08년 잠정 추계, '09~'12년 중기재정추계, '13~'28년 장기재정추계 적용
 국민연금 제도 성숙을 전제로 수급자 비율 점진적 감소, 평균 국고 보조율 72%

나. 추진계획

♥ '09년부터 노인인구의 70%(360만명)로 수급자 확대 ('08년 노인인구의 60%에 지급 중)

- 대상자 선정기준액 확정 고시('08.8) 및 연금 지급 ('09.1~)
 - 소득환산액이 노인단독 월 68만원, 노인부부 월 108.8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

♥ 세부 시행 기준 완화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확대

- * 2단계 시행('08.7)을 위한 수급자 선정 결과, 목표 수급율(60%)에 다소 미달
- * 근로소득 공제 및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08.8월 수급율은 약 56% 수준 (약 281만명)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가. 현 황

- 민·관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가입기간 별도 산정으로 어느 한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
 - *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특수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기업 9년과 공무원 19년 근무시, 총 재직기간이 28년임에도 연금수급 불가
 - 연간 8만명 정도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 연금제도로 이동
-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관한 부처간 합의 도출 ('08 상반기)
 - 국민연금개혁위원회('08.5.14, 복지부)와 공적연금개혁협의회('08.6.5, 총리실)에서 공적 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에 관한 정부안 확정
 - 각 연금제도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의 총 가입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각 제도에서 연금수급 가능

- (예시) 甲은 민간 A기업에서 7년, 공무원으로 14년 근무 후 퇴직
 - 국민연금 가입 7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공무원 재직 14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받음

참고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연계 관련 정부안 주요 내용

- 연계의 기본원칙 : 각 연금기금 간 재정이전 없이 가입기간만 합산
- 연계 선택여부 : 연금 간 이동시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
- 연계 대상자 :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 급여수준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각 해당제도의 지급률 적용
- 연금 수급연령 : 60세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
- 경과규정 : 제도시행 이후의 이동자로 한정하고 경과규정은 마련하지 않음
 - * 다만, '07. 7 국민연금법 개정예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이동시 일시금을 반환받지 못한 자는 연계 대상에 포함

나.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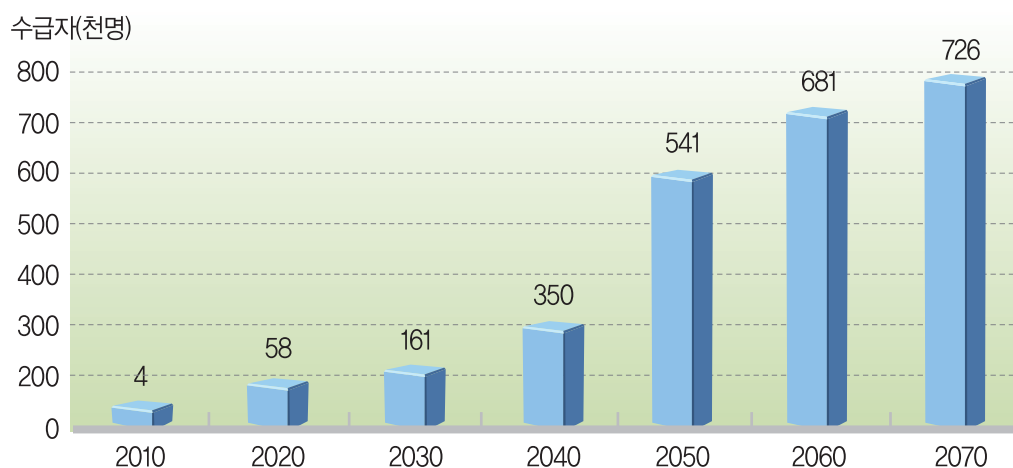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 합의된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정 추진 ('08년 중 입법 추진)
- 국민연금의 주관부처인 복지부에서 대표 발의, 행안부 · 국방부 · 교과부는 협조

참고 :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신규수급자 및 추가소요액

- 가입기간 연계시 신규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신규 연금수급자 전망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회,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2007

- 가입기간 연계시, 현재 재직신분 변동시점에서 지급하던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오히려 연금재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그 이후부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기 시작함

가입기간 연계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

(단위 : 십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 도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기존 수지차	30,385	36,728	21,633	-18,149	-85,512	-184,226	-226,085
연계후 수지차	30,956	37,799	23,037	-18,200	-87,836	-189,886	-233,568
연계에 따른 추가소요액	-571	-1,071	-1,404	51	2,324	5,660	7,483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회, 「공적연금가입기간연계방안 연구」, 2007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 퇴직연금제도 확대

가. 현 황

- 기존의 퇴직금 대신에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05.12.1)
 - * 퇴직금 제도 :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속자 대상)
 - * 퇴직금은 중간정산, 근속년수 단축 등으로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는 미흡
- 퇴직연금 형태는 노사가 합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선택
 -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약 4만545개소로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8%가 해당 (가입자 수는 76만 명, '08. 6월 기준)
 - 주요 공공부문의 경우, 공기업과 산하단체 총 446개소 중 14.8%인 66개소가 퇴직연금을 도입 ('08년 8월 기준)

나. 추진계획

☞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퇴직연금 조기 정착을 위해 근로자대표, 노무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 컨설팅 등을 지원

☞ 퇴직연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사업장별 퇴직금 총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 * 퇴직금 손비인정범위 : '05) 40% → '08) 35% → '09) 30% (최종적으로 2011년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될 예정)
- 퇴직금을 받을 때보다 퇴직연금 수령시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더 낮도록 연금소득 세제 개편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의 경우, 연금수령액 확대를 위해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공제혜택(연 300만원) 부여
 - (현행)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개인연금과 별도로 DC형 퇴직연금 추가납부액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10년)

- 현재는 DC형, DB형 중 택1하여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업장별로 DC형, DB형 퇴직연금 복수가입 허용
- 여러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 (현행) 각 사업장별로 1:1 맞춤형 퇴직연금 설계 → 정형화된 표준 퇴직연금 상품들을 여러 사업장에 일괄 판매하여 가입효율성 및 가입기회 확대

☞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퇴직연금 전환 여부를 포함하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
 - * '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퇴직연금에 관한 지표 포함

☞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 신규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방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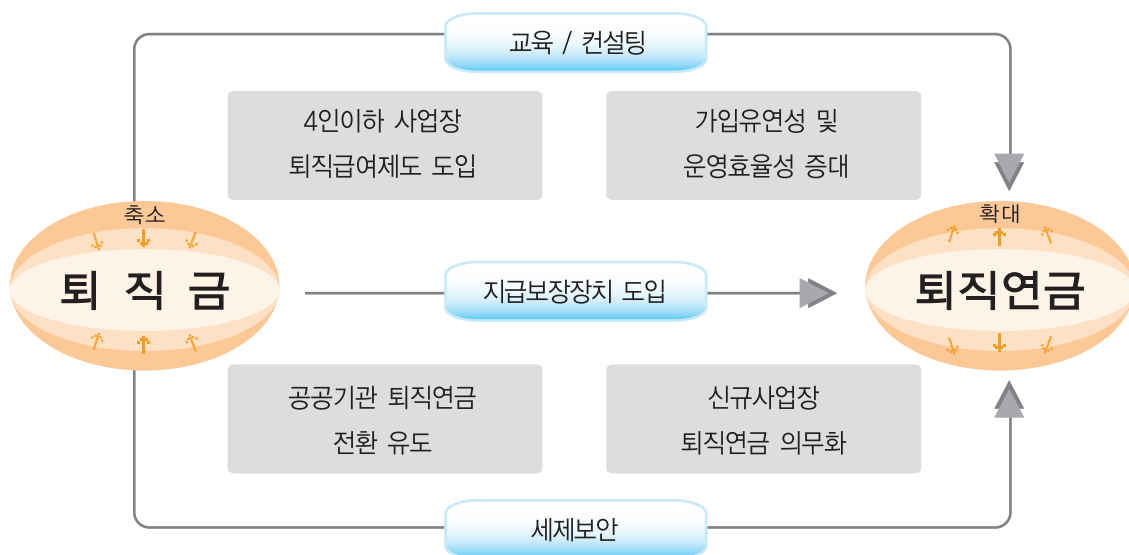
❖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강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전면개정 추진 ('09년 상반기)

* 주요 개정내용 :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퇴직연금의 수급권 및 지급 보장 강화, 제도 활성화 촉진 및 제도적용 확대, 퇴직연금 제도운영인프라 확충

❖ 퇴직연금에 예금자보호법 확대 적용 ('10)

- * 사업장 도산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불능에 대비
-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1인당 원리금 최대 75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 확대 적용



2 개인연금 활성화

가. 현 황

-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및 규모가 미미
 - '94년 개인연금 판매 개시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노후생활 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미흡

연금저축 세제혜택 개요

구 분	세 제 혜 택
불입 단계	소득공제 300만원 (퇴직연금불입액과 통산)
운용 단계	운용수익 비과세
연금 수령단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소득공제 허용

- 노후소득보장의 패러다임이 공적연금 위주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역할이 함께 강조되는 추세

나. 추진계획

🌱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 개인연금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 검토
 - * 복지부,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의 상시적 협의체계 구축 추진
-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연금소득 세제 정비 추진
 - * 금융상품으로서의 개인연금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소득 과세제도 정비와 연계하여 추진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장기자본시장의 육성 및 자산운용 수단의 다양화 등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개인연금 펀드 운용성과의 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관련 다양한 펀드상품 개발 및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지원

참고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요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사적 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간 역할분담으로 노후빈곤에 처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 노후 소득재원을 다양화하여 노후빈곤 위험의 분산

- 현재의 소득보장체계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부담 급증,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의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고령근로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의 대응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

- 적정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 공·사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개별 제도 보완 및 제도간 연계 강화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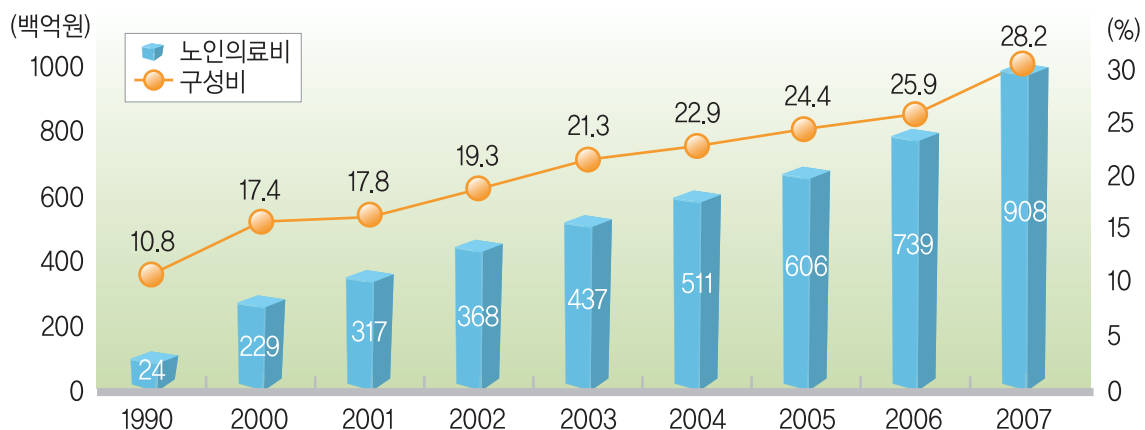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1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가. 현 황

- 노인 상당수가 건강 손실로 삶의 질 저하와 활동 장애를 겪고 있음
 - 건강손실로 노년기가 되면서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
 - * 삶의 질 지수(EQ-5D) : 19~44세 0.95, 65~74세 0.75
 - * 노인자살 원인 : 질병(35.9%), 우울증(19.6%), 자녀와 갈등(9.8%)
 - 3명 중 1명은 활동 제한, 5명 중 1명은 타인의 도움 필요
 - * 활동제한율 37.8%, 일상생활도움 필요율 17.8%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노인의료비 급증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07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인인구 비율은 9.2%이나, 진료비 비중은 28.2% (9.1조 원)에 달하며, 1인당 진료비(207만원)도 전체 평균(67.5만원)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
 - 노인의료비가 현 증가추세를 유지시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30년 16.8%, 2050년 26.5%에 육박 (서울대 보건대, 2002)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 및 전체 의료비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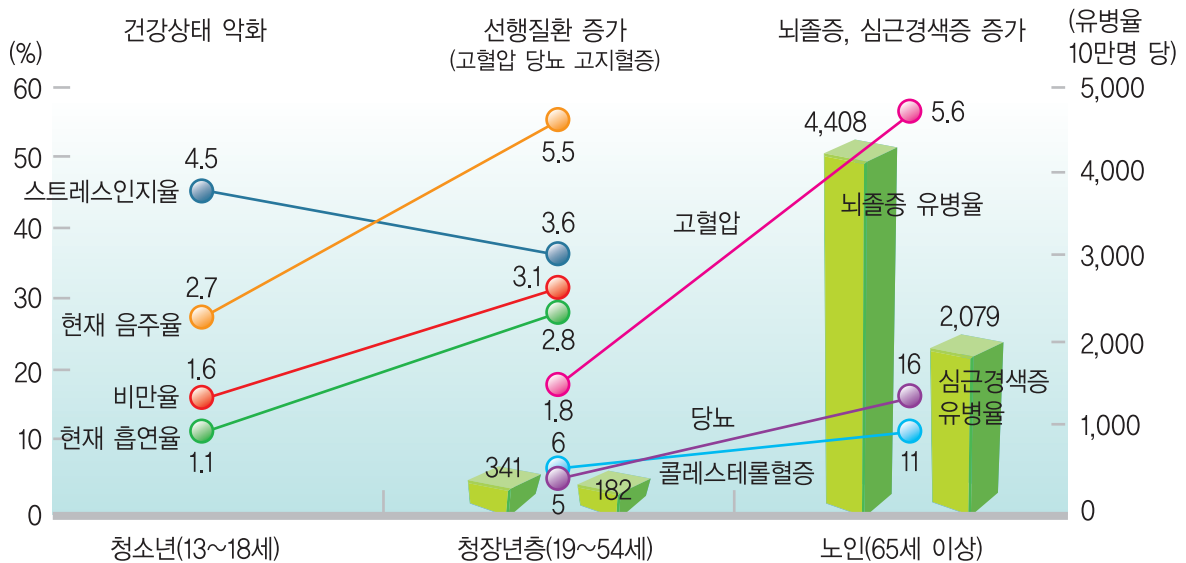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태 악화 진행되므로 질병예방 강화와 기초건강 증진 필요

– (청소년) 흡연, 음주, 비만 등 생활행태의 악화 → (성인) 만성질환 증가, 지속치료 등 관리 미흡 → (노인) 뇌졸중 등 중증질환 급증

* 65세 이상의 건강행태 : 흡연률 19.7%, 고위험음주율 22.1%, 규칙적 운동 21.7%, 적정 체중 39.6%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나. 추진계획

🌱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행태개선 토탈케어체계 마련
 - 건강노인, 허약노인, 질환자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서비스제공 체계 마련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의 보건소 사업과 연계하여 운동, 영양 등 서비스 제공

- * '06~'07년에 실시한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으로 16개 시·도에 '노인 건강대학' 및 '방문운동프로그램' 실시하였고,
- * '08년부터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입증된 허약노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통해 보급 중
-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
 - 복지관, 복지시설, 무료경로급식 등의 이용노인에 대한 영양개선 및 운동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운동 지원사업 확대
 -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인건강체조, 에어로빅, 요가, 기체조 등 건강운동 사업 추진
 - 노인운동 전문인력을 지역 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 노인에 적합한 체육활동 지도 ('06년 250명 → '10년 450명 증원)
-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 게이트볼, 볼링, 생활체조, 바둑, 장기 등 13종목 경기 실시 및 문화행사, 건강클리닉 등 부대행사 개최
 -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주관으로 매년 9월경 개최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 수검률 제고

- 현재 25% 수준인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40%('10년)까지 높임
 - 암 등 질병의 말기 진행 후에는 큰 수술과 많은 의료비, 장애후유증, 직업상실이 발생되므로 조기 진단·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대처
 - * 5대 암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검진률 : 2002. 6.9%→2004. 12.0%→2006. 24.5%
 - 암 검진에 대한 TV광고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 본인부담을 검진비용의 20%에서 10%로 경감
 - 건보재정 210억 추가 소요 예상
 - * 건보가입자(비사무직)의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비효율적인 건보재정 지출 절감해 자원 확보

- 암검진기관 확충 및 접근성 개선
 - 직장 내 유방·자궁경부암·대장암 이동검진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위·간·대장암 검진기관을 일반검진기관이 아니더라도 제각각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건강검진체계 개편

-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일반건강검진 항목 조정
 - 만40·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기 개편한 1·2차 검진 항목 벤치마킹
-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검증된 노인건강진단 확대 실시
 - 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07.4월 도입) : 노년기에 특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장애, 신체기능검사, 골다공증(여성) 검사 등 실시 중

❑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가. 현 황

-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병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
 - 현재 당뇨병 환자 규모는 300만명 이상이며, 매년 50만명 씩 신규 환자가 발생 (2030년에는 전 인구의 14.4%인 722만명이 당뇨환자로 추정)
-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는 진료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어려움
 - 노인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일당(日當) 정액수가 형태로 도입 ('08.1~)
- 노령기에는 시력·청력 상실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나 관련 질환에 대한 국가 수준의 예방·관리 대책 부족
 - 65세 이상 노인 중 44%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시력장애가 있고, 23%가 보청기 없이 청력장애가 있음

나. 추진계획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 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 국가 검진 후 지속적 관리를 위해 검진 사후관리 강화
 - 생애주기별 검진 목표 질환과 연계, 지속관리로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만성질환을 검진 사후관리 중점 질환으로 선정·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혁신
 - 민간협력 모형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산
 -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등록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 포인트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제공
 - * 지속치료, 교육이수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포인트를 부여·축적하고 마일리지처럼 사용
 -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관리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관 성과연동 지불체계 도입 검토
 - * 지속치료율, 합병증 검진율, 혈압 또는 혈당 조절정도 등의 성과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

☞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 말기 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 정립, 인력 및 시설설치 기준 등 마련
 - 호스피스 수가 개발 및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제 마련 시행 (07.12.28, '08.1.1시행)

-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한 환자분류군별 일당(日當) 정액수가를 설정하고,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병행
-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수가 설정

🌱 눈·귀 건강, 낙상·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종합관리

- 눈 건강, 귀코목 건강, 골다공증 예방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가져오는 노인성 눈·귀질환 및 낙상 후 골절을 쉽게 일으키게 하는 골다공증에 대하여 예방과 조기진단, 관리대책을 포괄하는 국가종합대책마련
 -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골다공증 감시체계구축 방안 및 정책개발」연구와 병행
-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지원 방안 모색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노인 관련 조사 강화
 - 저소득층 노인 대상 지원 방안 모색

🌱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 취약노인에 대한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실시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제공,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 보건교육 실시
-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 확대 실시
 - 현행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대상에서 '09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자 확대 예정 ('08년 9천명 ⇒ '09년 1만3천명)
 - * 노인의 치아우식증(충치) 유병율은 23.8%, 치주질환(잇몸질환) 유병율은 87.5%이며, 자연치아 수는 17개로 의치 필요 노인비율이 35.5%에 달함 ('06,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

- 목적 : 다수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
- 대상 :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재원 : 건강증진기금(50%), 지방비(50%)

③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가. 현 황

-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약 40만 명(전체 노인의 8.3%, '07)으로 추정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환자 급증 전망

* 치매환자 진료인원 : 48천명('02년) → 84천명('05년) → 135천명('07년)

치매노인수 추계 ('00~'20)

(단위 : 천 명)

	2000	2007	2010	2020
65세 이상 인구 수	3,395	4,810	5,357	7,701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282	399	461	693
치매 유병률(%)	8.3	8.3	8.6	9.0

• 자료 : 치매관리 mapping 개발 연구(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유병률을 토대로 '06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노인인구수를 활용하여 재추계함

-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 부양능력 약화
- 치매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부담 예상
 - * 치매 총 진료비 : 561억원('02)→1,306억원('05)→3,268억원('07)
 - * 치매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3조4천억원~7조3천억원으로 추정
- 치매의 종류가 다양하고 예방, 치료, 관리가 가능하나 막연히 노화현상으로 인한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 만연

나. 추진계획

🌱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가 참여하도록 확대
 - * 치매 조기검진률 제고 : '07년 3.7% → '12년 60%
 - * '08년 9월 현재 전국 253개 보건소 중 118개소만 치매 조기검진 실시 중

- 60세 이상의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항목 추가 등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주기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치매조기검진 확대 실시
- 뇌혈관성 치매의 주요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성 질환 관리 등 건강 증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치매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예방정책 강화
-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 건강 프로그램 개발·보급

❖ 종합적·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 ‘국가치매등록관리DB’ 구축하여 치매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교육·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약값이 부담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매환자에 대하여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 치매환자의 치료 및 중증화 지연을 위해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전문화·특성화된 치매시설로 개발 지원

❖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중앙-권역별-지역별 단위의 전달체계 마련
- 치매 전문인력 대폭 확충 및 치매 관련 연구개발 투자확대

❖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의 부담 경감
- 치매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보급 등 가족 지원사업 강화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가. 현 황

- 고령, 치매·중풍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족에 의한 간병은 한계
 - 기초수급 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인의료비가 급증
 - *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중 : 17.8%('01년) → 25.9%('06년)
- 고령,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08년 7월부터 시행)
 - '05.7 ~ '08.6. 3차례 시범사업 실시 후 '07.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08년 4월부터 신청 접수 및 등급판정 심사 실시, '08년 7월부터 요양1~3등급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 * '08년 말 기준 노인인구의 8%인 40만 명이 신청, 그 중 17만 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였고, 12만 명이 서비스 이용 중
-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부조사업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 선택권을 중시하는 사회보험체계로 전환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비공식적으로 가정 내에서 간병을 하던 여성 등의 사회·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 기대됨
 -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요양1~3등급에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점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확대하여 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나. 추진계획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보험료 부담수준과 수급자 확대 간 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
 - * 현행 요양3등급(중등증)에서 등급외 A형(경증)의 일부까지로 확대할 경우 수급자는 17만명('08) → 18만명('09) → 23만명('10)으로 증가 예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를 현행 요양3등급(중등증)에서 등급외 A형(경증)의 일부까지로 확대
 - * 장기요양급여대상자 : 17만명('08년) → 18만명('09년) → 23만명('10년)

🌱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 수급자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재정 수지 균형 유지
 - * 소요재정 전망 : '08(8,581억원) → '09(17,926억원) → '10(20,352억원)
-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정확한 예측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필요
 - 관련변수 분석 및 합리적인 재정모형 설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 추진

🌱 본인부담 수준 관리

-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는 전체 본인부담 수준 적정 관리
 - 외국과 비교 시 본인부담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본인 부담율(재가 15%, 시설 20%)은 적정
 - 다만, 식대 등 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의 비용을 관리하여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함

☞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 적정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하고, 질 낮은 시설 명단 공개하는 등 서비스 질 평가 체계 단계적 도입
 - '09년부터 시설서비스 질 평가 후 평가결과 공개
 - '10년부터 서비스 질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지급 실시

☞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마련

-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에 이르기까지 1대1 밀착 상담체계 지속 추진
 - 인정서 발송 후 최초상담, 재가급여 이용자 월1회 · 시설급여이용자 격월1회 정기상담, 이용자 요청 및 필요 시 수시상담 실시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체의 기능상태나 개개인이 원하는 바에 적합한 표준이용계획서 제공, 이용절차 등 안내
 - 365일 24시간 Total service 지원체계로 운영

☞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도우미, 보건소 맞춤형건강관리사업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결
 - '08년,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 중 60%를 기타 서비스와 연계 → '09년(65%) → '10년 (70%)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내용

(1) 급여 대상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②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애 정도에 따라 요양1등급~3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서비스 대상이 됨)

(2)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②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인정여부와 등급 판정 →
- ④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3)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자기 부담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20%(월 40~60만원 정도) * 제도시행 이전에는 1개월에 100~200만원 부담하였음
재가급여	집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의 수발서비스를 받음	15% (최대 월 10~15만원 정도)
특별 현금급여	요양시설이 없는 곳이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서벽지, 오지의 경우 현금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	-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4) 재정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및 지방비

- 장기요양보험료 :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본인의 건강보험료액의 5% 내외 (’08년의 경우 평균 2,700원 수준) 정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
- * 따라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가. 현 황

- '05년 수립된 「치매·중풍 등 노인을 위한 특별보호대책」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08.7.1)에 대비하여 '06년~'08년 3개년 간 집중적인 시설 확충
 -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약60명 이상 정원 규모의 중대형 시설을 총 264개소 설치 지원
 -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재가기능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재가시설을 '06~'08년 3년간 총515개소 설치 지원 (그룹홈 203개소, 소규모 221개소, 재가기능센터 91개소)
 - 농어촌지역의 재가복지시설을 3년간 42개소 설치 지원
- 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이 가정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재가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기관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활성화 추진
 - 특히,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서비스(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에 의한 인프라 확보 추진
 -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방문요양기관 설치하는 등 재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08.6월말 기준 2,687개 방문서비스 기관 설치
-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08년 2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 현재 약 7만여 명의 요양보호사 배출
 - 일부 지역에서 교육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불법사례 발생
 -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필요

- **시설서비스**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서비스** :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간병, 수발, 간호, 건강증진, 고령친화용품 대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나.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확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0년 시설수급자 확대계획(1,2등급 → 3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특히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 시설설치 지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수)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요양시설	87	104	73	100
그룹 홈	98	55	50	50
소규모요양시설	96	65	60	60
재가기능센터	-	49	42	55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6	14	12	15
합 계	297	287	237	280

🌱재가서비스 활성화

-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재가서비스기관을 적정규모로 설치
- 서비스경쟁 등을 통한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 유도
 - 기관 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표준 매뉴얼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 서비스 등 기관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질 높은 서비스 인력 양성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적정한 교육기관 설립 운영 유도
- 교육운영 신고센터 운영(08.4월~) 및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교육기관 변칙운영 사례에 대처
-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보완 및 실습교육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하고 우수한 간병 전문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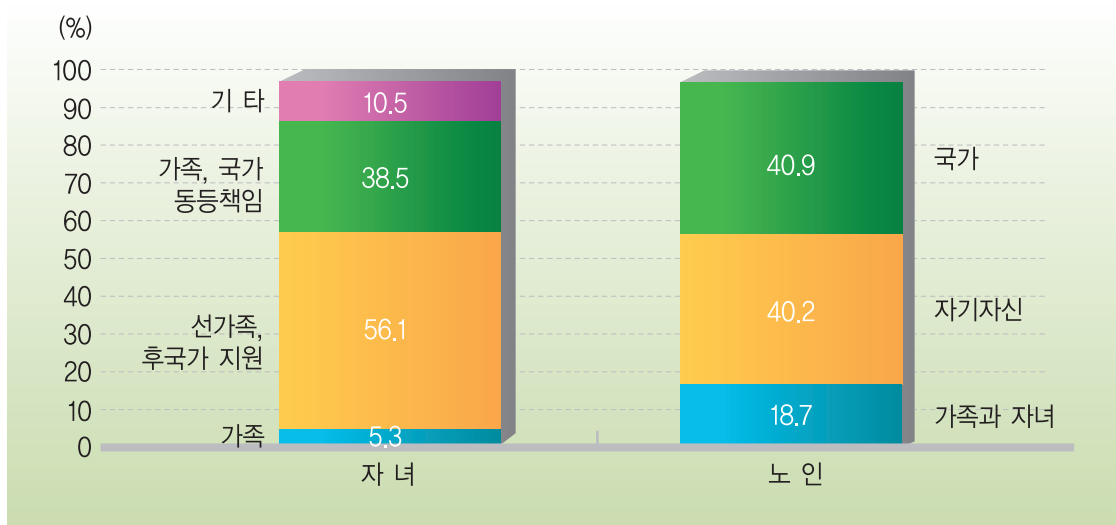
2-3 노인 권익 증진

1 독거노인 보호 강화

가. 현 황

-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핵가족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에게 대한 가족의 부양 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

부모부양 의식조사



-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에 따라 독거노인의 수는 증가 추세임.

독거노인은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건강 등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열악하고, 홀로 돌아가시는 고독사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08년 독거노인은 93만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8.6%를 차지하며, 매년 5만명 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
- '07년 6월부터, 시군구별로 지정된 노인복지관 등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생활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시행 중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현황

구 분	예 산	사업기간	서비스 제공인력	수혜 독거노인
2008년	384억원	12개월	5,230명	115,060명
2007년	236억원	7개월	6,767명	142,538명

나. 추진계획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을 점차 확대하여 ①주기적 방문과 안부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 ②건강·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③독거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연결 등의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우수활동 사례

- 의식이 없는 독거노인을 발견, 119에 연락하여 응급조치
- 가스렌지를 끄지 않고 발일 나간 독거노인 댁에 방문하여 화재 예방
- 노인 대상의 사기전화를 대신 받아 피해 예방
- 적십자·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을 연결하여 양곡 지원

- 유사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통합 추진('09년)

* 수혜노인 : '08)115천명 → '09)120천명 → '10)126천명

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 확인을 위한 U-care시스템 구축

- 노인 가구 내 센서를 설치하여 노인의 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응급 상황에 구조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
 - 부여·성남·순창의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8.7~'09.2)
 - 향후 취약계층 1만 명을 대상으로 본사업 확대 실시 ('09.5~) 증가할 것으로 예측

2 노인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가. 현 황

-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
 - 노인학대 상담건수 증가 추세 : 13,836 ('05) → 19,092 ('06) → 27,492 ('07)
 - 시·도의 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8개소에 불과하고 원거리인 경우 신속한 현장방문 어려움
 -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학대예방 프로그램 미흡
-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려 노인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경제 악화, 가정 불화로 이어질 우려
 - '08년 5월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49.4%가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경험.
 - 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노인의 47.5%가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으며, 물품 구매 노인의 34%가 이로 인한 가족 간 불화를 경험
-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양 및 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시대에 맞는 효 문화 정립 필요
 - 국가차원의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08.8월부터 시행

나. 추진계획

❖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 적극적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현재 18개인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매년 2개 소씩 확충
- 노인학대 관련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노인학대 상담·교육·홍보, 학대 사례집 발간
 - 노인학대 발생 빈도·유형·원인 등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
 - 민간단체 및 매스컴 등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교육·홍보 (노인학대신고 및 상담전용전화 1577-1389 홍보 등)
 - 의료인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 지역사회의 신고창구 다양화를 통한 접근성 제고,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을 통한 피해 예방

❖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 각종 교과과정에 노인 및 부모공경 실천사례를 포함하는 등 인성교육 강화
 - 혈연중심의 효 개념에서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경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사회적 윤리 확대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 및 홍보 확대
 - 효행·경로우대 사례 발굴, 포상 후 사례집 발간, 보급
 - 경로우대실천 기업에 대한 표창 및 홍보 강화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 일자리 창출

1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

가. 현 황

-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노인의 증가로 취업 및 사회 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약 11.8% 차지
(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04)
- 노인의 사회참여, 소득보충, 노인의 경륜과 경험의 활용, 건강증진 등을 위해 '04년부터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중
 - 거리환경 개선, 주차 단속, 문화재 해설 등 주로 공공분야의 사회공헌 일자리로서 월 20만원 급여에 연간 7개월 근로
 - '08년의 경우 일자리 희망노인 약 57만명 중 정부지원 일자리 11만7천개 지원 (일자리 수요의 20% 충족)
 - * '06년)83천개 → '07년)110천개 → '08년)117천개 일자리 제공
- 하지만 노인의 저학력, 저숙련 특성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일자리 제공업체와 일자리 희망노인의 욕구가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참여 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필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체계



나. 추진계획

노인육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단위 : 만개)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계	8	11	11.7	14.8	21	26	30
공공분야	8	11	9.7	10.8	15	18	20
민간분야 (누 계)	-	-	2	2(4)	2(6)	2(8)	2(10)

• 2012년 기준 일자리 희망노인 65만명으로 추산되며 30만 일자리 창출로 수요의 45% 충족

• 공공분야(사회공헌형)의 노인 일자리사업 내실화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를 현 시대 노인특성을 반영하여 일정수준까지 확대

(’09년 10만 8천개, ’12년 20만개 보급)

– 일자리 유형별 사업목표 및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일자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보급

- 단순노무 형태의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하고, 생산성이 높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노·노케어(老·老 Care), 아동안전보호, 결혼이민자 교육 등 시대 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중심으로 창출

구 분	'06	'07	'08	'09	'10
공익형(%)	55	45	40 이내	탄력운영	탄력운영
교육·복지형(%)	30	40	45 이상	탄력운영	탄력운영

• 노인일자리 5가지 유형(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중 차지하는 비율임

- 민간분야에서 노인에게 유리한 전략직종을 개발, 모델화하여 보급
 - '08년부터 매년 2만개씩 민간분야 일자리를 창출하여 '10년 6만개, '12년 10만개 창출(누계)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 등 공공영역에 노인인력 활용
 - *공단시설 관리, 전기·가스 검침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등
 - 노인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틈새시장에 노인인력 파견
 - *주유원, 아파트 택배, 신용카드 배송, 중소기업 Work-sharing 등
 - 구매력 있는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전용매장 등 시범사업 추진
 - *실버매장, 실버카페, 식품제조·판매 등 초기투자비를 지원, 사업성 평가후 확대

☞ 사업수행기관 인프라 확충

- 지자체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보강
 - 시·군·구에 일자리사업 관리, 일자리 개발, 수행기관간 연계·관리 등을 담당할 인력 배치 추진
(전담인력 보강 : '08년 120명당 1명 → '12년 100명당 1명)
- 시장형 일자리 사업기관인 시니어클럽 확대
 - 시장형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 시니어클럽을 확대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 전문기관으로 기능 강화 (시니어클럽 : '07년 현재 54개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능 강화 및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사업본부 설치 ('12년까지 최소 5개 지역본부 설치)
- 비즈니스스쿨 및 전경련 경영자문단 구성·운영 등 경영 지원 강화
- 노인생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점 개설 등 홍보 및 마케팅 기능 강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분류 ('08년 기준)

유 형		정 의	일 자 리 예 시	지원내용
공공 분야	공익형 (40%)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거리·자연 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공공시설관리사업, 도서관사서도우미 등	• 임금 월 20만원, 7개월 • 부대비용 연간 1인당 10만원
	교육형 (10%)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 임금 월 20만원, 7개월 • 부대비용 연간 1인당 15만원
	복지형 (35%)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노(老)-노(老)케어, 노인주거개선,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 임금 월 20만원, 7개월 • 부대비용 연간 1인당 15만원
민간 분야	시장Ⅰ형 (10%)	사업을 연간 계속 운영하면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	지하철택배, 세탁방, 밀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 등	연간 1인당 115만원 (사업비, 임금으로 사용)
	시장Ⅱ형	사업초기 투자비의 일정 기간 지원이후 사업단 자체수익만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립이 예상되는 일자리	노인전용매장 (실버카페, 휴게소) 떡 등 식품제조 판매업 등	총지원액:17억5천만 1개사업단 1억까지. 신규사업 (인건비,사업비) 기존사업 (시설투자비)
	인력 파견형 (5%)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수료 후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등 인력풀운영방식의 사업과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맞춤형 파견사업	연중 부대경비 1인 10만원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가. 현 황

- 노인인구 중 과거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이 10.7%, 현재 자원봉사 참여 노인은 4%로 선진국(미국 25%, 호주 17%)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수준
 - *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7년부터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통해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봉사 체험을 제공
 - 대구에서 열린 제2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08.5)에는 약 1600여명이 참여하여 노인 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교류 실시
- 공모를 통해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
 - 아동 서예지도, 검정고시반 운영, 도서관 봉사활동, 아동 경제교육, 생활민원 대행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
- 향후 노인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개발, 노인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봉사활동 지도자 육성 등이 필요

나. 추진계획

☞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보급

-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매뉴얼 배포를 통한 홍보
 - '12년까지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180개 개발·지원 목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

- 노인 자원봉사 전담 인력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노인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추진
-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마련, 안내지 보급 등 노인 자원봉사 홍보 강화
- 전국적인 노인 자원봉사단을 조직화하여 아동·청소년 지킴이 활동 등 노인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2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가. 현 황

-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종교단체(47.9%)와 사교단체(35.5%)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활동(0.9%)과 운동단체(3.9%)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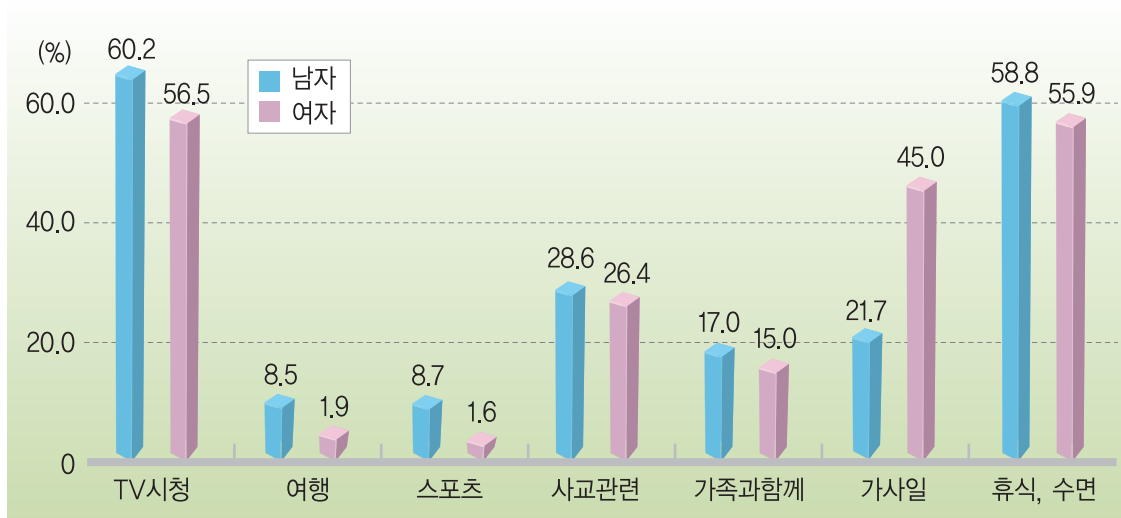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 분	종교단체	사교단체	문화활동	운동단체	정치단체	대상자수
전 체	47.9	35.5	0.9	3.9	2.1	3,029
남	32.3	50.5	1.7	7.9	4.4	1,171
여	57.7	26.1	0.4	1.3	0.5	1,858
65-69세	47.1	52.8	1.2	5.8	2.9	1,215
70-74세	49.1	32.9	0.9	3.8	1.9	902
75세 이상	47.8	15.1	0.7	1.4	1.1	91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2005

-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은 매우 소극적이며 활동성이 낮음
 - TV시청, 휴식 및 수면 비율이 높고 자기계발은 부족
 - 다양한 노인세대 수요(Needs)를 고려한 여가문화프로그램 미흡

주말 및 휴일의 여가활용방법('04)



• 자료 : 통계청, 「2005 고령자 통계」, 2005

-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운동공간 확충,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들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나. 추진계획

🌱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 학교, 공공기관 등 체육관련 인프라 현황파악 및 개방 확대 등 활용도 제고
- 주거지역 인근에 운동 공간 확충
 - 생활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자전거도로 및 등산로 등 다양한 운동시설 정비·보급

전국 시·도별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공공 체육시설	민간 체육 시설업 합계	민간 등록 체육시설업	민간 신고 체육시설업
10,949	44,774	454	44,32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전국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2007

❖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바우처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료 지원
- 한방의료센터, 온천 및 휴양림 등 고령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 조성
- 고령친화형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 재활치료게임 등 기능성 게임, 에듀테인먼트 개발 지원 등 노인친화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개발 지원
 - 3세대 가족 e-스포츠대회 및 가족 게임캠프 개최 등 세대통합형 참여 프로그램 확충

❖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 만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민간 고령층정보화교육기관 및 어르신IT봉사단을 활용한 정보화교육 실시
- ‘어르신정보화제전’을 개최하고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해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사회적 참여 유도

❖ 노인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

- 지방문화원 등을 활용하여 실버문화 노인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노인역량강화 및 고용대비 강좌 신설
 - 향토 역사문화 해설가 등 다양한 자원봉사분야를 개발하고 재취업 기회 제공
-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노인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종사 인력 교육훈련시 노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반영

3-3 노후생활설계 기반 조성

1 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

가. 현 황

- 50대 조기 은퇴와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고령층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과 불안감이 증가
 - 건강, 여가·취미, 재취업, 자원봉사 참여 등 은퇴 후의 보람된 생활에 대한 다양한 욕구 증가
- 중년 이후의 인생설계 및 적응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부족
 -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후 건강, 여가, 일자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비체계적·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
 - 최근 국민연금공단, 민간의 생명보험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노후 생활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재무설계 분야에 한정되며 체계성이 부족
 -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산만하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관리할 필요

• 영국의 Life Academy

민간조직으로서 정부 지원 하에 퇴직준비교육을 제공하다가 점차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애 설계(life-planning)로 초점을 넓혀 교육 및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 프랑스의 Point Paris Emeraude(PPE)

파리시내 각 행정구역에 15개의 PPE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통과한 코디네이터들을 두어 노인에게 노년기에 관한 정보 제공, 의료·복지기관 등 필요한 서비스 기관 소개, 생애설계 상담의 역할 수행

나. 추진 계획

🌱 노후생활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 선진 외국의 제3기 인생 교육시스템 특징조사 및 장단점 파악
-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3기 인생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 일반인 대상의 노후생활 설계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교과과정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
-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재 발간·보급
- 노후생활설계 전문강사 등의 자격화 방안 검토 등 전문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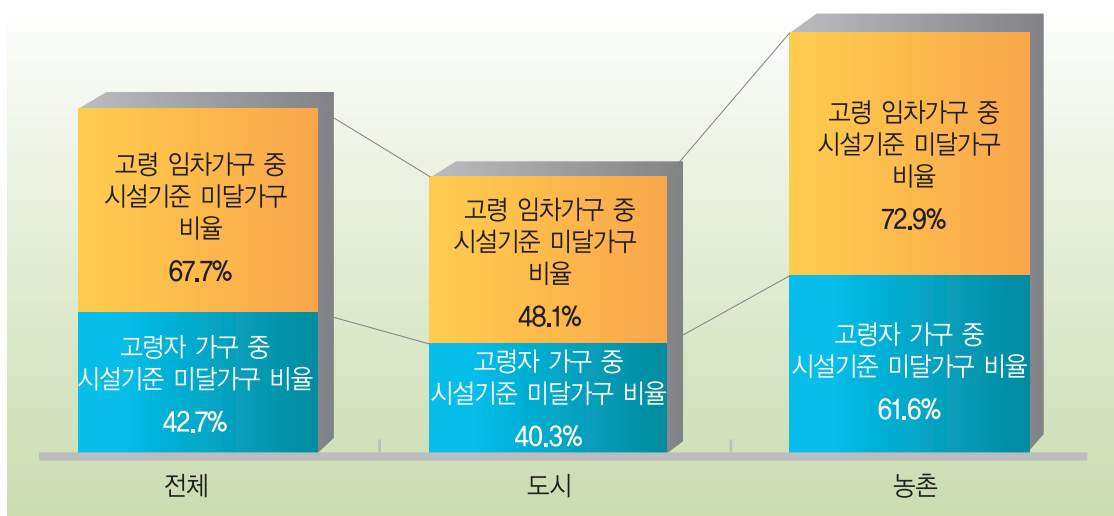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가. 현 황

- 고령자가구(65세 이상 부부 또는 독신)의 50%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해당하며,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주거기준이 미흡
- 도시보다 농촌, 자가가구보다 임차가구의 주거수준이 더욱 열악한 상태
- * 최저주거기준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 기준으로 '04년에 법제화되었으며 시설기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을 포함



• 자료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방안」, 2004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택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경험한 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
 - 농촌고령자의 32.3%, 도시고령자의 20.0%가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 경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2006)
 - 고령자의 주택 내 사고는 골절에 그치지 않고 뇌진탕 등 대형사고의 경우가 많아 가계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적자요인으로 작용
- 고령자가구의 안전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부족
 - 고령자가구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주택개조기준’을 마련(’05.12)하고, 활용을 위해 노인용과 전문가용 매뉴얼 제작·보급(’07.8)
 - 고령자는 주택개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개조에 소극적이며, 개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담 및 안내 서비스 제공 체계는 부재
 - 일본의 경우에는 주택개조 항목과 지원체계를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지원 중

일본의 주택개조 지원체계

근거법	노인개호보험법	고령자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 (담당부처)	2000년 (후생노동성)	2001년 (국토교통성)
지원	주택개조비 지원 : 상한액 20만엔 * 개조비용의 10%는 개인부담	리폼론(Reform Loan) : 상한액 500만엔 * 고령자 사망시 주택매각, 상속자 재산으로 일괄상환
개조기준 항목	손잡이 설치, 바닥 단차 제거, 바닥재 교체, 미닫이문 설치	바닥 단차 제거, 복도 폭 78cm이상, 거실 출입구의 폭 75cm이상 등

나. 추진계획

🌱 「고령자 주거안정법(가칭)」 제정

- 고령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
- 법안 제정을 통해 매년 전국 및 시·도 단위의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의 장기적 추진체계 마련

- 고령자의 주거 질 확보를 위하여 주택의 쾌적성, 안전성 및 편의성 등에 대한 고령자용 최저주거기준과 최소한 구비해야 할 편의설비를 최소안전기준으로 설정
 - 이미 마련된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 및 '일반가구 최저주거기준'을 토대로 고령자 가구 특성에 맞는 '최소 주거공간 규모' 및 '최소 안전기준' 등을 마련

고령자가구의 최소주거공간규모(안)

가구원수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면적(m ²)
1인(고령자)	고령자 1인 가구	방1개, 부엌	18-25 (5.5-7.6평)
6인(고령자포함)	고령자부모+부부+자녀2	방4개, 부엌 + 18m ²	67(20.3평)

고령자가구의 최소안전기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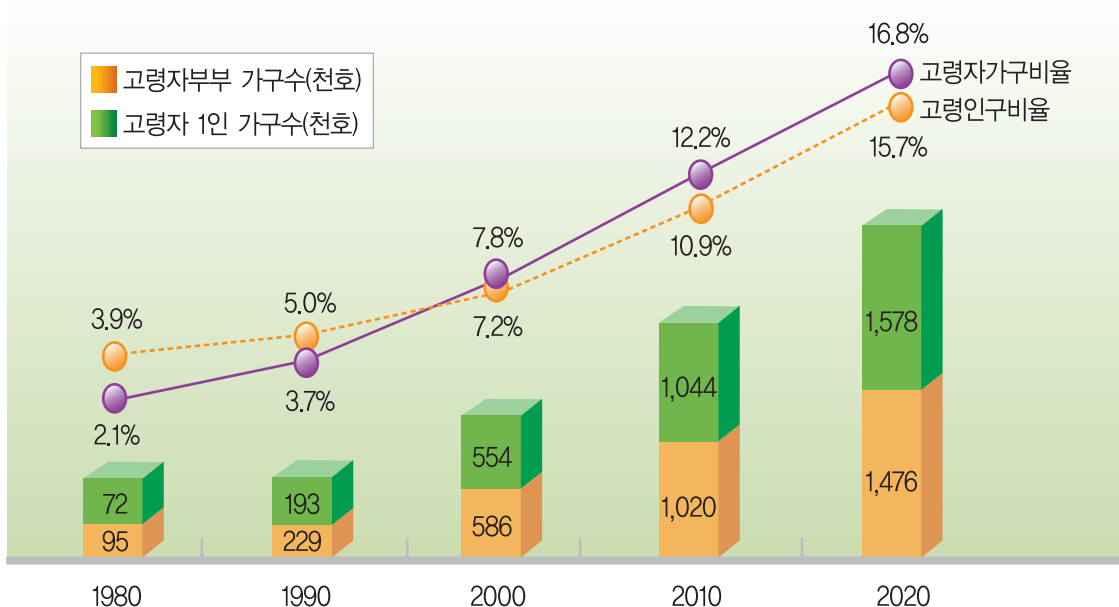
안전성 확보	단차 제거	출입구 · 문턱 등 바닥의 단차 제거
	바닥 미끄럼 방지	현관 · 욕실 · 거실 등 바닥재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 욕실 ·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독립성 지원	출입구 폭 확보	현관 · 방 · 화장실 등의 폭은 80cm 이상 수준
	설비개조(욕실, 화장실, 부엌)	양변기 설치, 싱크대 설치 등

- 자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 고령자 주택개조비용을 융자 지원
 - 고령자인 세대주, 고령자를 세대원으로 하는 세대의 세대주, 고령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융자 지원
 - 주택개조관련 업체현황,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고령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홍보를 강화
-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고령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
 -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고령자 주택개조 대상 주택 확인 및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가. 현 황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고령자가구는 '05년 159만가구(전체가구의 10.1%), '10년 206만가구(12.2%)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이중 주거문제가 심각한 고령자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전체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비율 : '90)1.7% → '00)3.8% → '10)6.2%



- 고령자용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부족
 - 고소득층을 위한 유료 주거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무료·실비 주거복지시설 위주로 공급
 - 저소득 및 중산층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 및 주거복지시설 부족

나. 추진계획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적정공급량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
 -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공급(사업승인 기준) : ('05)828호 → ('06)575호 → ('07)1,240호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건강 및 복지관련 시설을 연계 운영

3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가. 현 황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는 증가하나 노인을 배려한 교통안전대책의 미흡으로 노인교통 사고 급증
 - 노인(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86명('07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
 -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 증가추세 :
'03) 23.7% → '04) 26.4% → '05) 26.7% → '06) 27.2% → '07) 29.0%
- 인구고령화에 비례하여 고령 운전면허소지자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 297천명('00) → 950천명('07)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266명('00) → 512명('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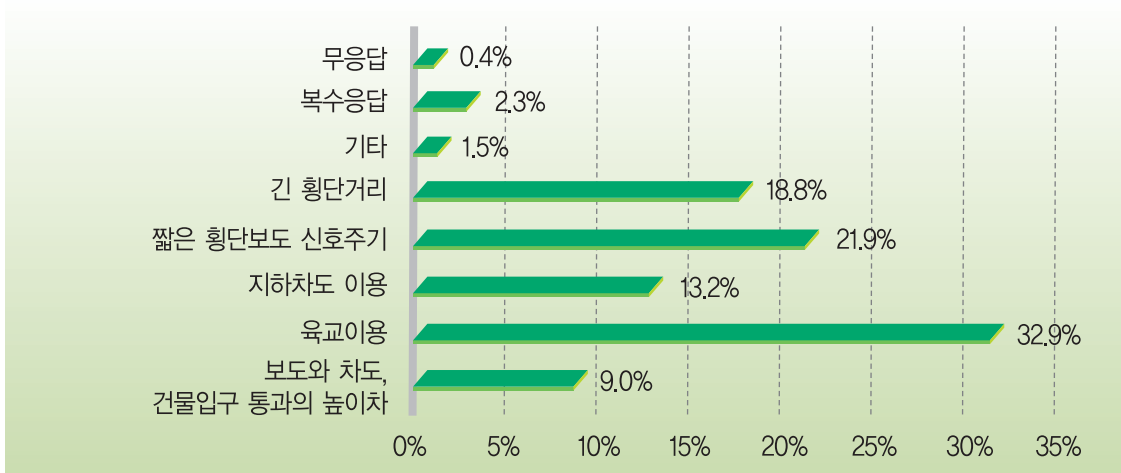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구 분	한국	영국	스웨덴
사망자*	43	6.9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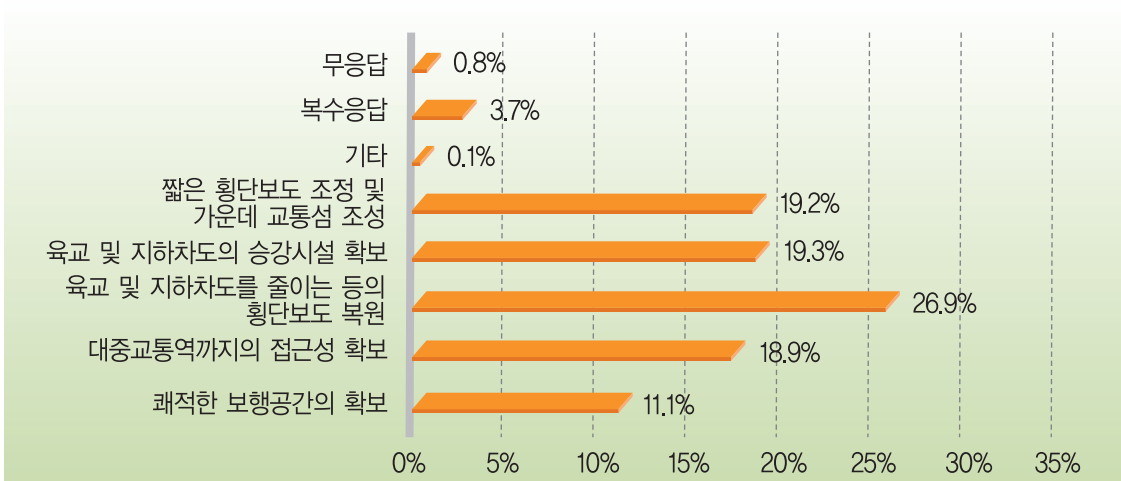
• 자료 : OECD, 「국제도로교통사고통계」, 2005
 • 사망자 : 사망자수(명)/10만명당

- 65세 이상 노인의 68.9%가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 외출시 불편 사항에 대한 응답 ('04,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 계단 오르내리기(37.5%), 버스타고 내리기(13.8%), 짧은 횡단보도 신호(4.3%), 고르지 못한 인도(2.4%)
- 노인 보행자의 31.7%가 도로 보행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육교, 짧은 신호주기 등 고령자가 불편을 겪는 보행환경 개선 필요

불편한 보행환경 설문조사 결과



보행환경 개선사항 설문조사 결과



•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고령사회대응 서울시 교통정책 기초연구보고서」, 2005

- 지하철 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공공건물이나 주거시설의 보행 장애물 제거 등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환경 개선 필요

나. 추진계획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지속 설치 : '08년까지 100%달성
-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 및 보급 확대 : '11년까지 9,130대 (전국 시내버스의 31%)
보급 목표 ('07년 말 현재 890대로 전국 시내버스의 2.9%)
-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 장애인 · 고령자를 위한 콜택시 및 셔틀버스 도입 확대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교통사고 위험이 높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행우선구역 확대
 - 상업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보도설치, 속도제한, 보행시설물 확충 등
 - * '07년 서울 영등포구 등 9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 중
 - * '08년 6개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 노인복지시설 주변 및 노인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실버 존) 도입
 - * '07.11월 33개소 시범운영, '08.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8월 말 현재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80개소
 - 속도제한(30km) 및 과속방지턱 설치
 -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1m/1초 → 0.8m/1초)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에 우선 실시 후 점차 확대
- 육교설치 억제 등 횡단보도 복원 확대
 - 고령친화적 교통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횡단보도 복원 등 추진

❧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 기반 마련

-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여 적성검사시 안전교육 이수 추진
 - 5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능력 측정, 위험 고령운전자에 대한 무료 교통안전교육 실시

❧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 노인교통안전봉사단 운영 : 시군구별 1개 봉사단 운영
-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보행지원,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실버마크(silver mark) 제도를 도입
 - 실버마크 부착 노인운전자 보호 캠페인 전개 등 실버마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가. 현 황

- 농어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나 현행 노인복지서비스는 지역의 고령화 정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
 - '07년 234개 시군구 중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59개 시군구는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진입

농촌·도시 노인인구 현황 ('05년 12월 기준)

(단위:천명, %)

구 분	전 국	농 촌	도 시
총인구	47,041	8,704	38,337
65세이상	4,365(9.3)	1,618(18.6)	2,747(7.2)

-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결과, 2006
- 주) : 외국인(238천명)을 제외한 인구수임.

- 고령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농어촌 거주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 필요
 - 농어촌지역의 복지만족도는 14.8%,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9.6%에 불과(농림부, 「농산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 2004)
 - 취약농가 복지서비스, 농어촌 지역 고령 중증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시설 부족
 - * 농어촌 지역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23.3%, 주간보호시설의 5.1%, 단기보호시설의 7.6%만 소재
- 농어촌 고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가 부족하고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여건 미흡

나. 추진계획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모델 개발

- 고령화 정도,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및 지역별 역량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노인 복지 정책 모델 개발 추진

❧ 고령·취약농가를 위한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지속 추진

- 농어촌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고령·취약농가를 방문하여 빨래, 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는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 건강한 노인이 지역내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老老)케어 시스템 구축

❧ 지역자원, 마을의 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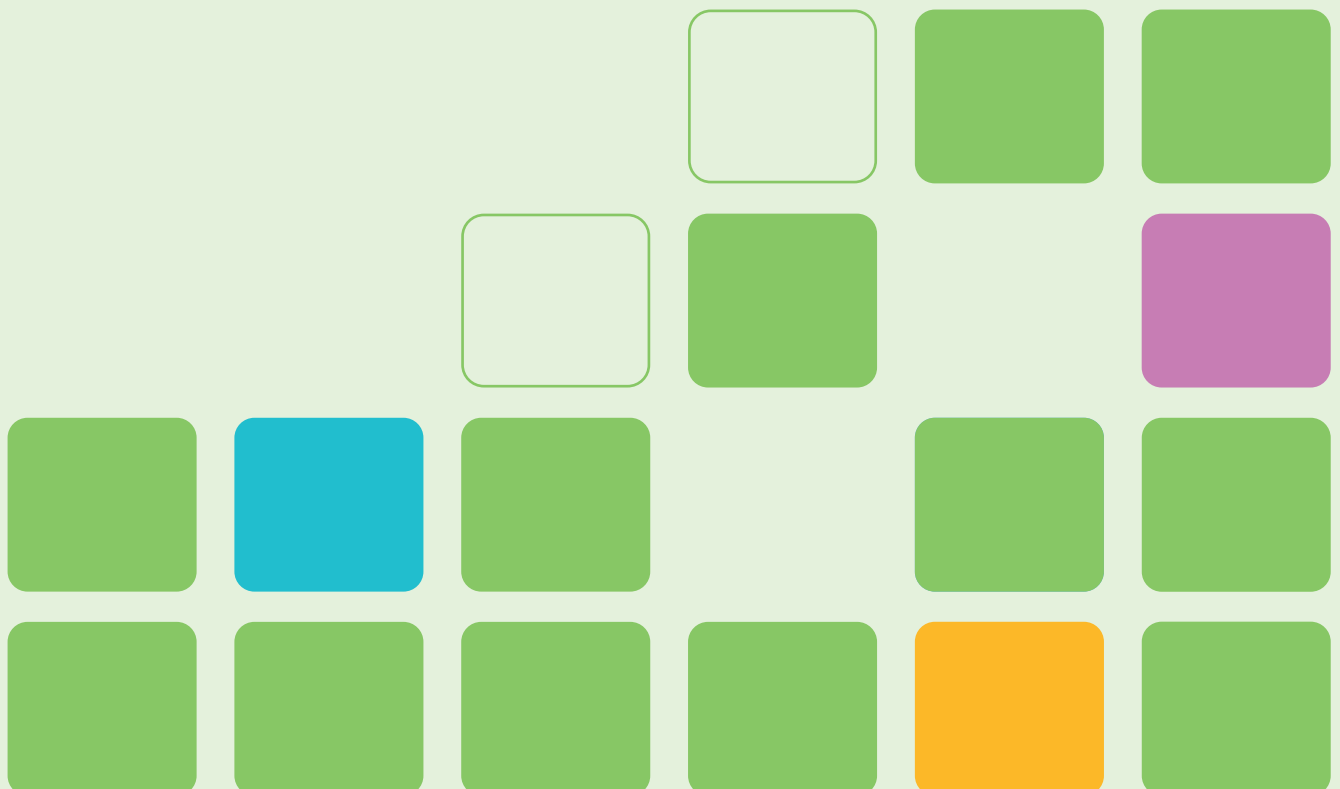
- 노인의 전통기술 활용을 통한 소득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 공동경작·전통식품 가공 등 농촌 노인의 실버농업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 노인도우미,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 활동사, 전통놀이 지도사, 귀농 후견인 등 농촌 노인들의 경험과 기술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III

저출산 · 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새로마지 플랜 2010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국가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

-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산업인력의 고령화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 뿐 아니라, 산업구조 개편, 재정·금융여건 변화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 초래 예상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산업구조는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
- 고령사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 시급
 -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기반 취약 등 여건 미비로 초보적인 단계

❖ 동시에 경제·사회구조의 선진화,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도 내재

-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과 고령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 가능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상태에 있어 여성고급인력의 활용을 통한 성장여력 확충 가능
 - 학력 및 직무숙련도가 높고 경제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인구는 새로운 노동력으로서의 역할 기대

- 산업 측면에서도 고령친화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나, 대내외적으로 동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은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성장잠재력도 충분
 - 노인의 소득원이 되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의 확대,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 증가추세 등으로 고령자의 구매 잠재력 증대
- 특히, 베이비붐세대('55~'63년생)는 기존 노년층과 차별화된 소비 양태를 보이며 노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첫 세대로서 최대 단일 소비 주도층 으로 부상할 전망
 - 우리는 세계 최고의 IT 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산업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확보
- 국내 유통중인 고기능의 고령친화제품은 대부분 외국제품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
 - 우리와 문화·신체특성 등 여건이 비슷한 거대 시장인 중국이 지리적 으로 인접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도 유망
 - * '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60세이상 노인이 '05년도에 1억4천5백만명 (총인구의 11%)에서 '25년 2억8천만명(총인구의 18.4%)으로 증가할 전망
 - 그러나, 내수기반 취약 등 여건 미비로 발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수요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
 - * '02년 현재, 고령친화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6조4천억원이며, 요양 분야를 제외할 경우 모태산업 시장규모 대비 1% 미만으로 내수 기반이 상당히 열악

기본 방향

▶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용 및 산업구조를 고령사회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

- 미래사회 노동력 규모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직업능력개발, 평생학습 등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현장의 사고예방 등을 통한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여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제시와 동기부여로 민간기업의 시장진입과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강화
- 고령사회에 적합한 금융기반 조성을 통해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수요에 대응

①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시행,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실시, 맞춤형 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지원,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제공 등을 통해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전문·기술 외국인력과 외국적동포를 적극 유치·활용하고,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통일을 고려한 인구 및 인력 규모 추계 등 관련 연구 지속 추진

②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근로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 매년 약 80,0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61,574천일, '04년)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1,199천일, '04년) 보다 약 50배 정도 높은 수준

③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노인의 생활 편익 및 안전 증진을 도모

- 내수기반 취약으로 기업이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06.12) 및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07.6)
 - 우수제품 품질표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양질의 고령친화제품과 서비스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와 건전한 산업 발전 유도
 -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을 설립하여 취약한 국내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홍보의 거점으로 활용
 - *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체험관 설립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

- 시장의 수요를 감안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역량 강화
 -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지속 확대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
- 객관적 표준에 의거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노인의 신체·기능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고령자 표준규격을 대폭 확대
 -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는 고령자 배려 규격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표준(KS)에 반영
-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수요를 감안하여 광범위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략과제를 발굴·육성

고령친화산업의 분류

분 야	주요 업종
일상생활	고령친화용품·기기,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
금융·보험	역모기지, 자산관리, 보험, 컨설팅 등
주 택	노인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주택개조, 노인국민 임대주택 등
요 양	요양시설 및 서비스(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지원 등)
의 료	의약품(한방 포함) 및 의료(진단) 기기
여 가	휴양, 취미·여행·오락, 체육 등
기 타	교통, 의류, 장례, 교육 등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노후 금융소득 보장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적보증,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책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기반 조성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고령친화산업 육성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합 노동력 손실방지	●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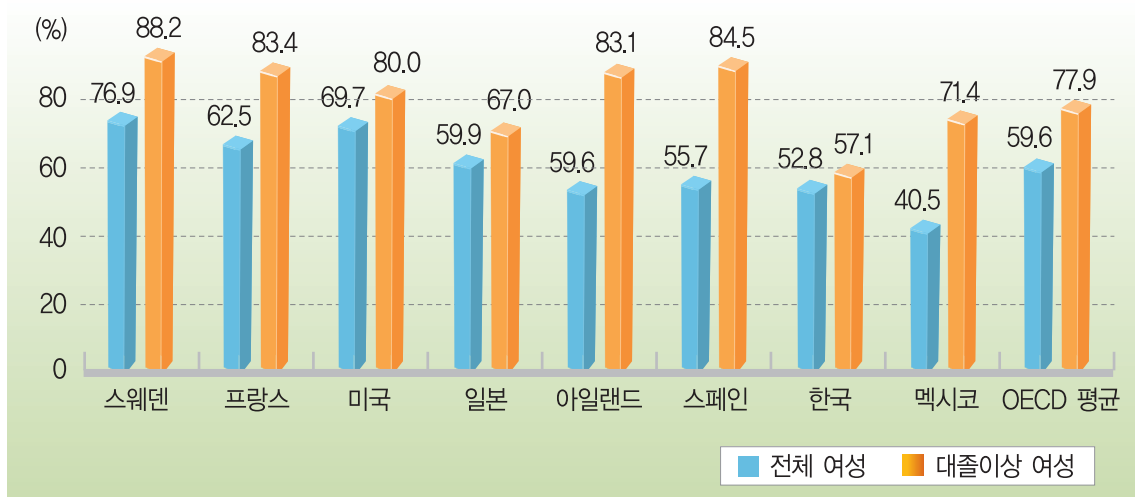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가. 현 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8%로 OECD 평균 60.8 보다 6.0%p 낮은 수준('07)
-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2005년 기준)로 OECD 평균 82.3보다 22.1% 낮음

OECD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03년)



• 자료 : OECD

- 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은 13.1%로 매우 저조(과기부, 2007)
- * 해외 과학기술분야 여성연구원 비율 : 프랑스 27.8%, 이탈리아 29.3%, 스페인 36.3%, 유럽연합 29% (2006 OECD 주요과학기술지표)

- 5급 이상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02년 5.5% → '07년 10.0%)
-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 제출의무 부과('06년)

나. 추진계획

♣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실시

- 공기업 및 대기업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현황 및 고용평등계획서 제출의무를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주요절차



참고 : 외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례

-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조달기업에 대하여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AAP : Affirmative Action Program)'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정부조달계약을 배제·중지하는「계약준수제」시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 미국 46.4%('67) → 69.2%('04)
 - 캐나다 63.8%('86) → 73.5%('04)
 - 호주 56.7%('86) → 66.3%('04)

• 자료 : 노동연구원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확대

-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99개소)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을 '10년까지 25%, 최종 30% 채용
- 중소기업 고급인력 지원 사업의 기관평가시 여성고용기업 우대 (5점 가산)

중소기업 고급인력 지원사업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자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서 연구인력으로 고용시 인건비 지원(기준연봉의 70%)

🌱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30%) 지속 추진 ('08년~'12년)
- 4급 이상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07년 6.2% → '11년 10.0%)

🌱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임용 확대 : '07년 11.4% → '10년 13%
 - * 사립대학을 포함한 여성 교수 임용 목표치 : '07년 17.3% → '10년 20%
-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 '07년 14.1% → '10년 20%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가. 현 황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역량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나,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 투자 미흡
 - 재직자훈련의 여성 참여율은 26%에 불과하며, 유급휴가훈련의 여성 참여율은 7%에 불과

재직자훈련의 여성근로자 참여 비율('07년)

구 분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총인원	3,576,357명	7,133명
여성인원 및 비율	910,333명 (25.5%)	741명 (7.0%)

• 자료 : 노동부

- 공공훈련의 경우 남성위주의 훈련직종(기계, 장비, 금속, 건축 등), 장기과정(6개월 이상), 종일 훈련(1일 7~8시간) · 집체훈련 방식, 여성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여성의 훈련참여 곤란

나. 추진계획

☞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 여성선호직종(귀금속 공예, 보석가공, 컴퓨터산업디자인 등)과 여성참여확대직종(용접, 보일러, 중장비 운전, 도배 등) 및 사회서비스 부문(케어복지사, 장애아 통합교사 등)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 e-Learning을 통한 온라인 훈련을 확대하고, 반일훈련(1일 3~4시간), 야간훈련, 주말훈련 등 유연한 훈련방식 도입
- 화장실, 휴게실 등 여성편의시설 확충

☞ 여성 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훈련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학력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 신직업 분야에 적합한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 지원
-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초기부터 직업의식 배양, 목표설정,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까지의 체계적인 경력 개발 지원
- 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회계, 마케팅, 정보화 분야 등 중소기업 취업유망분야에 대한 전문 직업교육 실시
-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보건복지, 보육, 문화 분야 등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 연계
-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 · 고급 IT 등 전문직종 분야와 남성집중직종 분야에 대한 전문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취업 연계

☞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 출산 ·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종합취업지원기관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 · 활용(2012년까지 100개소 지정 · 운영 계획)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지원센터 확대 · 설치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08.6.5)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실태조사(매 3년), 유망직종 선정 · 지원 등 추진

☘ 여성 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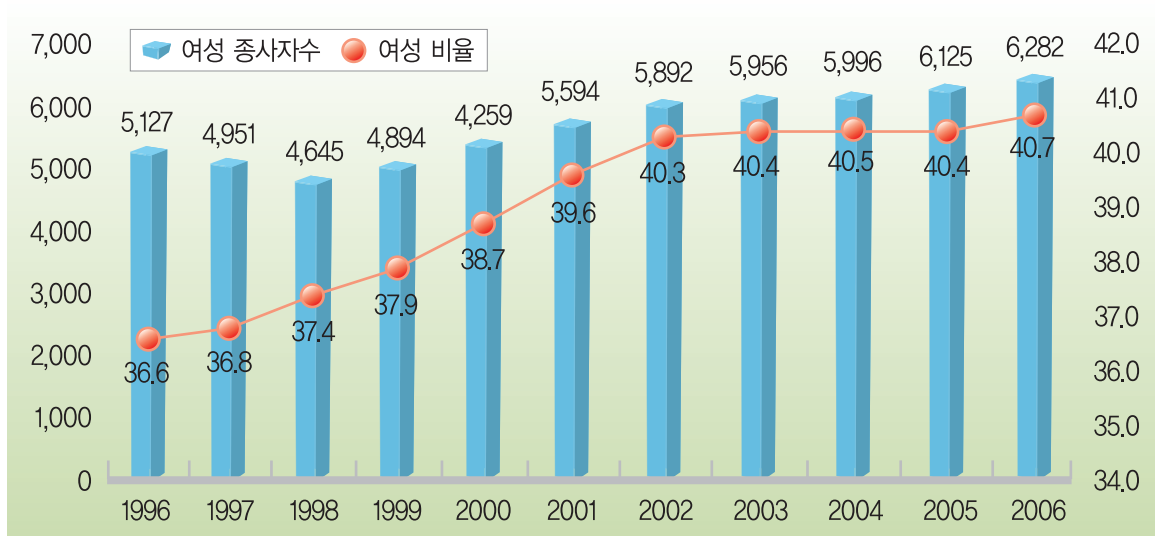
- 여성의 자격취득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여성 진출이 용이한 분야의 자격 개발 및 신설 추진
 - 여성 진출유망 산업분야의 직업능력표준을 개발 추진하고, 민간운영자격은 자격정보 제공, 국가운영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신설·운영

3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가. 현 황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국제적 과제라는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여성고용은 2002년 40.3%에서 2006년 40.7%로 답보상태

사업체 여성 종사자 수 및 여성비율 추이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여성고용에 대한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내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 및 질적 활용도 수준은 여전히 저조
 - 남성 중심적 조직관행과 제도적 환경, 전통적 HR 관행 개선은 미흡

나. 추진계획

☞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모델 개발 및 여성리더 양성

- 남녀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및 기업규모별 여성친화지수(WFI) 및 평가모형 개발
- 여성친화지수(WFI)에 의거 여성친화정도 측정
 - 직원 300인 이상인 기업, 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규모 및 직종분야별로 구분 실시
-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여성리더 네트워크 구축 (’09)
- 기업 내 과장급 이상 여성리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
- 여성관리자의 인력개발, 기업 내 근로여건 및 관리직 진출에 관행이나 장애요인 등 분석을 위한 여성인력 패널조사 실시

☞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 여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여성친화환경 조성 독려
- 국내외 여성친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기업체 및 취업지원기관 등에 배부
- 기업체임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조성의 효용성」에 대한 교육 실시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시스템 구축

1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가. 현 황

- IMF 경제위기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 기업이 근로자의 능력·성과보다는 연령을 중심으로 중고령자를 우선 감원
 - * 정리해고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는 전체의 약 52%, 근속연수를 고려한 사업체는 46%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 대다수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55~57세 사이에 정년을 규정

기업 업종·규모별 정년제 비교

(단위 : %)

	업 종		규 모					전 체
	비제조업	제조업	50인 이하	51~150인	151~300인	301인 이상	규모 미확인	
정년제도 있음	73.9	78.8	50.2	70.0	88.1	96.4	75.8	76.2
직종/직급별 정년	24.9	11.7	13.4	15.4	17.3	21.4	30.1	18.5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실태조사」, 2002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57세 미만에서 정년제되어 있는 상태

* 평균정년 $\frac{'00}{(300인 이상 사업장) : 57.2세} \rightarrow \frac{'01}{56.6세} \rightarrow \frac{'02}{56.7세} \rightarrow \frac{'03}{56.8세} \rightarrow \frac{'04}{56.8세} \rightarrow \frac{'05}{56.9세} \rightarrow \frac{'06}{56.9세}$

-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기피 하는 경향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8년)
 - 모집·채용부터 퇴직·해고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규정
- ‘정년연장 장려금제도’ 도입('08년)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1/2 기간동안 지원

나. 추진계획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 연공위주의 노동시장 관행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연령차별금지를 모집·채용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퇴직 및 해고분야까지 단계적으로 확산

☞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 사업장의 연령차별 해소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 정부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 정년제도 개선

- '10년까지 임금피크제 및 컨설팅비용 지원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확대, 정년 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10년에 정년의무화 도입 검토

외국의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제도

- 연령차별금지제만 실시 : 미국
- 연령차별금지제와 정년제를 동시 실시 :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 의무 정년제만 실시 : 일본

2 임금피크제 지원 등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가. 현 황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연공급적 임금체계 위주로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고 퇴직금도 비례하여 증가
 - 생산성 대비 임금이 높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06년부터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제도' 도입·실시
 - 07년 160개 사업장의 근로자 584명에 대하여 1,538백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이 10%이상 삭감된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

나. 추진계획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한시제도('06~'08)였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여 지속 지원
 - * 개정된「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09~)
-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수당지급요건 완화('09년 관련법령 개정 검토)
 - *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보전수당 제공

🌱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파트타임, 일자리 나누기, 전문계약직 재고용 등 고령근로자 근로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
 -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에 대해서도 보전수당을 지급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완료, '08.9.22부터 시행)

3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가. 현 황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장려금의 경우 지원수준이 낮고, 장려금 수급 후 일정기간 고령자 해고금지 부담으로 기업의 활용 저조
 - * 고령자다수고용,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하여 분기별 18~30만원 지원,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 1년간 지원
- 상시화된 구조조정 등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나,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추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지원사업장(개소)	6	79	79	31	28	38	21
지원인원(명)	679	7,408	2,917	2,696	1,440	1,845	1,875
지원금액(백만원)	43	432	641	1,428	1,514	1,522	1,441

• 자료 : 노동부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지원기준율을 업종별로 보완('08년)
 - * 사업지원서비스: 17%→24%, 기타업종: 7% → 4~24%

나. 추진계획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현행 50~64세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 요건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 후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
 - 중소기업·지식기반 서비스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수준 확대
 - 중소기업의 경우 전직지원 프로그램 소요비용의 3/4에서 전액지원으로 확대, 대기업은 2/3에서 3/4로 확대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 예정자인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정금액을 12개월 까지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산업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제공 확대

- 고령자 DB 확보 및 채용설명회 개최

🌱고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

- 산업체 퇴직연구인력 등 고급 연구인력의 고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
 - 비수도권 소재 중소 벤처기업 대상, 3년간 총 4,800만원/1인당(기업당 2인이내)

❧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합동으로 전국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 고용지원센터의 구인·구직 풀(pool), 노동시장 정보 등 제공
- 고령자 인재은행을 훈련-고용-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종합지원 센터’로 기능 하도록 확대 개편 (’09~)
- 고령자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고령자 워크넷과 지자체, 민간단체의 일자리 DB 연계구축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가. 현 황

- 고령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숙련·저학력으로 노동력의 질이 낮은 수준이나 학력 및 노동력의 질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 * 우리나라 50-64세 고령근로자의 65%가 고졸미만(OECD, 2004)
- 기업에서는 신기술적응력 부족, 작업능력 저하, 약한 신체적 기능,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을 고령자 고용 기피요인으로 지적

중고령자 고용 기피요인(상위 5개)

(단위 :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17.1	23.6	19.2
작업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진다	19.7	17.6	12.3
체력문제로 힘든 작업이 곤란하다	18.0	14.6	9.6
보임, 배치, 처우가 힘들다	14.0	11.2	9.7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다	12.9	8.7	13.7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 2005

- 중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기관 및 훈련프로그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고령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가도 매우 저조
 - 우리나라 50-64세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 한국 9.6%, 덴마크 44.5%, 노르웨이 40.0%, 미국 39.9% (OECD,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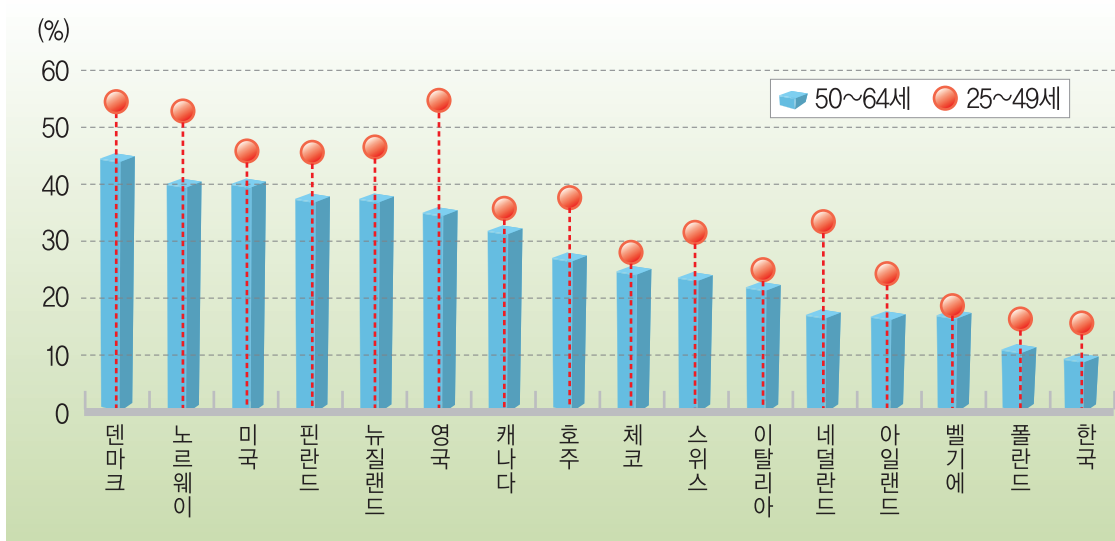
- 훈련기관 평가시 중고령자반 설치 · 운영기관에 대해서 5%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07년)

연령별 직업훈련참여 비율('07)

(단위 : %)

	전 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재직자 훈련	100	27	41	24	8
실업자 훈련	100	45	33	14	8

OECD 국가의 연령별 근로자직업훈련 빈도('04년)



• 자료 :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4

나. 추진계획

♥ 중 · 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 직업훈련기관에서 중고령자반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훈련과정 우선 승인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 준 · 고령자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이들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가. 현 황

- 고령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저하로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발생빈도가 높으며 산업재해자수는 '05년 이후 증가 추세

연도별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수 (55세 이상)

연 도	'03	'04	'05	'06	'07
인원(천명)	18,030	17,351	16,542	18,077	19,133

• 자료 : 노동부

- 고령자의 신체 및 기능상 장애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 미흡

나. 추진계획

🌱 고령근로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고령자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시설 ·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정개선, 물리적 환경개선 등 융자지원

🌱 고령근로자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 보급

- 고령근로자의 심신기능 변화, 안전보건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업종별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 보급

1-3 외국적 동포 · 외국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1 외국적 동포의 인력활용

가. 현 황

- 외국적동포의 국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H-2) 도입('07년)
 - *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은 외국적동포는 현행 고용특례보다 일부 확대된 업종에서 취업 가능(20개→32개 업종으로 확대)
 - (“방문취업제(H-2) 신설을 통한 외국적동포의 국내 취업기회 확대” 추진완료)
- 재외동포(F-4)자격 복수사증 발급('07)

• 방문취업제(H-2)

- 재외동포(F-4)자격 부여 전 단계로서 25세 이상의 동포에 대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 취업할 수 있게 함(5년 유효하고 1회 최장 3년 체류)

• 재외동포사증(F-4)

-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단순노동행위 및 사행행위를 제외한 업종에 자유로이 취업 가능

나. 추진계획

🌱 외국적 동포 취업 절차 개선

- 방문취업제 정착을 위한 개선책 마련 추진
 - 취업신고 등 체류절차 간소화, 취업허용 업종 조정 등

🌱 외국적 동포의 체류 지원

- 복수사증 발급 확대, 청년층 동포에게 취업과 연계한 유학기회 제공, ‘외국적동포 체류지원 센터’ 지정 등 외국적 동포의 체류 및 생활 지원

❖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 내국인 근로자와 조화로운 동포인력 활용을 위하여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 · 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설정하고 취업신고를 강화
 - * 특히, 건설업은 내국인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취업요건과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검토

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가. 현 황

- 전문 · 기술인력 등 우수 외국인력에게 복수사증(Gold카드, IT카드, Science카드)을 발급하여 입국과 체류상 편의 제공
 - * 관계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인력(Gold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 고급 과학기술인력(Science카드)에게 발급

체류자격별 전문외국인력 등록현황('07년)

체류자격	교 수	회화지도	연 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직업
등록외국인 (명)	1,269	17,197	2,278	163	411	612	6,785

• 자료 : 법무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유학생 증가추이 : $\frac{'01}{11,646명} \rightarrow \frac{'03}{12,314명} \rightarrow \frac{'05}{22,526명} \rightarrow \frac{'07}{49,270명} \rightarrow \frac{'08}{63,952명}$

나. 추진계획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 국제연구인력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자, 원천기술 보유자 등에 대한 유치 활동 강화

☞ 정부 초청 장학생 등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유학생 유치 여건 개선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트)」추진을 통해 '12년까지 체류 유학생수 10만명 목표

☞ 사증 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 제공

- 전문인력의 국내취업업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직종별 취업기준 및 신청서류를 구체화한 취업사증 발급 지침 마련
- 전문인력과 외국유학생의 체류 편의를 위해 영주권 및 국적 취득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가. 현 황

- '07년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개선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으나, 출입국지원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미비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생활 중 겪게 되는 다양한 고충문제 해결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사후관리는 미흡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교육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 중 (서울, 안산, 의정부)

• 산업연수제

- '93년 개발도상국가와의 산업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체에서 외국인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는 산업연수제 도입 (중기협, 농협중앙회 등이 운영)
- 동 제도에 대해 외국인력의 편법 활용, 노동관계법 등의 보호 미흡, 송출비리 야기 등의 비판 제기

• 고용허가제

- '04.8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완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체계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도입
-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인력송출업무도 송출국가와 MOU를 체결한 정부기관이 담당

-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 '07.6)
 -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산업연수생(E-8)은 고용허가제 근로자(E-9)로 전환, 미체결 국가의 산업연수생은 경과조치로 현행(E-8) 유지 (2010년 까지)

나. 추진계획

🌱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추진

- 전자사증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고용허가절차 간소화 및 외국인체류지원 대행 기관 근거 규정 마련
- 국내취업 중인 단순노무 외국인력 중 숙련 생산기능인력으로 발전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 장기거주 허용
- 외국인력 도입확대와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의 조화 모색 및 운영체계 개선
-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및 방문취업제 제도 개선 방안 강구

🌱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 민관합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추후 전국 권역별 설립 추진
- 출입국관리법 정비를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고충처리 대상 확대

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가. 현 황

-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갈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경험
 - 특히, 자녀들은 외모·말씨 차이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과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

- 혈통중시 전통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인종차별적 행태가 잔존하나, 내국인 대상 다문화사회 적응교육은 미흡
 - 외국인의 취업 및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 등 지원은 불충분
-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혼당사자의 인권침해, 국가이미지 실추, 기업 해외진출 악영향 등 사회 문제 심각
 -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 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 갈등이 심화되고 이혼율 증가,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 발생

나. 추진계획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민원상담관실’을 확대·개편하여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설립하고, 각 기관의 외국인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24시간 통역서비스로 법률, 출입국·국적상담, 의료, 보건 등 각종 정보 제공
- 귀화자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추진
 - 한국어, 다문화 교육 등 표준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국적취득 등에 혜택 부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유도

🌱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외국인근로자 생활체육교실·체육행사 등 활성화
-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개선 및 지역별 이주민 축제 지원 강화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사회, 도덕 등 교과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추진
 - * 이민사회로 성립된 미국의 경우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20세기초 초·중등교과에 사회 과목(Social Studies)을 설치하여 다문화·다인종 교육 실시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외국인이 학교 수업에 참여, 자국문화를 소개),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등 확대
- 외국인이 참여하는 TV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가정의 결연사업 확대
 - *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80개소)를 통한 한국어·문화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정에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여 방문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신중 건강 관리 및 출산 준비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도우미 서비스,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 관련 서비스와 연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언어치료사 및 이중언어 강사 파견 지원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보육 활성화 및 보육시설 다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등 취·창업교육 실시 및 다문화강사 등 이민자 적합직종 개발·양성, 취업연계 추진
- 정보제공 및 통·번역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지원 강화
-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을 통하여 인권보호 강화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 등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 현지 콜센터 및 입국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몽골, 캄보디아 등)
 -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가족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School to Work)

가. 현 황

- 초중등 학교에서의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표준 모델 및 진로교육 운영 지침 부재
- 교육과정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배출 부족 (skill mismatch)
 - * 미국의 경우 '학교에서 현장으로(School to Work: STW)'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직업현장을 밀접히 연계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교육보다는 학령기 학생에 대한 교육에 집중

나. 추진계획

✎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표준 모델 및 진로교육 운영 지침 개발

- 진로개발 역량요소를 추출·체계화하고, 이들 역량 요소를 토대로 초·중등 학교 진로교육 운영 지침 마련 및 현장 적용
 - 개별적인 진로개발 역량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부 교수·학습 전략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운영 지침은 진로교육의 내용 및 방법, 운영 여건 및 주체, 인력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님
 - 현장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운영 지침의 교육과정 반영

- 개별 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촉진하고 학습동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과통합형 진로교육 모형 개발 및 국민공통기본교과에 적용
 - 관련 정책연구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수행('08, 직능원)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 「진로와 직업」 교과 개설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영상 자료 제작·보급
- 「직업세계 체험 주간」 운영으로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5월 3째주)
- 중고생 대상으로 대학과 직업현장을 연계한 한국고용정보원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Job School) 확대
 - 학교(교육청) - 고용지원센터 - 대학·기업체간 네트워크 형성
- 대학생 대상으로 자신감 제고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직업탐사(Job Tour, Job Travel, Job Camp) 등
- 청년층 맞춤형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에 ‘청년층 취업지원센터’ (Job Cafe) 설치·운영
-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 체험 중심으로 전환 추진
 - 대상기관에 따라 연수기간 차등화 및 참여기업에 대한 연수운영지원 등을 통한 참여 유인 강화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 직업가치관검사, 청소년진로발달검사, 직업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검사 등 추가개발
-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보급
 - 「초·중·고·대학생용 직업 지도프로그램(CDP)」을 각급 학교에 보급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을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보급
- 진로직업정보 자료 확대 보급 및 커리어넷(CareerNet), 워크넷(Work-net)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등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진로직업정보 제공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Work to School)

가. 현 황

-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체계 및 지원이 미흡
 - 근로자수강지원,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유급휴가훈련 제도 등의 이용이 저조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데도 한계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여건 미흡
- * '07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00인 이내기업(18.3%), 300인 이상기업(97.5%)
- 실업자 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는 저조

연도별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인원(천명)	196	168	141	98	98	107	102	117

• 자료 : 노동부

- 전문대학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정('07.6) 및 동법시행령 개정('07.10)

나. 추진계획

🌱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시행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정부가 근로자에 훈련비용을 능력개발카드(현금이 아닌 일종의 지원한도 의미)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형태의 훈련 서비스 전달체계

-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훈련 상담을 강화하고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식비 등 훈련수당 지원을 현실화
 - 전문대학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특정기업체, 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한 단기 직업능력개발 과정 설치 확대
 - 가정주부, 실직자, 장애인, 재소자 등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유치 확대
- * 사례 : Medical 피부미용과정(삼육간호보건대), 노인직업교육과정(서라벌대), 스포츠 마사지 · 실용명리학(주성대)

중소기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 확대
 - *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 '05) 47개소 → '08) 90개소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

대기업, 사업주 단체, 공공훈련기관 등의 우수한 훈련시설, 장비를 활용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 확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 '06년 123개소 → '08년 300개소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학습조 도입 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 중소기업에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훈련받는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 우수훈련과정 : 전략경영, 인사·조직, 마케팅·유통, HRD·리더십,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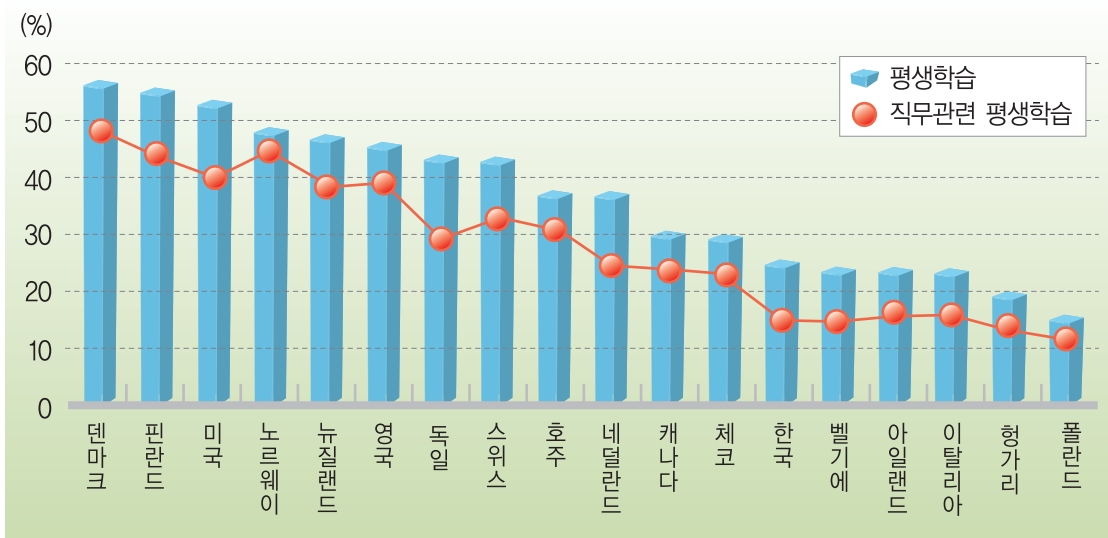
3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가. 현 황

- 평생학습체제 미흡

– 우리나라 성인(25세~64세)의 평생학습 참여도는 23.4%로 OECD 국가의 50% 수준이며,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4.1%에 불과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4

- 지역 및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직업훈련 체계 미흡
-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현장성 및 활용성 저하

나. 추진계획

🌱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특성화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확대 및 ‘평생교육 지원 전담기구’ 설치
 - * 평생학습도시 지정 누적 개소수 : '05) 33 → '06) 57 → '07) 76
- 평생학습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평생학습대상 시상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정보시스템 상의 학습계좌에 정규 학교교육 외의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관리하고 학력 또는 자격인정 등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교과부)
 - 평생학습도시 4~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후 '09년에 전국 단위 시범운영
 - * 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착수 ('08.10월)
- 구직자등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익을 통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실시 (노동부)
 - 구직자에 대해 시범실시('08.9월)한 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 (10년 이후)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추진 ('08년 중)
- 교과부-노동부 공동의 ‘평생학습계좌제협의회’에서 교과부 학습계좌제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이력관리 연계 방안 논의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산업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등급·직무분야를 재정비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자격체계 구축
- 산업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시험과목·출제기준·검정방법 결정, 출제문제 검토, 문제은행 정비, 검정시행 평가과정에 산업계 의견 반영
-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산업별·업종별 단체 등에서 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추진
 - 산업체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검정 현장성 제고 및 산업계의 검정역량을 배양
 -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산업현장 및 교육·훈련기관 등을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장으로 인증, 활용
- ‘일-자격-훈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자격정보망(Q-net)을 직업훈련정보망(HRD-net) 및 노동시장 정보망에 연계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1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증진

가. 현 황

- '07년 현재 90,147명의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 발생(사망 2,406명)
 -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6조 2,114억원 ('07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8%, 건설업이 21% 차지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76.3% 발생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추이

(단위:명, 억원)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재해자수 (사망자)	68,976 (2,528)	81,434 (2,748)	81,911 (2,605)	94,924 (2,923)	88,874 (2,825)	85,411 (2,493)	89,910 (2,453)	90,147 (2,406)
경제적 손실액	72,813	87,227	101,017	124,091	142,996	151,289	158,188	162,114

• 자료 : 노동부

나. 추진계획

☞ 영세사업장(50인 미만)의 작업환경 개선

- 영세사업장(제조업)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는 CLEAN 사업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안전보건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능력을 제고

☞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 사망재해 다발업종, 조선업, 대규모 건설현장 등 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 집중 투입

* 안전보건감독(종합점검) '10년까지 매년 3천개소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일제점검 '10년까지 매년 2천5백 개소

- 화학업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

☞ 작업환경측정제도 내실화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 유해인자 허용기준 제도 및 불시 작업환경측정제도 도입
-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분류·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 자료(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제고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산업 단지내 「지역산업보건센터」 운영 및 설치 확대
- 소규모 사업장 뇌·심혈관질환과 당뇨병 등 기초질환 예방 및 검사지원
- 근로자 금연 등 생활습관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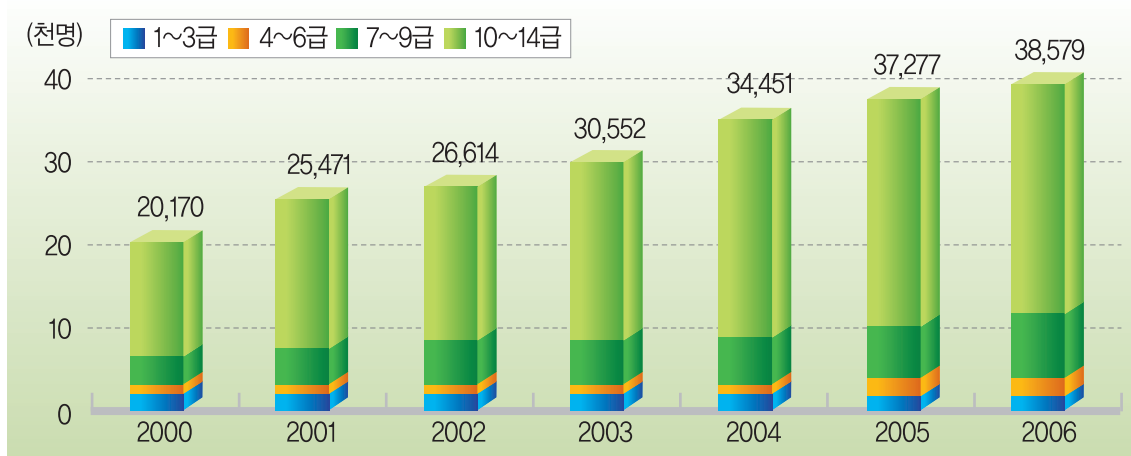
-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확대

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가. 현 황

- '06년 산재발생으로 인한 장애자가 연간 38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은 46% 수준에 불과하여, 개인적·국가적으로 커다란 인력손실 발생

산재장해자 발생현황



• 자료 : 노동부

나. 추진계획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고용유지기간 단축 : 1년→6월)하고 지급방법을 개선(1년후 일시금→매월 지급)
 - 산재근로자에게 직장에 직무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이외에 추가지원(각 45만원 및 15만원 한도, 최대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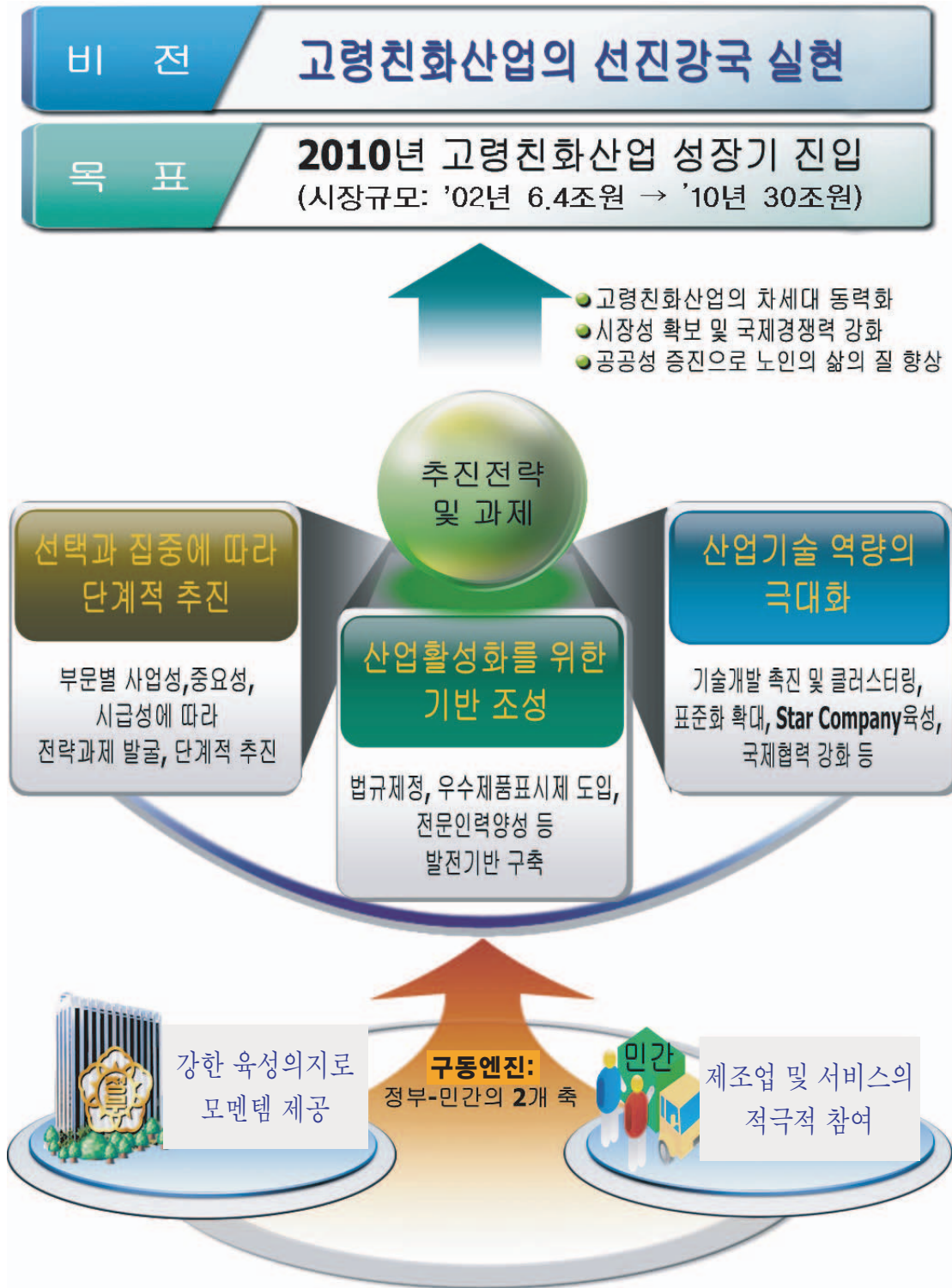
☞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직업훈련 실시인원을 확대하고, 공공훈련시설(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민간 직업훈련시설을 적극 활용
-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창업시 점포임대 지원 및 경영컨설팅 제공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 산재발생 초기부터 심리·재활상담을 실시하여 조기 직장·사회 복귀 유도
- 심리·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재활수가 개발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1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 추진

가. 현 황

- 공·사적 연금수급자 증대, 고령 근로자 증가에 따른 노인구매력 향상으로 고령 친화용품, 요양·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고령 친화산업은 아직 취약한 실정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이 크게 확충될 전망
 -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06. 12. 28) 및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07.6.2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 장려, 표준화 촉진
-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및 사업자의 표시·지정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사업자 단체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국제협력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 고령자의 안전 및 보호, 권익증진 등

- * 일본은 「고령자 주거안전에 관한 법률」('93),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93) 등을 제정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 국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없이는 일본 및 중국 상품이 우리 시장을 대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의 비전 제시와 함께 강력한 추진 필요

나. 추진계획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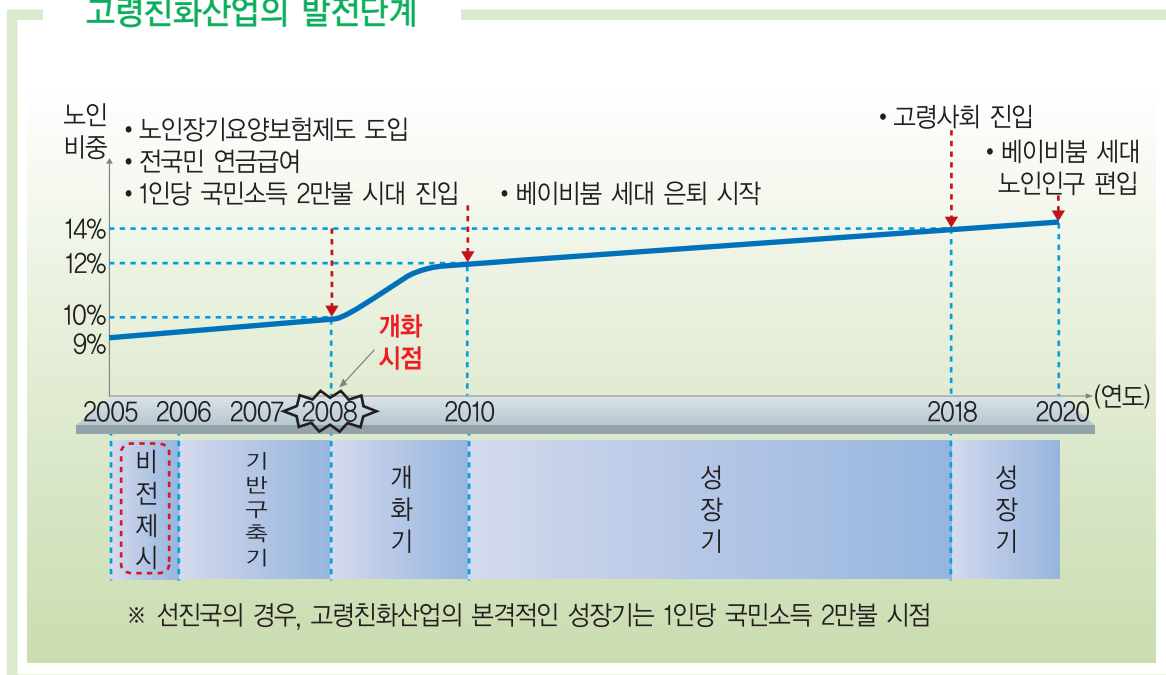
- R&D 확대 등 사업성과 위주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07년까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완료
 - 국민연금 지급이 본격화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등이 실시되는 '08년부터 적극 추진
 - '10년부터 고령친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

준비 단계('05~'07년)	활성화 단계('08~'09년)	해외진출 단계('10년~)
• 발전방안 제시 • 제도 정비 • 표준화 기반 조성	• 종합체험관 운영 • 제품 상용화·고부가 가치화 • 표준화 확대	• 국제수준 기술확보 • 수출시장 확대 • 국제협력 강화

• 자료 : 지식경제부,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5대전략 및 10대정책과제)」, 2005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단계



■ **고령친화산업** : 고령자 및 중·장년층의 건강·편익·안전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수요자 :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
- 공급분야 : 용품·기기, 금융, 주택, 요양, 의료, 여가, 교통, 의류, 장례 등

■ 고령친화산업의 특징

- 다품종소량 생산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
- 고령자의 건강증진·유지, 편리성 제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고령친화산업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기회 요인	제약 요인
• 연금 등 소득 증가 및 의료비 증가 • 베이비 붐 세대의 신 소비문화 • 우수한 산업기술력 보유 • 거대한 중국 시장 인접	• 내수기반 취약 • 영세 중소기업으로 자본력 부족이 대다수 • 기술개발, 클러스터링, 표준화 미흡 •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결여

■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발전시책

- 일본 정부는 노인복지 사업 확충과 실버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
 - 골드플랜('90~'99) → 신골드플랜('95) → 골드플랜21('00~'04)
- '85) 후생성에 실버 전담기구 설치, '93) 법규·제도정비 및 복지용구 개발비 지원, '95) '고령사회 대책회의' 설치, '00) 공적개호보험제 실시
 -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요양산업(특히 재가요양) 및 실버용품산업이 활성화 되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확대('00년 38조엔 → '04년 110조엔)
 - *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02년 6.4조원에 불과(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 DB 개발 필요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 웹 DB 구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의 보완 발전
 -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과 고령자의 안전보장, 시장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현재 구축된 제품 DB를 확대하고 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를 보완해 실용도 제고
 - * '10년 까지 참여 기업 수 100개, 등록 제품 수 1000개까지 확대
 - 고령친화서비스 산업분야 DB는 신규 개발 추진
- 지식경제부(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 산업정보 분야 DB 구축
 - 산업체 및 제품정보 구축, 산업 지식 및 기술정보 구축
 - 전문인력 및 연구장비 정보 구축, 해외 마케팅 및 판로 정보 구축 등
 - * '10년 까지 산업정보, 연구보고서, 산업뉴스 등 3000건으로 확대

• 고령친화제품 산업 DB 사례

- 미국 ABLEDATA : 국립재활연구원 후원으로 고령자·장애인 용품 정보제공
- 일본의 TAIS : 후생성 산하 (재)테크노에이드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용구 DB
- 유럽 EASTIN :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의 공동 DB

• 고령친화서비스 산업 DB 사례

- 미국 AAHSA : 우수 요양시설 정보 제공
- 일본 실버서비스진흥회 정보공표시스템 : 방문개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사업소 정보 제공
- 호주 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 노인 요양시설 정보 제공

2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가. 현 황

- 고령자가 고령친화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 일부 불량 제품이나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 유통
 - 고령친화제품의 소비를 제약하고, 중소기업의 고령친화산업 시장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표시제를 도입할 필요
 - 고령자 특성을 배려한 우수 제품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고령친화 제품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계기 조성
 - * 일본의 경우 실버용품·기기에 대해 '87년부터 인증제도(실버마크) 도입

나. 추진계획

🌱 우수제품 품질표시 제도 내실화

-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표시제 운영
 - 고령친화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에 품질 인증마크 부여
-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확대

• 우수 고령친화제품 및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
- 기술 지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 인증의 획득 지원
- 연구 시설 및 장비의 이용 지원
- 그 밖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서비스 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수 사업자 지정
 - 고령친화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기준 개발 등 연차별 단계적 추진

연 차	사업추진 내용
2008	• 고령친화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기준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적정성 평가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개발
2009	• 고령친화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시범사업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미신청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옹구사업소 대상 실시
2010	• 고령친화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 사업 확대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급여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보험급여 미신청) 등 ※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적절성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시설부터 우선 검토

• 고령친화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 절차(안)

- 1단계(참여 신청) :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접수, 지정사업자 지정 등
- 2단계(자체 점검) : 자체점검위원회구성, 자체점검 실시 등
- 3단계(현장 관찰) : 현장 관찰자 파견 및 현장 관찰 실시 등
- 4단계(지정 심의) : 우수사업자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지정 심의 및 결정 등
- 5단계(지정서 교부) : 우수사업자 약정 체결, 지정서 및 현판 전달 등
- 6단계(사후 관리) : 매년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제출 등
- 7단계(우수사업자 홍보) : 지정사업자에 대한 홍보 등
- 8단계(재 지정) : 3년 후 재 지정

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가. 현 황

- 고령자 수요계층은 형성되었으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수요가 현실화 되지 않고 있어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시급
 - 고령친화 제품 및 수요자의 특성상 체험관 구축·운영은 일반 홍보매체(TV,신문등) 보다 수요 창출 및 인식확산에 결정적 기여
- 경기도 성남시, 대구광역시에서 고령친화산업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
 - 사업시행 지자체 등과 협약체결('07.10), 체험관의 실시 설계 및 용품설치 등을 통해 '08 하반기 개소 추진
-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체험관을 수요창출의 필수요소로 간주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

주요 외국 사례

- **일본** : 오사카市 'ATC Ageless Center'
1,500평 규모에 2,500개 품목을 상설전시하고, 체험공간 제공
* 전국적으로 116개 복지기기 상설전시장 운영
- **독일** : Stuttgart市 'Barrier Free House'
노인을 배려한 주거공간에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체험 기회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미국** : 밀워키市 'Elite House'
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노인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주거시설, 제품, 경보시스템 등을 전시

나. 추진계획

🌱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종합체험관 설립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수요층 다변화를 위해 권역별로 추가 설립해야할 필요가 있음
 - 수요층을 고려한 체험관 운영 및 강제적 유인보다는 자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

- 노인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립하고 고령친화 산업의 마케팅과 홍보 거점으로 활용
 - 일본 등 선진국의 우수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
 - 노인 및 부양가족의 참관을 유도하여 시장 창출 및 활성화 계기 마련

■ 종합체험관 설립방안

- 1,500평 내외로 설립(국비 및 지방비)
- 노인유동인구, 장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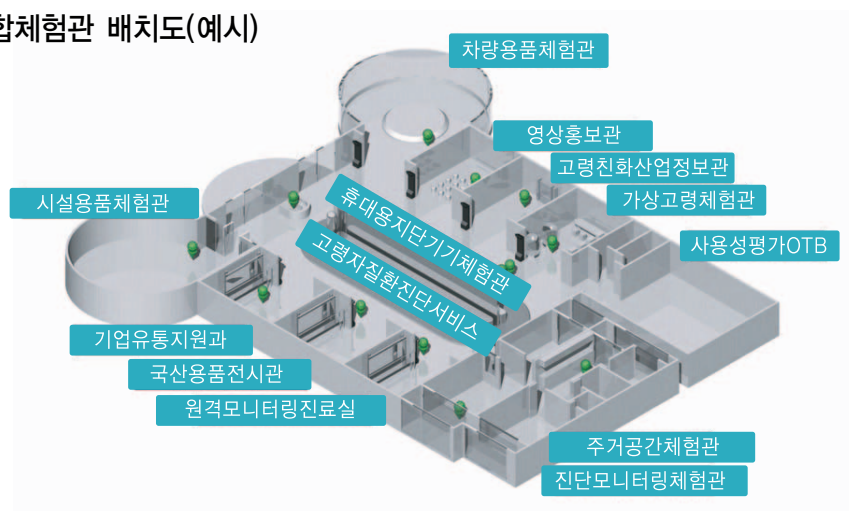
■ 종합체험관 사업내용

- 제품의 체험·전시이외에 노인의 간단한 진단(고혈압, 당뇨, 혈당 등) 및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종합체험관의 주요기능 및 내용

주요 기능	시 설	비 고
고령친화제품 체험·진단기능	주거공간별 제품 체험관 생활용품 체험관 시설 체험관 가상고령 체험관 고령자진단시범 서비스관	• 침실, 욕실, 거실, 주방 등 • 용품, 통신기기 등 • 요양·주거 시설 • 고령자 신체특성 체험 • 방문객을 위한 진단서비스
고령친화산업 정보기능	고령친화영상 홍보관 종합정보 DB관	• 세미나, 이벤트공간 겸용 • 고령자생활, 산업 등 종합적 정보
관련 기업활동 지원기능	국산용품 전시관 제품사용성 평가관	• 국내 대표품목 전시 • 노인의 사용특성 조사분석

■ 종합체험관 배치도(예시)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가. 현 황

- 국내 고령친화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제품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R&D 투자 필요
 - * 고가·고기능 고령친화제품 대부분은 일본산이며, 저가·단순기능 제품은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실정
- 고령친화제품의 생산기술은 중·저위 기술로부터 IT 등이 융합된 고도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개발 전략 요구
 - * 일상생활용품,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목욕지원 용구, U-healthcare 등 제품의 기능과 기술 내용이 다양
-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감안, 단계적 기술개발 추진 필요
 - 세계 최고 IT기반과 우수한 산업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잠재력은 충분하므로 정부가 비전과 체계적 전략을 제시할 경우 단기간 내 경쟁력 확보 가능

고령친화제품 부문별 기술유형

부문별	기술내용
노인운동기능 증진	- 운동치료 및 증진, 인체기능 복원 - 근골격 물리치료, 다기능 마사지
노인성질환자 응급모니터링	- 보행평가 및 실족 모니터링 시스템 - 고혈압, 치매, 당뇨질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노인자립형 이동 지원	- 실외·실내 이동지원 기술 및 기기
노인생활 지원	- 가사, 배뇨/배변, 목욕 용구 - 침대, 응급처치 지원 및 경보시스템 - 도우미 용품
일반 생활용품	- 화장실/목욕 용품, 기저귀 용품, 침실 용품 - 휴대용 용품(보청기), 커뮤니케이션 기기
주택 시설용품	- 건축/주택시설 부품 및 건자재

나. 추진계획

🌱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 수요조사를 통해 상용화가 용이한 단순제품 및 기능 부가제품, 공적급여 대상 제품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단기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

• 단기(3년 내) 기술개발 유망과제

- 다목적전동침대, 다기능 실내외 이동 장치, 실내이동 및 입욕 겸용 Power Lift
- 노인용 콘텐츠, 원격경보(행동 모니터링 및 응급호출) 시스템, 노인질환 예방기술
- 정보통신 보조기기, 엔터테인먼트 융합형 노인운동기기, 전자기파 통증제거기
- 한방관련 약제 · 화장품, 의료(진단)기기
- 혈당측정기, 건강 진단 전자슈즈, 실버의류 등

- IT · BT · NT 등 신기술 융합 제품, 주문형 제품, 의료기술개발 제품 등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장기과제 병행

• 장기(3~10년) 기술개발 유망과제

- 다생체기능 모니터링시스템, 주거환경지원시스템, 원격진단 · 진료 건강정보 시스템, 지능형 운동치료 · 운동기능 증진시스템, 지능형 신체기능 지원시스템
- 지능형 특수전동 휠체어, 만성 통증환자 치료기, 인체 감각형 체질 진단기기
- 인간기능 지능로봇, 노화 및 수명 조절 유전자 연구 등

- 기술개발시 ‘UD(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 보편성 및 편익성 증진

UD란,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다(Design for all)”라는 취지에서 노인의 선호 (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 고려하여 개발한 기준으로, EU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중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

- 산업지원기반 구축 강화
 -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확대
 - 제품 홍보 및 마케팅, 판매 창구 역할 강화
 -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IT, BT, NT를 연계한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을 지원해 수출 상품으로 육성
- * 현재 서울(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부산 테크노파크) 2곳에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운영 중

❖ 고령친화제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고령친화제품 관련 업체, 연구기관 유치
-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고령친화산업 지역 클러스터

사업명	사업 내용
충남 고령친화산업 지역혁신클러스터('04~'10)	- 고령친화 기능성 식품 및 노인 복지기기 개발
동남권 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 사업('08~'11)	- IT융합 전동복지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화
한방실버웰니스산업육성 체계구축('08~'11)	- 한방실버웰니스 건강기기 및 기능성 식품개발

❖ 세계적 수준의 Star Company 육성

- 고령친화산업 중 성장 잠재력이 큰 선도기업(Star Company)을 발굴하여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선발대상, 선발방식 및 지원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 국내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적극 유도
 - 해외 유명박람회 공동 참석 및 우수제품 홍보 등
- 국내박람회 규모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고령친화 우수제품 공동 홍보전시관 설치 및 수출입 정보 등 제공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가. 현 황

- 고령친화제품 생산에 필요한 고령자의 생활·복지 관련 표준화 미흡
 -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등 고령친화제품과 관련된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으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성(신체기능, 인지능력 등)에 맞는 생활·복지 표준 규격 수 부족
 - 의료기기 표준(KS 503종), 재활보조기구 표준(KS 78종) 등을 제정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
-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인체치수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국가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대폭 개선됨
 - 고령자 인체치수 DB를 활용하여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마련

사이즈코리아 사업

- 목적 : 산업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인체치수자료 확보
- 기간 : '03년 ~ '04년
- 측정 인원 : 0-90세 남녀 21,295명 (고령자 2,055명)
- 측정항목 : 앉은키 등 직접 측정 119개, 엉덩이 높이 등 3차원 측정 205개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 예시



고령자케어용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고령환자용 좌변기

나. 추진계획

❖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표준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용에 불편한 ‘장애제거(Barrier Free)’ 기반 마련
- 과제의 시급성·시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표준 제정 추진
 - 표준화 목표 : ’07~’10년까지 매년 5종 표준 제정

1단계(’05~’06년) 기반조성	2단계(’07~’09년) 표준화 확대	3단계(’10~’15년) 국제표준화
- 표준화 추진계획 마련 - 추진체계 정비 - 표준화 연구개발	- KS 제정 확대 - 한·중·일 표준협력강화 - ISO TC/SC 참여확대	- TC/SC 주요역할 수행 - 한·중·일 공동표준제정 - 국제표준 제·개정 주도

• TC(Technical Committee), SC(Sub-Committee)

연도별 세부 추진 표준화 대상

연도별	배려용품(공용품)	재활보조기구/고령친화의료기기
’06	• 주거시설 내 통행 공간설계 등	• 욕창예방용구, 목욕용품 등
’07	• 주거시설 각 부분 설계 등	• 의지(依支) 및 보조기 등
’08	• 광학보조기구 등	• 안내 및 표시기기 등
’09	• 녹음기, 보청기 등	• 재활치료용 의료기기 등
’10	• 레크레이션기기·시설 등	• 용기 취급용구, 계측기기 등

❖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 한·중·일 민간표준협력체(S-Dialogue; ’02년 한국주도로 결성)를 통한 고령자 배려 국제표준 협력 강화
- 고령자관련 복지규격에 대한 ISO 위원회(TC/SC)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입장 반영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1 역모기제도 활성화

가. 현 황

- 고용 안정성 약화, 연금제도 미흡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증가
 - 노후생활비·의료비는 증가되고 있으나,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 소득준비에 부족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하므로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 * '04년 45세 근로자의 경우, 60~83세 동안 노후생활비, 의료비 등 지출에 비해 연금소득은 연 918만원 부족 (보험개발원, 「고령화 리스크진전과 노후보장체계 재구축」, 2005)

◆ **역모기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거주조건으로 노후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

◆ 역모기지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유도
- 역모기지 제도는 의료비 등 각종 노후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효한 대체 수단
 - * 미국의 경우 공적보증 역모기지(HECM :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가 도입 ('89년)된 이후, 역모기지 수요가 확대되어 고가주택에도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93년)

◆ 역모기지과 모기지의 비교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모기지(Mortgage)
주이용자	60대 이후 고령자	30~40대
대출목적	노후생활자금 조달	주택구입 자금의 조달
대출기간	사망 시까지	일정기간 확정

- 중저가 주택 중심의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공적 보증과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 설치 ('07 상반기)

- 보증재원 확충과 세제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07 상반기)
-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 출시 ('07. 7월)
- * '08년 8월말 현재 총 954건 판매로 17,628백만원 지원

나. 추진계획

☞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 역모기지 제도가 고령자의 실질적인 소득확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강화 및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 상품판매 확대 및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

역모기지 상품 목표판매량 및 목표지원액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목표판매량 (누적건수)	515 (515)	1,200 (1,715)	1,380 (3,095)	1,580 (4,675)	1,820 (6,495)	2,100 (8,595)
지원액 (누적지원액)	4,445 (4,445)	17,066 (21,512)	30,313 (51,825)	45,851 (97,675)	64,282 (161,958)	86,065 (248,023)

역모기지 제도 개요

-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 **이용대상** :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 중
주택가격(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고령자가 1년 이상 소유, 1세대
1주택으로 제한)
- **대출방식**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 지급 원칙
 - 다만, 고령자에게 예기치 못한 거액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경우, 특정목적 (의료비·자녀 결혼비용)에 한하여 일시금 허용 (예 : 총 대출액의 30%이내)
-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기관** : 주택금융공사
 - 대출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금으로 월 지급금을 지급

2 자산운용산업 활성화

가. 현 황

- 고령화, 연기금·보험의 성장, 저금리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서 간접투자의 중요성 증대
 - 세계적으로 금융자산 운용이 저축(deposit)에서 투자(investment)로 이동하는 추세
- 특히,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여 연기금과 개인의 투자수단을 확대할 필요
 - 우리나라는 노인층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반면 자산소득의 비중은 11%로 미국, 독일 등에 비해 낮은 수준

주요 국가별 노인층 소득원 비중

(단위: %)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근로소득	44	16	5	22
자산소득	11	23	13	7
사적이전	13	1	2	7
공적이전	24	56	78	57
기 타	7	4	2	7

• 자료 : 일본 내각부,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 2003

나. 추진계획

🌱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 특화된(파생상품·실물자산 등) 전문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완화 (100억원→20억원) ('09.2~)
 - * '09.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

🌱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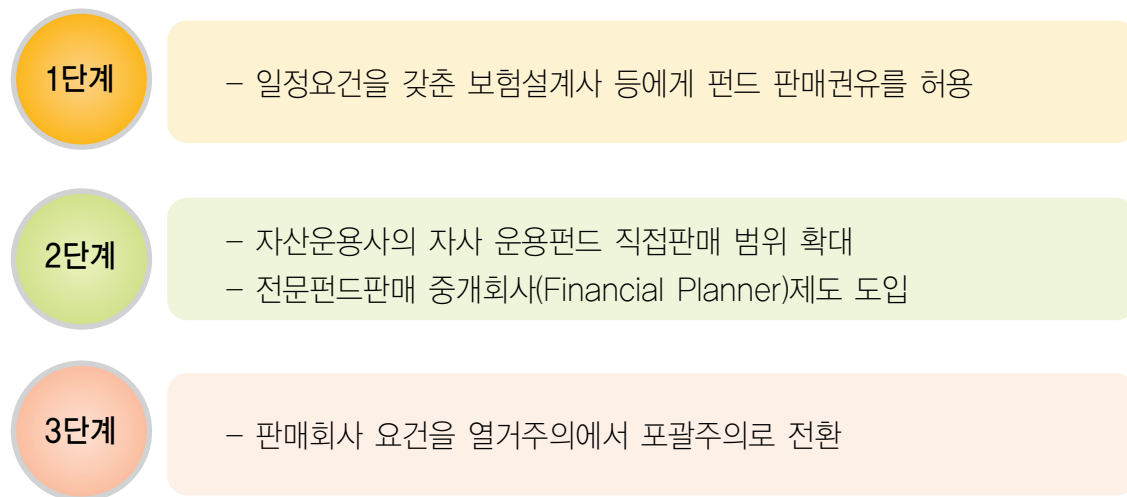
- 선진국(OECD 국가 등) 국공채 투자한도(펀드자산의 10%)를 30%로 확대('06)

- 펀드자산의 일정범위(20%)내에서 주식·채권 등 투자증권의 차입을 통하여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차입공매도’ 허용(’06)

* 공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

- 자산운용회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계열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통합주문 허용(’06)

☞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 사모투자펀드 (PEF : Private Equity Fund) 활성화

- 무한책임사원(GP: General Partner)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참여 확대(’06)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참여를 제한 없이 허용
-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보험회사의 PEF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 완화(PEF 지분15% 초과소유 가능)
 - 일반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 하향 조정(’06)
-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 →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 * 유한책임사원(LP)는 자금의 출자만 담당하고 무한책임사원(GP)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

- PEF 운용 자율성 확대
 - 투자의무비율 완화 ('06)
- 1년내, 60%이상 → 2년내, 50%이상
 -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투자허용 ('06)

🌱 신탁제도의 활성화 추진

- 각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건전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다양한 신상품 개발 확대
-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장기국채시장 육성

가. 현 황

- 만기 20년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06.3월)한 이후 발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만기 10년의 기존 장기국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실정
 - '07년중 2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는 4.9조원(전체 국고채 대비 10.1%)으로서, 목표('07년 국고채 발행분의 10%)를 초과하여 발행
-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국채상품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미흡한 상태
 - 주요 선진국들은 초장기채와 다양한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추세

주요 선진국의 장기국채 발행사례

국 가	국채 종류
미 국	30년만기 국채발행
영 국	50년만기 초장기 국채발행
프랑스	50년만기 초장기 국채발행
일 본	30년만기 국채발행

• 자료 : IMF, 2005

나. 추진계획

❧ 초장기채 발행

- 국고채발행량의 10% 범위 내외에서 20년 만기 · 고정금리 초장기채 지속발행

❧ 물가연동장기국채(inflation indexed long term government bond) 지속발행 등 장기투자기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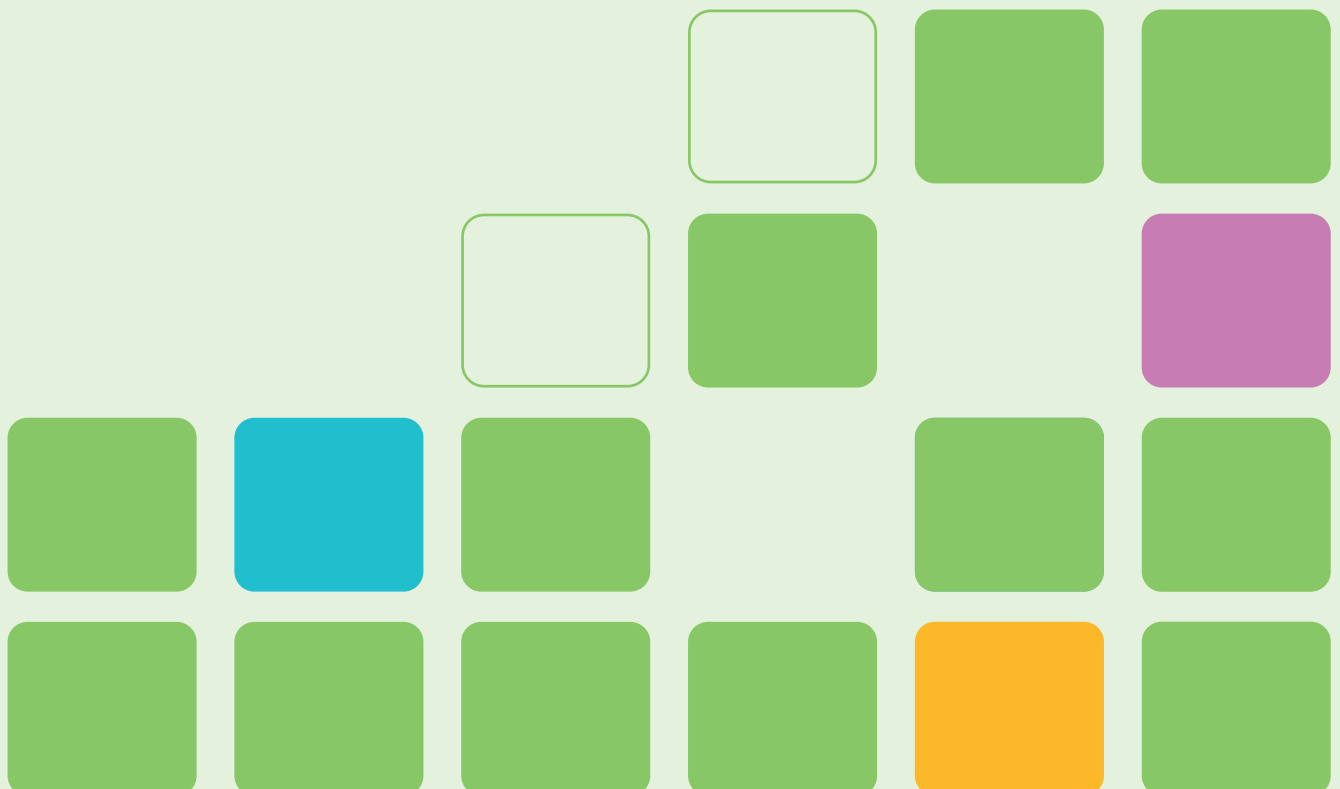
- * 물가연동국채 :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투자자가 지급받게 되는 이자 및 원금의 구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하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구조채권

IV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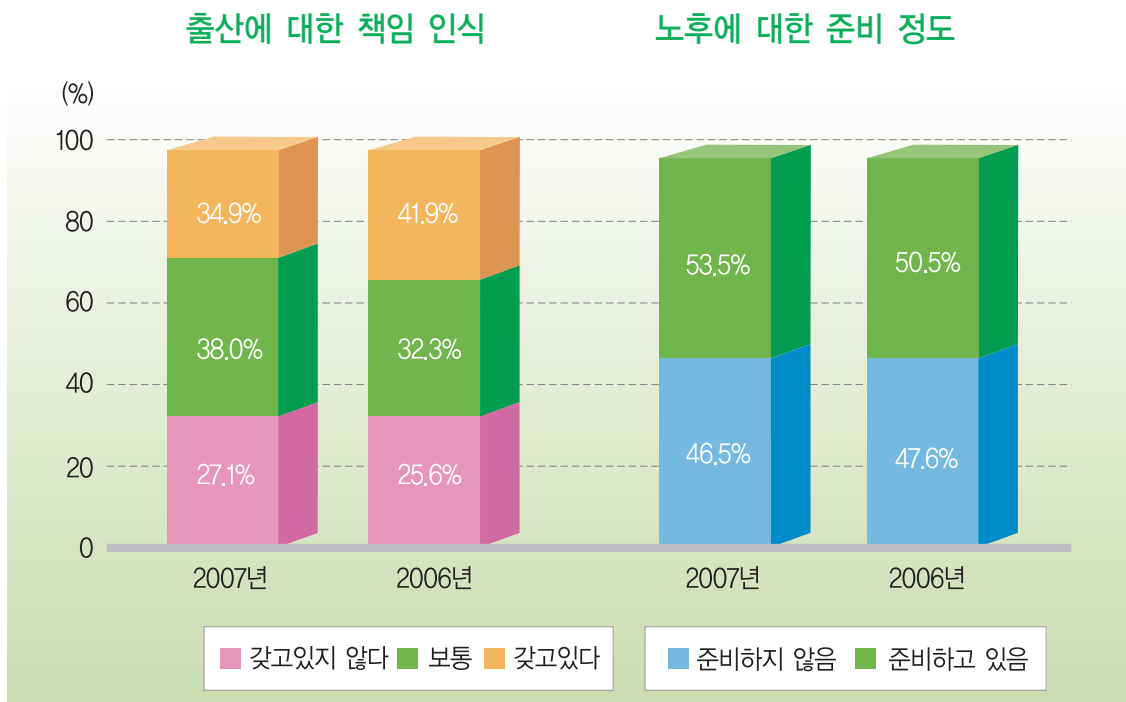
새로마지 플랜 2010



1 전략적 홍보 및 교육

가. 현 황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 및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공감대 부족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출산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07) 결과, ‘책임을 갖고 있다’가 34.9%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27.1% 보다는 높으나, ‘06년도 조사보다 7.0%p 하락.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53.5%로 설문응답자의 절반을 겨우 넘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도 46.5%로 조사됨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민인식 조사」, 2007. 12.)

- 결혼·출산 등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만혼·독신·적은 자녀수를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가 갈수록 심화
 - 유배우 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반드시 가져야 함+갖는 것이 좋음)는 '97년 90.3%에서 '05년 65.2%로 하락

유배우 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연 도	반드시 가져야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1997	73.7	16.6	9.4	0.3
2000	58.1	31.5	10.0	0.5
2003	54.5	32.3	12.6	0.6
2005	23.4	41.5	35.0	—

• 자료 : 1997~2003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2005년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분석결과

- 핵가족화 등에 따라 세대간 유대감 및 노부모에 대한 가족의 부양 의식도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
 - 가족이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한다는 태도가 '98년 89.9%에서 '02년 70.7%로 하락

노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연 도	스스로 해결	가 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1998	8.1	89.9	—	1.9
2002	9.6	70.7	18.2	1.3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아동·청소년기 때부터 생애주기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홍보 부족
 - 학교교육 과정에 인구 및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내용은 '08년 후학기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됨
 - 사회교육 영역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 필요

나. 추진계획

▶ 방송 ·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식 전환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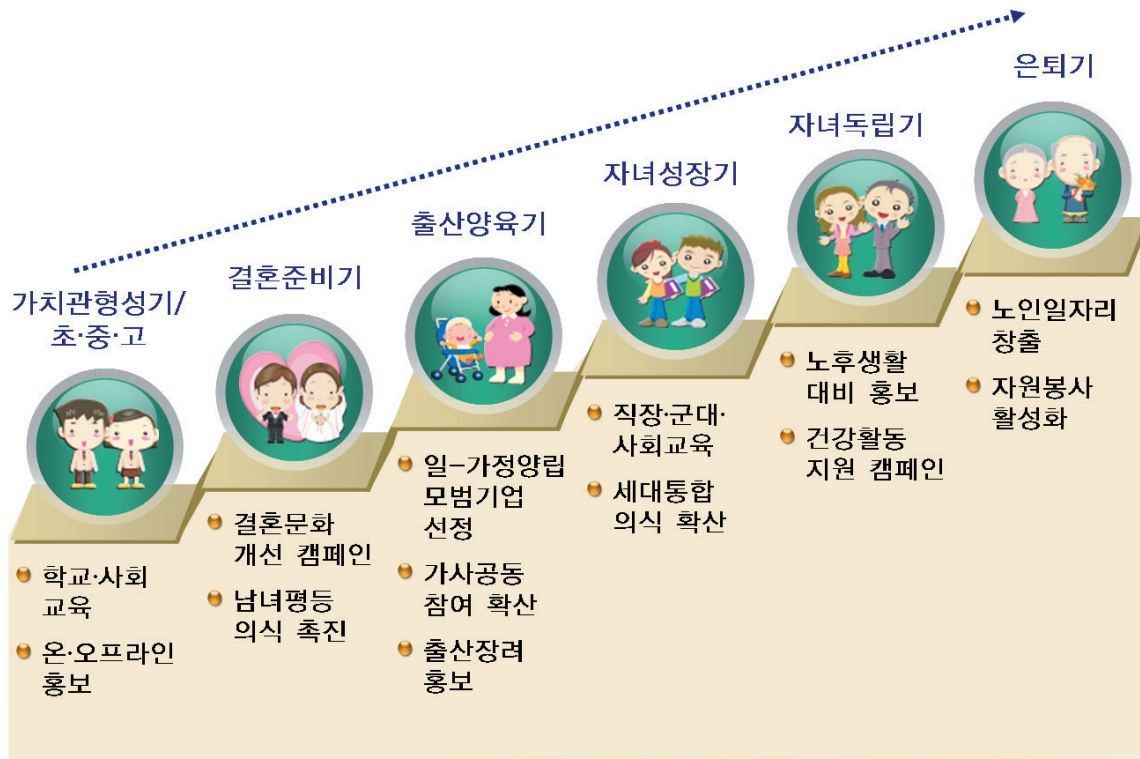
- 기자 · PD · 방송작가 등에게 지속적인 자료제공과 워크숍 개최 등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
- 연중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출산 · 가족친화적인 우수 프로그램 등 시상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이벤트 및 블로그 개설 등 인터넷 홍보 활성화

▶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 · 홍보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 · 출산 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 태도 함양이 필수적이므로 가치관 형성기인 아동 ·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구교육 실시
 -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07.2.28)에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을 교육과정에 반영
 - *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 개발('06~'13)
 -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매년 인구교육지침서를 발간 · 배포하고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제공('09년~)
 - '08년 초 · 중학생용 인구교재인「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발간, 교과용은 '09년 보급
 - 인구교육담당 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 보급('09년~)
- 직장인, 주부, 노인 등 성인 대상의 민간 교육사업 지원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 교육 활성화
 - 대기업 연수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 저출산고령화 대응 교육과정 정규편성 추진 ('08. 9.~)
 - 지역 복지관 · 여성회관 · 시민단체 등을 통한 교육 및 캠페인 지원, 기업 · 노조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 기업모델 확산 등
 - 의료인 등 직능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저출산 ·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각 시·도별 홍보대사를 선정하여 국민의 지지기반 형성 ('08. 10.~)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담강사를 양성하는 등 민간 부문 홍보 담당기구로 육성

생애주기별 중점 교육·홍보내용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자체 광고시 출산·가족친화적 내용을 주제로 제작 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생산제품 포장지 등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슬로건 (표어)을 넣도록 유도 ('08.9.~)

- 비예산 홍보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독려

다. 구체적 가치관 확산 목표 및 과제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 ‘아이의 소중함’ 등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

- 정서적 지지 기반 및 세대간 융합의 장으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
- ‘협력’ 공동체로서의 가족 구성원 역할 재인식

❖ 산모의 모성 · 건강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제고

- 산모의 모성 보호를 위해 산전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활성화
- ‘인공임신 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여론 조성

❖ 양성 평등 의식 강화

- 전통적 성별 역할 인식을 탈피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가치관 형성
- 남녀간 자녀 양육 및 가사 공동책임의식 확산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 기업 · 노조 등 사회 각 부문의 인식 제고 및 사회 분위기 조성
- 부모 모두가 일하면서 가족도 함께 돌보는 ‘맞벌이 부모’ 모델 정착

❖ 생산적 노인상 (Active Senior) 정립

- ‘일하는 노인’, ‘봉사하는 노인’ ‘젊게 사는 노인’ 역할 모델 확산
- 연령분절적 사고(연령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사고) 극복

❖ 세대간 통합과 사회연대의식 함양

- 저출산 · 고령화의 영향이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사회연대의식 함양
- 노인 존중 및 사회적 부양 책임 강화를 통한 ‘세대공존’ 모델 형성
- 다양한 가치 · 가족 · 생활에 대한 포용적 태도 확립
 - 한부모 가족, 국제결혼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치관 함양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가. 현 황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추진 과제와 계획에 대하여는 공감대 미형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사회 부문별, 정책집단간 이견과 쟁점 발생 가능성
- 정부, 기업, 노동부문 등 각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쟁점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전 국민이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 하는데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나. 추진계획

♥ 종교계·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부문과의 정책파트너십 구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 형성

- 종교계와 연대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대한 캠페인 전개로 국민적 통합 도모('08. 10.~)
 - 설교 및 강론, 법문에 활용토록 통계 및 정책설명자료 등 적극 제공
 - 종교계의 케이블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에 활용
- 기업체 CEO 교육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경영, 양성평등 경영, 일과 가정의 양립 기업문화 조성
-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문의 정책수요와 의견 수렴, 사전 조율
- 사회부문별, 직능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공동체 형성
-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적·실천적 합의 도출 추진

사회 각 부문의 책임과 역할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가. 현 황

-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수립·집행으로 지자체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미흡
 -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대응이 부족
 -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및 재정지원체계도 부족
-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지자체의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내실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한계

나. 추진 계획

- 중앙·지자체간 정책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자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핵심과제 발굴, 공동정책과제 개발 및 정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AQ 등 질의응답체계 마련
 - 공동워크샵,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 설명회 등 개최
- 지자체별로 저출산 현황 및 고령화 정도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수립을 지원
 -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미래사회 대응모델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시범사업 등 실시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담조직, 인력 및 소요재원 확보 지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확립

가. 현 황

- 중앙·지자체의 연계·조정·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시급
 - 중앙·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연계·조정기능 강화 필요
 -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과 개별정책이 전체적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단순평가보다는 성과관리적 접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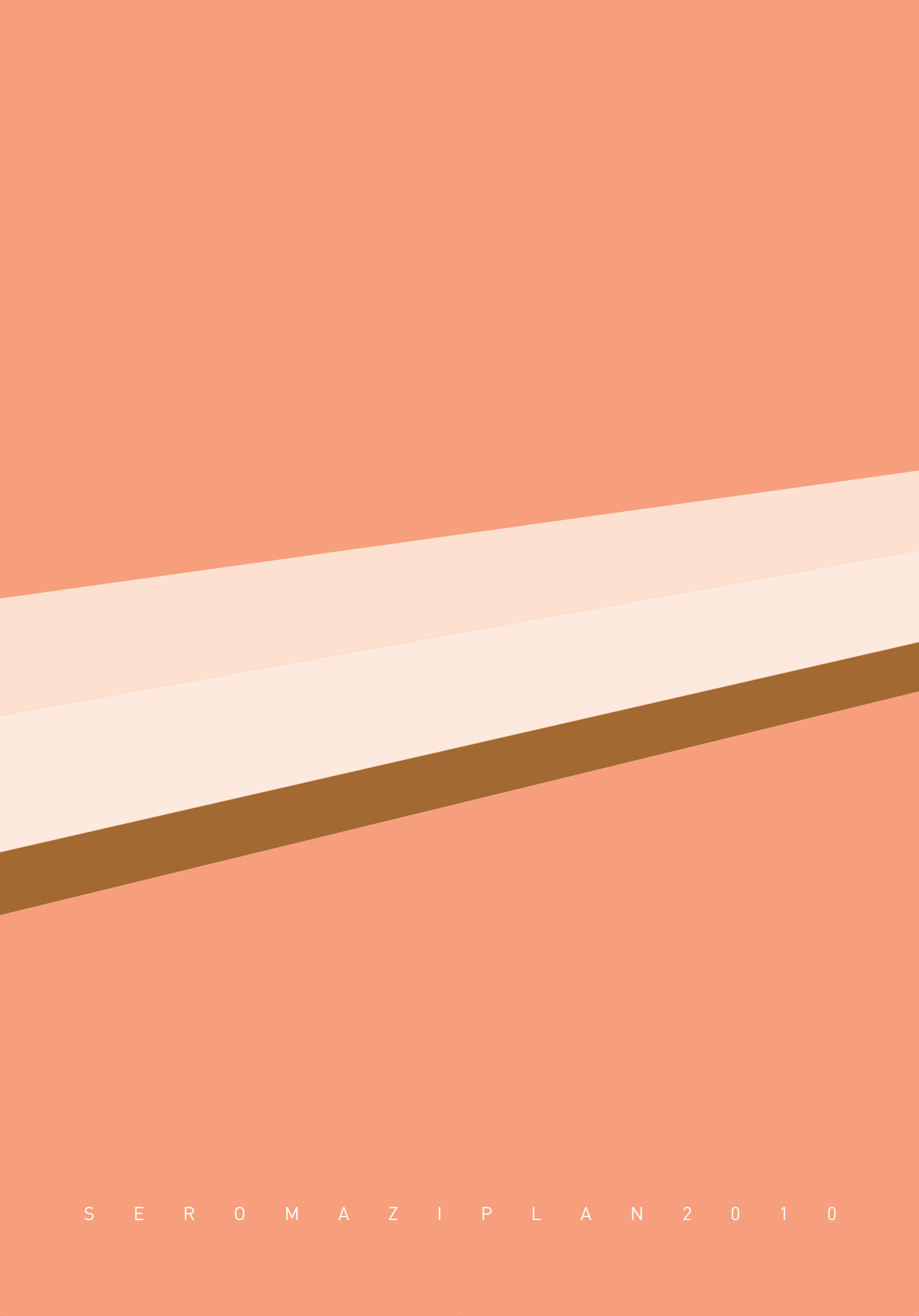
나. 추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제도의 확립·강화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정책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추진실적 및 객관적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따라 각 개별사업에 대해 매년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투입자원 대비 정책 성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 등 정책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 * 평가절차 :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평가지침 통보(매년 초)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서 제출(매년 3월말까지) → 시행계획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1차 평가) 및 객관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2차 평가)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심의·확정 → 평가결과 국회보고(보건복지상임위) → 각 부처·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조치
- 기 개발된 평가지표('06년 시범평가)의 개선 및 간소화, 평가작업의 간소화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 제고
 - 평가기준·세부지표 조정 등 성과관리의 수용성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추진

❖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평가실시 이후 평가결과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 기관평가 등에 환류
 - 성과목표별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사업수행주체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S E R O M A Z I P L A N 2 0 1 0



새로
마즈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플랜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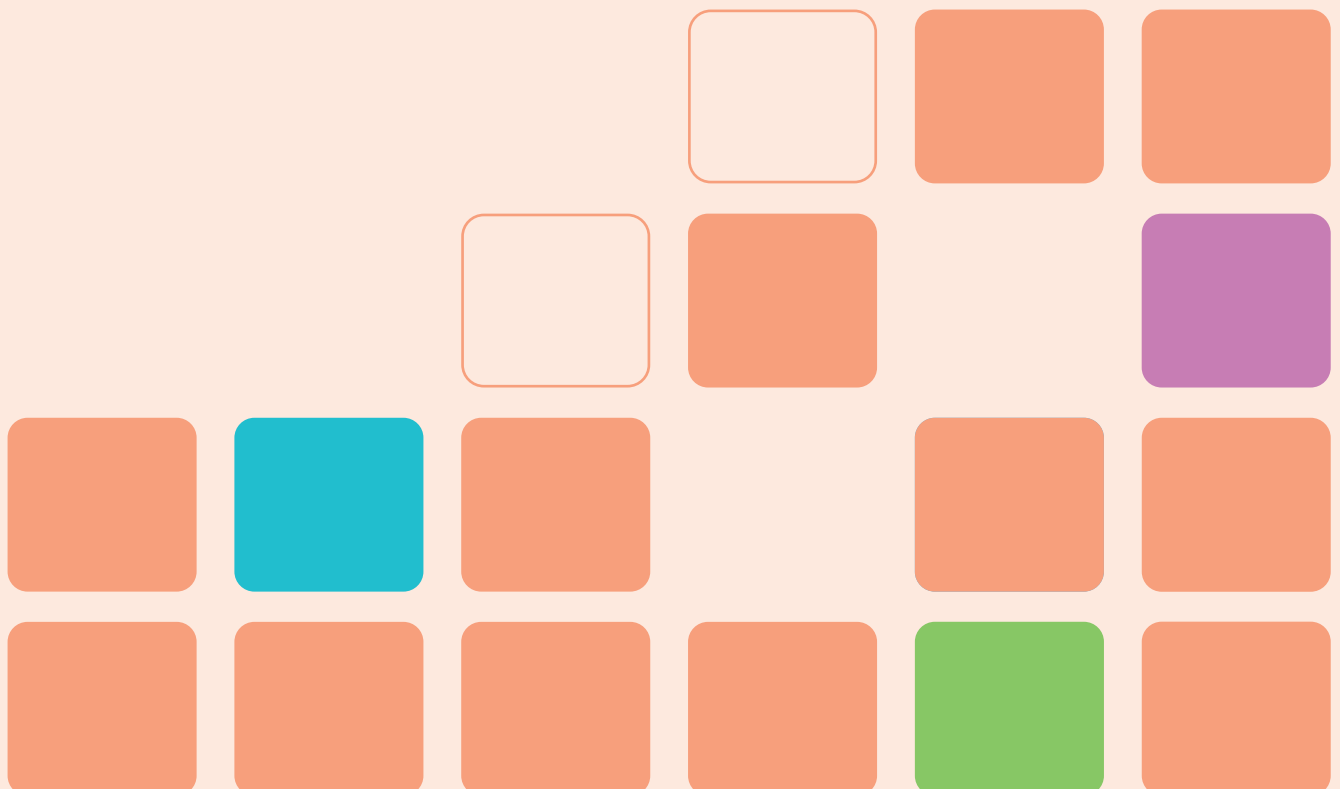
- I.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방안
- II. 과제별 소관부처
- III.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I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새로마지 플랜 2010



1 연차별 투자계획

▶ '06~'10년 중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 40.3조원

- '0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시 32.0조원 투자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보완에 따라 새로 추계된 투자 규모는 총 40.3조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8.3조원(26.0%) 증가

▶ 분야별로는 저출산 19.1조원, 고령화 15.0조원, 성장동력 6.2조원을 투자할 계획

- 저출산 분야는 당초 18.8조원에서 19.1조원으로 0.3조원(1.6%) 증가
 - *보육·교육비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산전검사 지원 등은 확대되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불임시술비 지원 등은 감소
- 고령화 분야는 당초 7.2조원에서 15.0조원으로 7.8조원(108.3%) 증가
 -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07) 등으로 재원투자규모가 대폭 증가
- 성장동력 분야는 당초 6.0조원에서 6.2조원으로 0.2조원(3.3%) 증가
 - *재직 및 실업자 직업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여성 취업지원,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등 확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계		'06 ~ '10							
			'06		'07		'08		'09	
	기	존	기	존	기	존	기	존	기	존
계	32.0	40.3	3.7	5.7	7.1	8.4	7.3	10.8	8.2	11.7
저 출 산	18.8	19.1	2.1	3.2	4.0	3.8	4.6	4.7	4.9	5.3
고 령 화	7.2	15.0	0.8	1.3	1.8	3.2	1.4	4.7	1.9	5.0
성 장 동 력	6.0	6.2	0.8	1.2	1.3	1.4	1.3	1.4	1.4	1.4
기 타	0.034	0.016	0.001	0.007	0.008	0.003	0.009	0.002	0.009	0.003
국 비	11.2	17.3	1.3	1.9	2.4	3.6	2.6	5.0	3.0	5.5
지 방 비	13.0	14.8	1.4	2.3	3.0	3.1	3.0	3.8	3.3	4.2
기 금 등	7.8	8.2	1.0	1.5	1.7	1.7	1.7	2.0	1.9	2.0

- 기존 : '0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시의 재정투자 계획
- 보완 : 기본계획 보완에 따라 새로 추계된 재정투자 계획

2 재원조달방안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병행 추진

▶ 제1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계획의 자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 세출구조조정,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재원 마련
 -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 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폐지 추진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수기반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검토

-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
 - 국민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하여 정책 수용도 제고
- * OECD국가의 출산·양육관련 재정투자와 합계출산율 비교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R^2=0.66$)
-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신규세원 발굴 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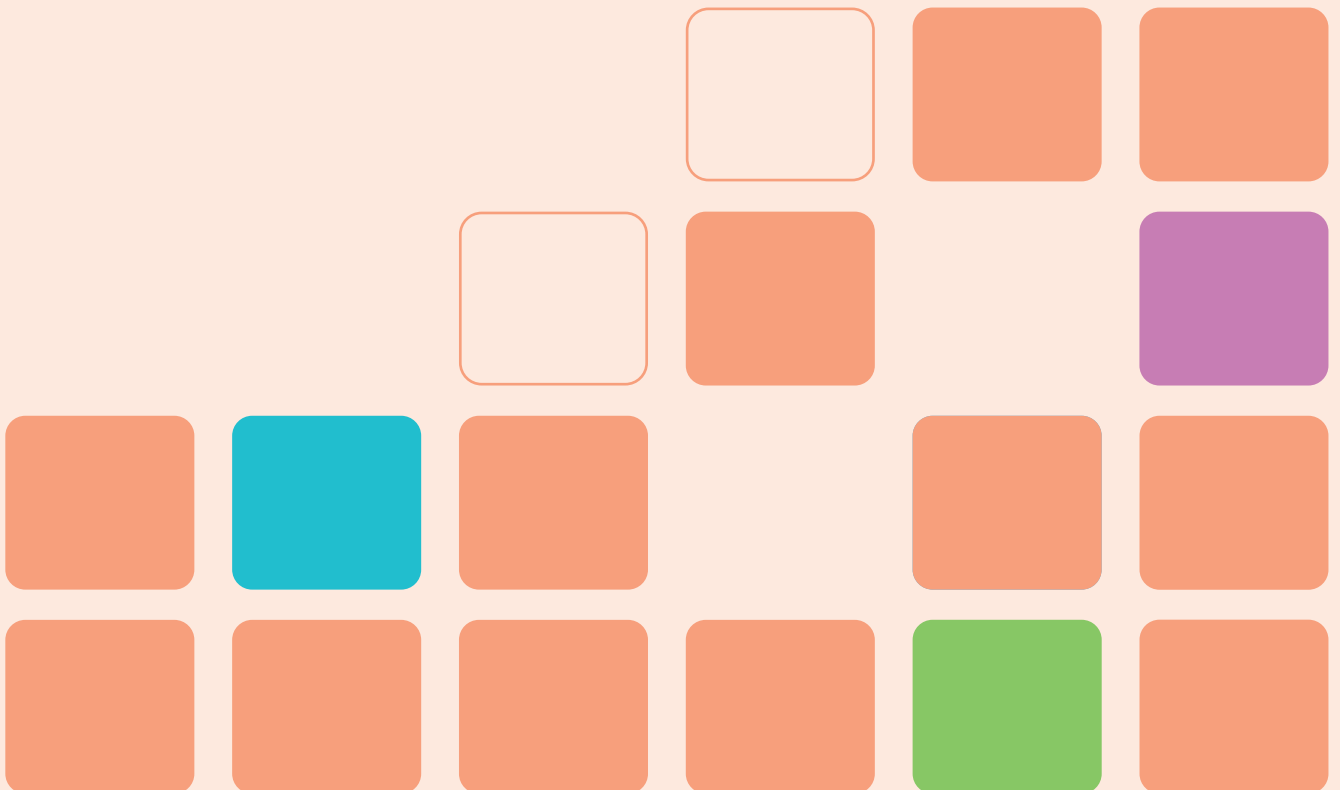


II

과제별 소관부처



새로마지 플랜 2010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1-1 신혼부부 출발지원					
[1] 결혼 출산 주 연령층에 대한 결혼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					
1) 결혼 관련 정보 제공			복지부	1-1	신규
2)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복지부	1-2	신규
3) 현역 및 예비역 장병에 대한 결혼·출산·육아 교육 강화			국방부	1-3	신규
4) 기혼병사 지원			국방부	1-4	신규
[2]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			국토부	1-5	신규
1-2.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1] 보육·교육비 지원의 선진화					
1) 만 0~4세아 차등교육·보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복지부	1-6	
			교과부		
2) 만 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다자녀가구 추가지원, 장애아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복지부	1-7	
			교과부		
			농림부		
3)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복지부	1-8	신규
4)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복지부	1-9	신규
[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복지부	1-10	
[3]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1)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교과부	1-11	
2)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과부	1-12	
3)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교과부	1-13	
[4]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			기재부	1-14	신규
2)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행안부	1-15	신규
3)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복지부	1-16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내실화				1-17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5] 주거안정 지원					
	1)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국토부	1-18	
	2)	주택자금대출 혜택 부여	국토부	1-19	
[6] 미혼모, 미혼부 지원 확대					
	1)	미혼모, 미혼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거점기관 운영	복지부	1-20	신규
	2)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한 생계 지원	복지부	1-21	신규
	3)	미혼모자 가족 거주지 지원	복지부	1-22	신규
1-3.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 육아지원 시설 확충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1-23	
	2)	통합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교과부	1-24	
	3)	직장보육시설 확충	복지부	1-25	
			노동부		
			복지부	1-26	
[2]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3]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복지부	1-27	
	2)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복지부	1-28	신규
	3)	동네품앗이 육아망 구축	복지부	1-29	신규
	4)	유치원 종일제 확대	교과부	1-30	
1-4.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 산전검사 및 분만취약지역 지원					
	1)	산전검사로 지원	복지부	1-31	신규
	2)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	복지부	1-32	신규
	3)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	복지부	1-33	신규
[2]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1)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복지부	1-34	
	2)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1-35	
	3)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1-36	
	4)	모유수유 지원확대	복지부	1-37	
	5)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 이용시의 보험급여 확대	복지부	1-38	신규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6)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복지부	1-39	신규
[3] 불임부부 지원 확대	복지부	1-40	
[4] 산모도우미 지원	복지부	1-41	
[5]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복지부	1-42	
[6]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강화			
1) 생명존중 및 낙태폐해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사업	복지부	1-43	
2)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복지부	1-44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2-1. 모성보호 강화			
[1]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신규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지원 확대 추진	노동부	1-45	
2) 유산 및 사산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노동부	1-46	
3)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시행	노동부	1-47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1) 육아휴직 활성화	노동부	1-48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노동부	1-49	
3) 근로형태 유연화	노동부	1-50	
2-2.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1]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신규
1)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복지부	1-51	
2)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복지부	1-52	
[2]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1)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개발	복지부	1-53	
2) 가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부	1-54	
[3]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노동부	1-55	신규
[4] 출산 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1)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동부	1-56	
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지원	노동부	1-57	

과제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3)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	1-58	
4) 고용지원센터 여성 취업 지원기능 강화	노동부	1-59	
2-3.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1]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교과부	1-60	
[2] 가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 교육 강화			
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범국민 인식개선 운동 강화	복지부	1-61	
2) 아동 청소년 대상 지역 사회교육 강화	복지부	1-62	
[3]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1)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부	1-63	
2)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부	1-64	
[4]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1) 가족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확충	문화부	1-65	
2)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복지부	1-66	
[5]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복지부	1-67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1) '제2차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마련 추진	복지부	1-68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	복지부	1-69	
3) 아동안전 관련 통계기반 구축	복지부	1-70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 아동 보호체계			
1)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복지부	1-71	
2)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복지부	1-72	
3)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복지부	1-73	
4) 실종아동의 조기발견·보호시스템 구축 등 아동보호 인프라확대	복지부	1-74	
[3]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강화			
1) 학교폭력 예방·근절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활성화	교과부	1-75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교과부	1-76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3)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기능 강화	교과부	1-77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교과부	1-78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립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제공 및 보호기능 강화			
1)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복지부	1-79	
2)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	복지부	1-80	
3)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	1-81	
[2] 아동의 발달 지원			
1) 취학전 아동의 인지발달 투자 확대	복지부	1-82	
2) 비만 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및 운동지도	복지부	1-83	
3) 심리, 정서, 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전인적 발달 지원	복지부	1-84	
4) 아동 체험발달경험서비스 제공	복지부	1-85	
[3] 국내입양 활성화			
1)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복지부	1-86	
2)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선 추진	복지부	1-87	
3)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추진	복지부	1-88	
[4] 유해환경 차단 강화			
1)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의 집행으로 유해환경 차단 강화	복지부	1-89	
2)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	1-90	
[5]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1) 학교 보건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교과부	1-91	
2) 학생 대상 질병 예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교과부	1-92	
3)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 사업 지속 추진	교과부	1-93	
4) 학교-보건소 연계 통한 학생건강관리 강화	교과부	1-94	
3-3. 빈곤아동의 자활·자립지원			
[1] 드림스타트 활성화	복지부	1-95	신규
[2]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복지부	1-96	신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1.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1-1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					
[1] 국민연금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독립성 제고		복지부	2-1	신규
	2)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		복지부	2-2	
	3) 국민연금 자격, 징수 및 급여 관련 제도개선		복지부	2-3	신규
	4)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복지부	2-4	신규
	5) 국민연금의 전략적 홍보로 국민의 신뢰 제고		복지부	2-5	신규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를 통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제고		복지부	2-6	
	2)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복지부	2-7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업급여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복지부	2-8	신규
[3]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국민연금체계 구축					
			복지부	2-9	
[4] 특수직연금제도 개선					
	1) 부담 및 급여체계 조정		교과부 국방부	2-10	
	2) 책임준비금 적립 방안 검토		행안부	2-11	
	3)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간 형평성 제고			2-12	
[5]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1) 세부 시행기준 완화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확대		복지부	2-13	신규
	2) '09년 수급대상자 확대시행을 위한 선정기준액 확정고시 및 연금지급		복지부	2-14	신규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					
			복지부	2-15	
1-2. 사적 소득보장체계 확충					
[1] 퇴직연금제도 확대					
	1)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노동부	2-16	
	2) 퇴직연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		노동부	2-17	
	3)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 및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노동부	2-18	신규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4) 공공부문 퇴직연금 가입 유도	노동부	2-19	
5) 신규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노동부	2-20	
6)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강화	노동부	2-21	
[2] 개인연금 활성화			
1) 개인연금 세제정비 추진	기재부	2-22	
2)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재부	2-23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2-1.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			
[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			
1)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복지부 문화부	2-24	
2)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 수검률 제고	복지부	2-25	신규
3)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 한 건강검진체계 개편	복지부	2-26	신규
[2] 노인질환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1)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 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복지부	2-27	신규
2)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복지부	2-28	
3) 노인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보험수가체계 개발	복지부	2-29	
4) 눈, 귀건강 낙상, 골다공증 예방 등 노인 삶의질을 악화시키는 질환 관리	복지부	2-30	신규
5)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복지부	2-31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1)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복지부	2-32	
2) 종합적 체계적 치매치료 관리	복지부	2-33	
3)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복지부	2-34	
4)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복지부	2-35	
2-2.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1)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복지부	2-36	신규
2)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마련	복지부	2-37	신규
3) 본인부담 수준 관리	복지부	2-38	신규
4)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복지부	2-39	신규
5)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마련	복지부	2-40	신규
6)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복지부	2-41	신규
[2] 노인요양시설 인프라확충			
1) 노인요양시설 확충	복지부	2-42	
2) 재가서비스 활성화	복지부	2-43	
3) 질 높은 서비스 인력 양성	복지부	2-44	
2-3. 노인 권익 증진			
[1] 독거노인 보호 강화			
1)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복지부	2-45	신규
2) 독거노인의 상시적 안전 확인을 위한 U-care 시스템 구축	복지부	2-46	신규
[2] 노인 권익 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1)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	복지부	2-47	
2)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마련	복지부	2-48	신규
3) 효행자표창, 교과과정 개발 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복지부	2-49	

3.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1. 노인일자리 창출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1) 노인육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복지부	2-50	
2)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인프라확충	복지부	2-51	
3-2.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			
[1]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기반 조성			
1)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보급	복지부	2-52	신규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강화	복지부	2-53	신규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2]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			
1)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문화부	2-54	
2)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부	2-55	
3)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행안부	2-56	신규
4)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	2-57	
3-3. 노후생활 설계 기반 조성			
[1] 노후생활 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복지부	2-58	신규

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4-1.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1] 고령자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토부	2-59	
[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국토부	2-60	
[3] 고령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국토부	2-61	
2)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국토부	2-62	
	경찰청		
3)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 기반 마련	복지부	2-63	
	국토부		
	경찰청		
4-2.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			
[1]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			
1)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정책 모델 개발	복지부	2-64	
2) 고령취약능가를 위한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 지속 추진	복지부	2-65	
	농식품부		
3)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 사회활동참여 증진 유도	농식품부	2-66	
	농진청		

III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1.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고용정책 강화					
1)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시			노동부	3-1	
2)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확대			교과부	3-2	
3)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행안부	3-3	
4)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교과부	3-4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확충			노동부	3-5	
2)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부	3-6	
3)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노동부	3-7	신규
			여성부		
4)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노동부	3-8	신규
			여성부		
5) 여성유망직종 자격제도 확충			노동부	3-9	
[3]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1)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모델 개발 및 여성리더 양성			여성부	3-10	신규
2) 여성친화적인 직장문화 분위기 확산			여성부	3-11	신규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1]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산			노동부	3-12	
2)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노동부	3-13	
3) 정년제도 개선			노동부	3-14	
[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1)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			노동부	3-15	
2)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노동부	3-16	
[3]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1)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노동부	3-17	
2)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노동부	3-18	
3) 산업체 퇴직연구인력고용 지원			지경부	3-19	신규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4)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노동부	3-20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노동부	3-21	신규
2)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노동부	3-22	신규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1)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환경개선 지원	노동부	3-23	
2) 중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노동부	3-24	
1-3.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1] 외국적 동포의 인력 활용			
1) 외국적 동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절차 개선	법무부	3-25	
2) 외국적 동포의 체류 지원	법무부	3-26	
3) 외국인력 적정도입 규모 설정 및 취업신고 강화	노동부	3-27	신규
[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1)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동 강화	교과부	3-28	
2) 사증 발급 개선 및 체류 편의제공	법무부	3-29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			
1) 고용허가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	노동부 법무부	3-30	
2) 외국근로자 체류지원 및 권익증진 강화	노동부 법무부	3-31	
[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1)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3-32	
2)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문화부	3-33	
3)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교과부 문화부	3-34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추진	복지부	3-35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1.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1) 생애단계별 진로개발 표준모델 및 진로교육 운영지침 개발	교과부	3-36	신규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2)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교과부 노동부	3-37	신규
3)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노동부	3-38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1)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강화	노동부	3-39	
2) 중소기업 직업훈련 기회 확대	노동부	3-40	
[3] 평생학습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1)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교과부 노동부	3-41	
2)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교과부 노동부	3-42	
3)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노동부	3-43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1]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 증진			
1) 영세작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노동부	3-44	
2) 안전취약부문 감독 강화	노동부	3-45	
3) 작업환경측정제도 내실화 및 화학물질 관리의 체계화	노동부	3-46	
4)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노동부	3-47	
5)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노동부	3-48	
[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1)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확대	노동부	3-49	
2)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 지원 확대	노동부	3-50	
3)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노동부	3-51	

3. 고령친화산업 육성

3-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기반강화			
[1]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구축 로드맵 작성추진			
1) 고령친화산업육성기반 구축	복지부 지경부	3-52	신규
2) 고령친화산업 통합 DB 개발 및 구축	복지부 지경부	3-53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2] 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지정·표시제도 도입			
1) 우수제품 품질표시제도 내실화	복지부 지경부	3-54	
2) 우수 서비스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복지부 지경부	3-55	
[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1)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지경부	3-56	
3-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1)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 확대	복지부 지경부	3-57	
2)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확충	복지부 지경부	3-58	신규
3) 고령친화상품 개발 종합지원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경부	3-59	
4) 세계적 수준의Star Company육성	지경부	3-60	
5) 우수제품 전시기회 확대	복지부 지경부	3-61	
3-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1) 고령자·장애인 복지표준 제·개정 추진	지경부	3-62	
2)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	지경부	3-63	
3-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1) 중저가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	금융위	3-64	
[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1)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 촉진	금융위	3-65	
2)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성 확대	금융위	3-66	
3)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 추진	금융위	3-67	
4)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금융위	3-68	
5) 신탁제도의 활성화 추진	금융위	3-69	
[3] 장기국채시장 육성			
1) 초장기채 발행	기재부	3-70	
2)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국채 상품의 개발	기재부	3-71	

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분위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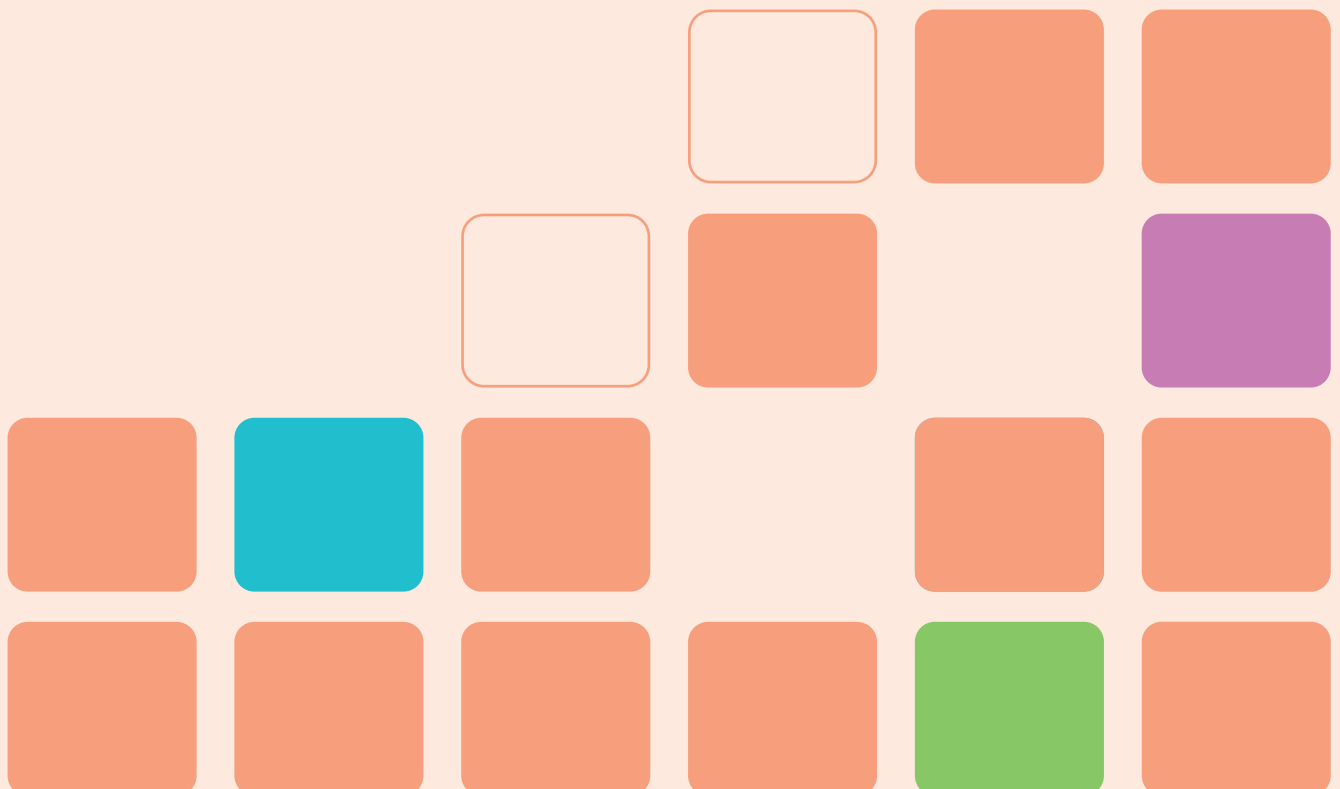
과	제	명	소관부처	과제번호	보완판 신규과제
1. 전략적 교육 홍보			복지부	4-1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복지부	4-2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연계 강화			복지부	4-3	
[2]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복지부	4-4	

III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새로마지 플랜 2010



1 외국의 저출산 · 고령화 동향

❖ 저출산 · 고령화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나, 출산율, 노인 인구비율 및 고령화 속도 등은 국가마다 큰 차이

- OECD 국가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04년 15% 수준으로 이미 고령사회 진입
 -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05년 7.4%로 전세계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
- 출산율은 인구대체율(2.1명)이하 수준에서 국가별로 1.1명에서 2.0명까지 다양 (OECD 평균 : '02)1.60 → '03)1.56)
- 각국의 노인인구비율과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수준 및 저출산의 지속기간과 밀접한 관련
 - 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 OECD 국가의 출산율은 '70~'85년 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하다가 '85년 이후에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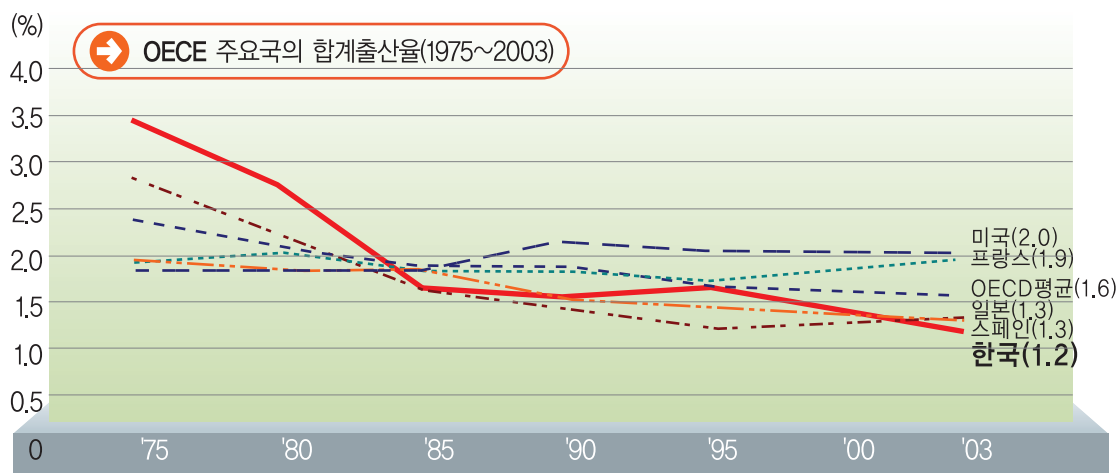
-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북유럽국가, 영어권 국가, 불어권국가들은 출산율이 안정화되거나 회복

※ 북유럽국가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영어권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불어권국가 :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 스웨덴 : '85) 1.7 → '03) 1.7,
 미 국 : '85) 1.8 → '03) 2.0,
 프랑스 : '85) 1.8 → '03) 1.9

- 반면 높은 출산율을 보이던 남유럽국가, 독일어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뒤늦게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

※ 남유럽국가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독일어권국가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 스페인 : '85) 1.6 → '03) 1.3, 독일 : '85) 1.4 → '03) 1.3, 일본 : '85) 1.8 → '03) 1.3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1975-2003)



❖ 각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대응 등에 따라 출산율이 변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 노동시장 구조,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

❖ 복지국가는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해 현금급여, 가족수당, 현물급여 등 경제적 지원을 제도화

- OECD 회원국(30개국)은 GDP 대비 평균 1.8%를 지원(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에 1.3%, 육아 인프라 등 육아지원서비스에 0.5%)
- 고출산 국가가 저출산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
 - 고출산 국가인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GDP의 2.8%, 2.9%를 지출하고 있으며 저출산 국가인 스페인은 0.5%, 일본은 0.6%를 지출

* 예외적으로 고출산 국가이면서도 재정지출이 적은 미국은 현재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정부의 소득세 체계 하에서 아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 현황 비교('01)

(GDP미국, %)

	상대적 고출산국가			상대적 저출산국가			OECD 평 균
	프랑스	스웨덴	미 국	스페인	일 본	한 국	
계	2.8	2.9	0.4	0.5	0.6	0.1	1.8
현금급여	1.5	1.8	0.1	0.3	0.3	0.0	1.3
아동복지서비스	1.3	1.1	0.3	0.2	0.3	0.1	0.5

•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4

☞ 상대적 고출산 국가들은 양성평등문화와 다양한 가족 및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등 사회문화적 기반이 견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체계 및 육아인프라 발달

- 불어권 및 북유럽 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부담의 사회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으로 출산율 제고에 성공
 -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01) : 덴마크(76.1%), 스웨덴(75.5%), 핀란드(72.7%)
- GDP 대비 공보육 시설 정부지출 : 스웨덴 '02) 2.0%, 핀란드 '01) 1.1%
 - 영아(0-3세)보육률 ('00): 스웨덴(48%), 핀란드(48%)
- 영미국가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와 공보육 중심의 인프라가 구축(캐나다) 되었거나, 저비용의 민간보육서비스 발달(미국)로 출산의 기회비용 감소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01) : 캐나다(65.9), 영국(66.0), 호주(61.6)
 - 영아(0-3세)보육률 ('00) : 캐나다(45%)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정책 성공요인

구 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 국(영어권)
합계출산율		1.89('03년)	1.71('03년)	2.1('03년)
사회문화적 요 인	남녀평등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이 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 중단	사회적·제도적 수용 *흑인·히스패닉의 고출산율
정책적 요 인	일-가정 양립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정책 보편적 적용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지원 (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성 등)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세제, 연금크레딧 등 간접적 지원 • 각종 수당 지원 *GDP대비 양육 지원지출 : 2.8%	• 각종 수당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육아의 사회화) *GDP대비 양육 지원지출 : 2.9%	• 직접적 양육비 지원은 미흡하나, 세제 등 간접적 지원 *GDP대비 양육 지원지출 : 0.4% • 민간보육 이용 활성화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공보육 중심	민간보육 중심

▶ 상대적 저출산 국가들은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 등으로 성분업적 역할 규범이 계속 유지되고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회 비용 증가

- 독일어권 및 남유럽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 양립기반 부족, 가족주의 및 가부장적 문화가 견고하여 저출산 지속
 - 스페인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 '90) 40.4% → '00) 51.7%로 10.2%p 증가
- 최고수준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 증가폭과 최저수준의 출산율 기록
 - 영아(0-3세) 보육률 ('00) : 스페인(5%), 이탈리아(6%), 독일(5%)

유럽 저출산 국가의 저출산 요인

구 분		독 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합계출산율		1.42('03년)	1.29('03년)
사 회 문화적요인	남녀평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 인구 50%이상이 가톨릭 신자	가부장적 사회구조 * 인구 90%이상이 가톨릭 신자
	다양한 가족 수용성	소극적 수용 * 법률혼이 보편적 가치	소극적 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 · 제도적 수용	사회적 · 제도적 수용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경직화 및 지원 미흡 * 대졸여성 40% 출산포기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일-가정 양립곤란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미흡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GDP 대비 양육지원예산규모 : 1.9%	* GDP 대비 양육지원예산규모 : 0.5%
	육아인프라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영아 보육서비스 부족 * 영아 보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문화 잔존	보육 인프라 부족

- 동아시아 국가들(대만, 싱가포르 등 OECD 비회원국 포함)은 가족주의 및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부족, 높은 자녀 양육비용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
-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01) : 일본 (64.4%), 한국(55.6%)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요인 : 저출산대책 및 환경

구 분		일 본	대 만
합계출산율		1.29('04년)	1.24('04년)
사 회 문화적요인	남녀평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유교문화의 영향)	가부장적 사회구조 (유교문화의 영향)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사회적·제도적 비수용
	이민 수용성	사회적 비수용	최근 이민 수용으로 전환
정책적 요인	일-가정 양립	•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는 있으나 효과성 미흡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여건 미흡 : 장시간근무 관행, 노동시장 경직화 * 첫아이 출산시 퇴직율 70%	산전후 휴가 등 기본적인 수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소액의 아동수당 등에 국한 • 현금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대상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 0.6%	양육지원 미흡
	육아인프라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보육인프라 구축	-
정책의 한계성		• 적기에 종합적 대응 미흡 * 엔젤플랜('95-'99) : 일-가정 양립중심 * 신엔젤플랜('00-'04) : 보육 중심 * 소자화대책(향후10년) : 가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등 • 권장·계몽 등 비예산사업의 한계성 존재	장기적·종합적 대책 미흡

2 국가별 사례 분석

1) 불어권 및 북유럽 국가

- 출산·보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으로 선진국 중 비교적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
 - 보육 투자, 일과 가정 양립정책으로 출산율 유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달성
- (시사점) → 강력한 저출산 대책으로 고령화 속도가 크게 완화

프랑스

🌱 프랑스는 '80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출산율이 지속 하락하였으나, '94년 이후로 현재까지 상승추세 유지('80)1.95 → '93)1.65 → '04)1.92)

- 공보육기반 구축과 가족수당, 탄력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 성공
 - 공보육 확충 : 2세 이하 아동 25%, 3-5세 아동 95% 수혜
 -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형성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아동출산 전 출산보너스(800유로), 소득·자산조사에 기초한 고정수당(3세까지 4,120유로 분배), 보육지원, 부모휴직지원(매월 340유로) 등이 통합된 수당(PAJE : Prestarion d'Accueil du Jeune Enfant) 지급

- 자녀 수에 따른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의 차별적 지급,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세금 감면, 연금크레딧 제도 등 간접적 혜택의 적용을 확대
- 사회적 관용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가족형태(동거부부,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반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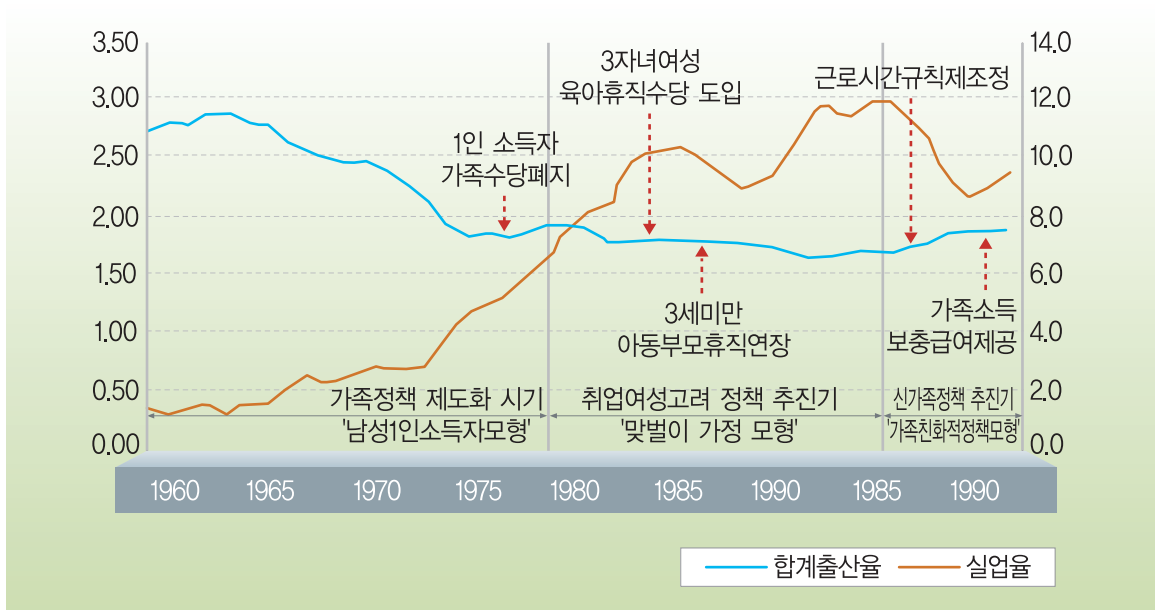
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50.3	51.6	54.3	55.2	55.8	56.5	56.7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출산율 상승으로 고령화 속도가 크게 완화

- 노인인구비율이 '60년 11.6% → '80년 14.0% → '05년 16.3%로 고령사회 진입
이전 20년 동안 2.4%p 증가
- 반면, 고령사회 진입이후 25년간 노인인구비율은 2.3%p 증가에 그침

🌱 고령인력 활용 유도 및 공적연금 수요 증가 완화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 55세 이상 고령자 해고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기여금 추가징수(87), 연금개혁(03) 등 추진
– 연금납입기간 연장, 연금부담률 인상, 퇴직연령 연장 등을 시행

- 연금납입기간 : 37.5년 → '08년 40년(공무원연금) → '20년부터 42년(공무원, 민간)
- 연금 부담률 : 소득의 7.85% → 10.35%('08년)
- 퇴직 연령 : 60세 → 65세로 연장

프랑스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01	'02	'03	'04
32.9	32.6	35.6	38.3	39.6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스웨덴

🌱 양성평등적 정책으로 부모 모두에게 아동 양육의 책임을 부과

- 출산휴가 총 14주 중 2주는 남성이 사용토록 의무화

- 육아휴직 총 450일 중 남성이 2개월 사용토록 의무화
 - 초기 13개월은 사회복지연금에서 80% 소득대체 지원
 - 휴직기간 중 고용관계 및 사회보험에서 피보험자 자격 유지

♥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 재산 유무 등에 관계없이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잘 정비된 공보육 제도로 여성의 직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
-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취업 중인 현실을 감안, 3세 이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0~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도 정부지출 지속 확대

보육서비스 이용률 및 시설 유형별 이용률

연 령	서비스 이용률			시설유형별 이용률
0-3세 미만	전체의 34%	2세 미만아동의 45%	2세 아동의 85%	가정보육 : 10% 보육시설 : 90%
3세-취학 전	전체의 49%	3-4세 아동의 50%	5-6세 아동의 87%	가정보육 : 10% 보육시설 : 92%
취학아동	전체의 40%			

• 자료 : OECD, Education at glance, 2004

- 교육 · 의료 · 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대폭적인 여성 고용(전체 여성고용의 50% 수준)을 통해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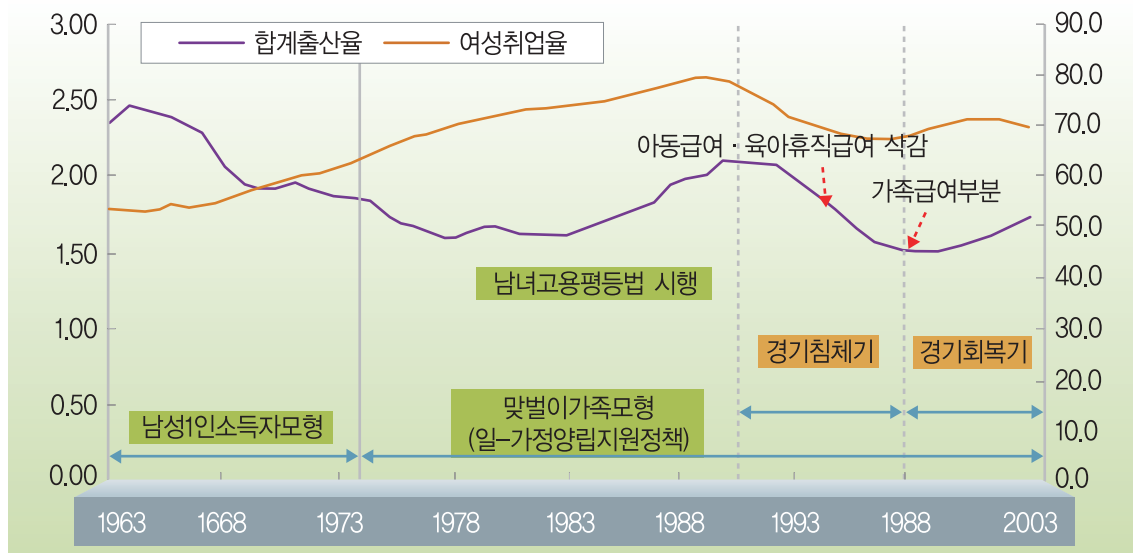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81.0	70.9	72.2	73.5	73.4	72.8	71.8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스웨덴의 출산율은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

- 불황기에는 여성의 실직 증가와 국가의 급여 감축 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출산율이 다시 회복

※스웨덴의 출산율 유지 요인

-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출산 · 양육과 노동시장 참여 양립 제고에 중점
 - 북유럽 남성들의 가사분담비율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
 - 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지는 복지 제도
-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공보육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
-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해 Speed-Premium 정책 추진

높은 출산율 추이로 최근 노인인구비율이 오히려 감소

- 노인비율은 '65년 12.7%에서 '85년 17.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높은 출산율 추이로 '05년 노인인구비율이 17.7%로 하락

☞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 확대, 연금 제도에 있어서의 근로유인 제공 등 적극 추진

스웨덴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01	'02	'03	'04
70.5	70.5	71.7	72.5	73.1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2) 영어권국가

- 출산에 따른 고용 불안 등 부담이 적고 구직과 재취업, 근무시간 조절 등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
- 가족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은 약한 편이나,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용이하여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출산율을 동시에 실현

(시사점) → 탄력적인 근무시간, 출산여성의 직장복귀 장애 해소를 통해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을 낮출 필요

미국

☞ 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입장

- 미국은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낮고,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 (미국 노인인구비율 '05년 12.3%, 출산율 '03년 2.04명)
- 가족 정책이나 경제적 지원 등 정부에 의한 육아 문제 해결보다는 일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세제혜택, 고용·승진상의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유도

-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발달
- 미국은 복직에 대한 보장이나 보수규정 없이 60일 정도의 출산휴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등 부담이 적음
- 다수의 국민이 미국 사회를 '자녀 양육이 쉬운 사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출산율에 유리하게 작용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64.0	65.8	67.8	67.1	66.1	65.7	65.4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의 유입 등 이민 정책도 출산율 안정에 기여
 - '98년의 경우,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6명으로 높았으나 백인만의 합계출산율은 1.84명으로 인구대체수준 미만이었으며, 당시 총 출생아수 236만 명 중 흑인이 59만명(25%), 히스패닉이 73만명(31%)

🌱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연령차별금지법('67년 제정)을 제정, 거의 모든 직종에서 정년연령 폐지

미국의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01	'02	'03	'04
55.9	60.4	61.9	62.4	62.3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3) 남유럽 및 독일어권 국가

- 여성의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
- 가부장적 전통으로 가사·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
- 일과 가정 양립기반과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결여로 정부정책의 출산율 제고효과 미흡

(시사점) → 제도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및 공감대 형성 등 사회문화적 개선 병행 필요

독일

♣ 성분업적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어 가족 내 가사분담 및 양성평등이 미흡하고, 저출산에 소극적 대처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서비스 등 여성 취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하고 여성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통을 유지
- 출산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될 가족의 영역이며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보수적 인식에 따라,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주부로서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 가족제도 규범 유지
- 가족수당 등 양육비용 보조 정책에 많은 재원('01년 GDP 대비 1.9%)을 투입하고 있으나,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출산율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52.2	55.3	58.1	58.7	58.8	58.7	59.9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시 임금 보조,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추진

- 인구조사결과 근로자 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여 ‘아젠다 2010개혁프로그램’을 중장기적 시책으로 제시
 - 아젠다 2010으로 복지축소에 대한 불만도 있으나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이며 급여삭감 등 재정안정화 조치와 소득보장성 기능을 강화

- 고령화 및 경제상황을 반영, 급여를 조정하는 지속성계수(sustainability factor) 도입('04)
- 리스터 개혁('01)에 의한 적립식 개인연금 활성화 : 임의가입, 세제 혜택 및 저소득층 국고보조
- 소득보장성 기능 강화 : 육아기간에 대한 연금소득 상향 조정, 기초소득보장제도(부조 방식) 도입('01)

- 경제, 직업교육, 세금, 교육과 연구, 노동시장, 보건, 연금, 가정지원 등 총 8개 분야의 개혁을 유도

* 근로자 : 연금수급자 '10) 100:54 → '20) 100:76 → '30) 100:96 → '40) 100:102

독일의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01	'02	'03	'04
39.8	42.9	43.3	43.1	44.2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 가족기능의 약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94)

- '03년 현재 노인인구 중 11%가 수혜 대상 (시설 : 3.9%, 재가 7.1%)
 - * 수발보험에는 재가서비스, 주간·야간수발서비스, 단기수발, 시설보호(노인집합주택, 요양홈, 노인종합시설 등) 서비스가 있으며 현물급여, 현금급여, 현물과 현금의 혼합급여 형태로 제공

이탈리아 · 스페인 · 그리스

☞ 전통적 다출산국가(가톨릭의 낙태금지 전통)로 가부장적 가족 문화

-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은 급변하는 반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등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여 출산율 하락
- * 이탈리아 : 결혼연령이 1년 늦어지면 출산율이 0.08명씩 하락

스페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31.8	32.5	42.0	43.8	44.9	46.8	49.0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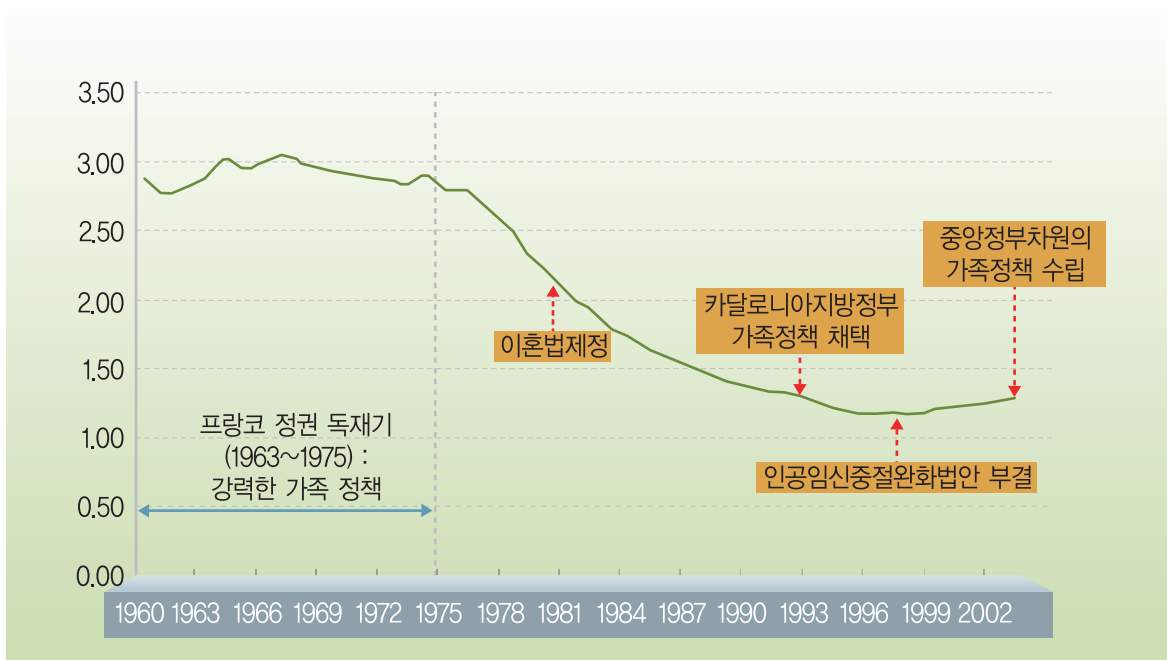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가정의 자녀 양육여건이 변화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가족 · 사회문화 변화는 미흡

- 높은 청년실업률(25세 이하 여성 30%)과 전일제 위주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출산 후 직장 복귀에도 장애

☞ 가부장적 가족문화(보수적 가톨릭 국가)로 가사 ·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 집중되고 육아지원시설도 부족

- 여성이 일과 자녀양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만혼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대적으로 저조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스페인의 사례

- 여성친화적 정책 부재로 출산 이후 취업여성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 과거 프랑코 독재정권의 강력한 가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실패
- 자율성이 강한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출산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한계
-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높은 청년실업 지속
- 빈곤층 대상 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대책 미흡
- 육아인프라 부족,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미흡 등도 정책의 실패 요인

4) 아시아국가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부족, 높은 자녀양육 비용, 가족 내 가사·육아부담 공유 미흡 등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시사점) →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프라,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 필요

→ 양성평등적 가족·사회문화 조성,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

일본

▼ 초저출산('04년 1.29명) 현상 지속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05년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06년 세계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 저출산대책을 계속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가족·사회구조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 미흡

- 저출산대책으로 '엔젤플랜'('금후의 육아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95~'99), '新엔젤플랜'('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의 구체적 실시계획', '00~'04)과 '新新엔젤플랜'('05~'10)을 수립·추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출산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곤란하고 양성간 역할 분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불변으로 여성의 결혼 및 출산기피 지속
 - * '00년 일본의 25~29세 취업여성의 78%, 30~34세의 47%가 미혼
- 고용에 대한 불안감, 높은 사교육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도 미미
 -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하면서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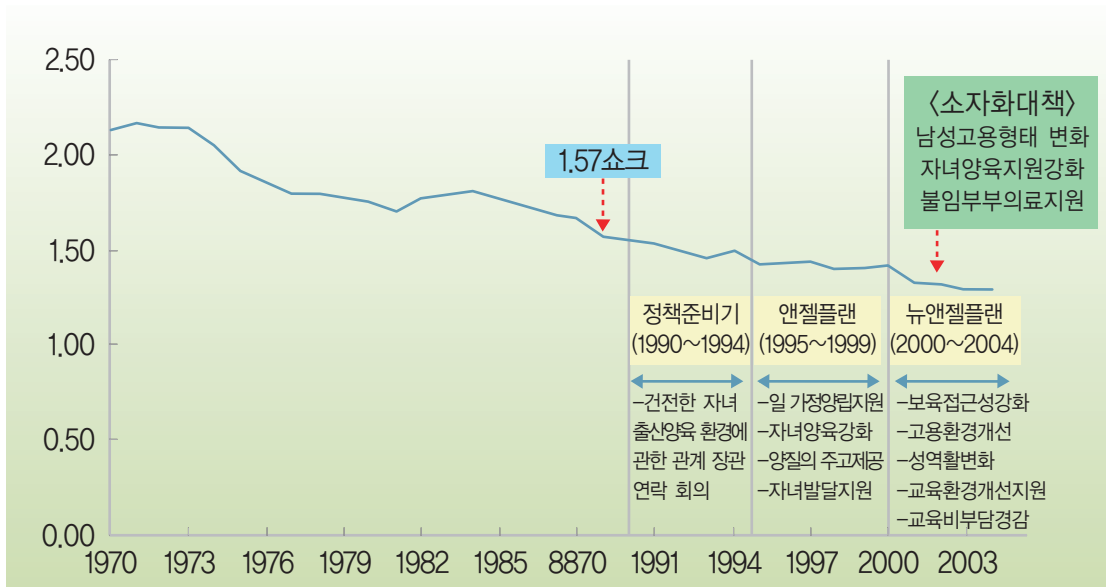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90~'04)

(단위: %)

'90	'95	'00	'01	'02	'03	'04
55.8	56.4	56.7	57.0	56.5	56.8	57.4

• 자료 : OECD, Factbook 2006: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일본의 저출산대책 주요 특징

-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족
- 현금 지원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며, 중산층에 대한 출산장려책 불충분
→ 예산의 제한으로 기업 계몽·권고 위주의 비예산 사업에 주로 의존
- 전통적 성역할규범의 영향 등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미흡
→ 가정 내에서 남편의 가사와 양육 부담이 저조하고, 사회적 여건도 미비
- 종합적인 정책 대응 미흡, 시기에 따라 단편적으로 정책기조 변화

저출산 대책의 효과 미흡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 '04년도 고령화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5.1% 수준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골드플랜’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추진전략」, '89~'98) 수립 · 추진

-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 '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거 내각부에 상설기구로 고령사회대책회의 설치
- 골드플랜은 전반적인 고령사회 대책이라기보다 노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초점

❖ '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 5년간 실시상황을 분석하여 제도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 요양보호대상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시설입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가능하면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정책유도
- 요양필요 등급평가 및 판정기준 설정과 개호지원 전문원(케어매니저) 도입

대만 · 싱가포르 · 홍콩

❖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합계출산율 : 대만 1.24명('03), 싱가포르 1.25명('04), 홍콩 0.8명('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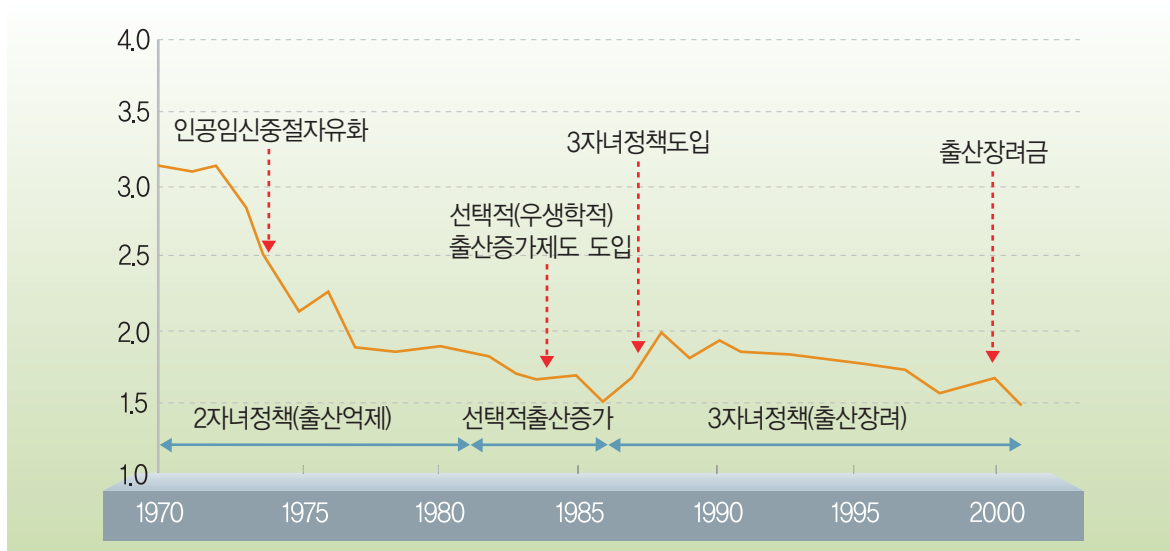
노인인구비율: 대만 9.6%('05), 싱가포르 8.5%('05)

— 유교문화의 전통 잔존으로 가정 ·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 미정착

- 싱가폴은 '80년대 후반 고학력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출산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전체 출산율 제고에 한계
 - '04년 이후 결혼, 출산, 양육, 보육, 일-가정 양립의 다섯 가지 영역을 고려한 종합 정책 수립

- 결혼 정책으로 주택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육아휴직
-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정책으로 친가족적 기업육성기금 운영 등 포함

싱가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대만은 '80년대부터 세제 감면, 보육보조금 지급, 산전후휴가, 의료수당, 출산보조금 등 저출산대책들을 추진하였으나,
 - 장기적 · 종합적 시각 없이 단편적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 효과 불분명
- 홍콩은 고실업, 빈부격차 심화, 높은 교육률, 주권 반환 후 젊은 전문인력의 해외 이주 확대 등으로 미혼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 지속
 - 모자보건 강화, 자녀수에 따른 세제 혜택, '3자녀 이상 낳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효과성을 진단하기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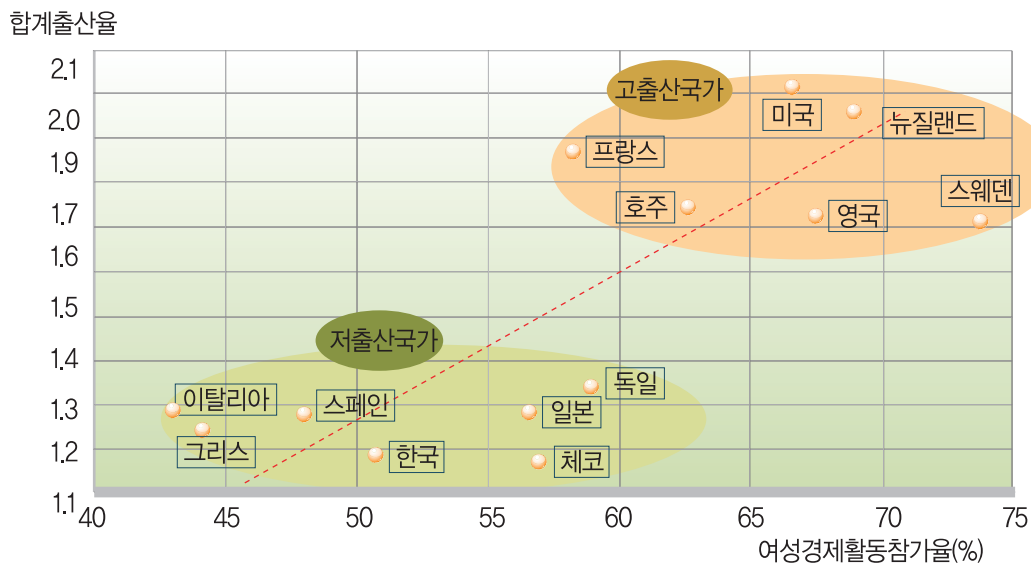
3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출산·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축

-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 활성화 등 출산·육아 관련 정책지원 강화
- 부모의 여건에 따라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육아 인프라 확충
- 탄력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재취업 가능성 제고 등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과 부담 경감

※ 주요 OECD 국가 중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고용 문화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는 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이 모두 낮은 수준

주요 OECD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03년)



• 자료 : 통계청, 2004 출생·사망통계, 2005. OECD, OECD Factbook, 2005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 현재 가족의 책임영역으로 남아있는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필요

☞ 양성평등적 ·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

-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지원 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의 기반이 되는 사회 문화적 여건과 국민인식 전환을 유도
 - 양성평등적 가족 · 사회문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립 등 사회분위기 조성 긴요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가 출산율 추이에 많은 영향

- 전통적으로 엄격한 성 분업적 역할 분담이 강조되는 국가들 (가톨릭 및 유교주의 문화권)에서는 기존 역할규범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결혼 연기 또는 포기, 출산 연기 및 자녀수 축소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초저출산 현상 발생
- 오랜 기간동안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 온 국가들(북유럽, 불어권 및 영어권)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취업여성의 증가, 사회 관습의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율 저하는 불가피한 결과

☞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및 충분한 재정지원

- 장기적 정책비전과 목표 하에 사회경제 전반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과거 정책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 자녀를 출산 ·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 정책 확대 및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

비예산사업만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 OECD 국가의 경우, 출산 · 양육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합계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 (합계출산율과 출산 · 양육지원 재정 투입 간 정적 (positive)인 상관관계)

〈참고〉 OECD 및 동아시아의 출산율과 사회문화적·정책적 요인 비교

	구 분	합 계 출산율	사회문화적·정책적 요인
상대적 고출산 국 가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6~1.8명	• 양성평등 문화 정착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및 지원 제도 - 사회적 지원제도 정착(출산·육아휴가 등) : 프랑스·스웨덴 -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탄력적 시간근무제, 구직재취업용이 등) : 미국 - 공보육제 확립 : 프랑스·스웨덴, 저가의 보육서비스 시장형성 : 미국 • 양육부담 경감 (수당제도 발달, 높은 소득대체율) • 이민자 수용, 다양한 가족 수용(혼외출산 등)
	불어권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1.9명 수준	
	영어권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1.6~2.0명	
상대적 저출산 국 가	남유럽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1.1~1.3명	• 가부장적 사회문화환경 (전통 카톨릭 문화, 유교문화 등)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적 환경 -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 고용불안 등) - 육아휴직 제도 미정착 및 활용 저조 - 보육서비스 제공 미흡 (시설부족, 고가의 이용료 등) • 양육부담 증가 (수당지원 미흡, 출산~결혼후 분가까지 부모 책임)
	독일어권국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3~1.4명	
	일부 아시아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1.3명 미만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